축산발전기금과 축산경제의 성장

농협중앙회

목 차

제1장 기금의 기본체계

Ⅰ.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 2
2. 기금의 기능 ····· 2
3. 기금설치의 제한 ····· 2
4. 기금관리 · 운용의 원칙 ····· 3
5. 기금의 회계연도 ····· 3
6.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 ····· 3

Ⅱ. 기금의 기본체계
1. 기금운용에 관한 법체계 ····· 4
2. 기금의 범위 ····· 5
3. 회계와 기금의 비교 ····· 5
4. 기금의 과목구조 ····· 7

제2장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및 집행 절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집행 개요 ····· 10

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개요 ····· 10
2.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 11
3. 지자체의 기금신청 및 신청내용 분석 ····· 13
4.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시달 ····· 14
5. 농림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15
6. 예산처 심의 등 기금운용계획안 협의 ····· 16

Ⅲ.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사
1.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개요 ····· 18
2.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 ····· 1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1
4. 본회의 의결 ····· 24

Ⅳ. 기금의 집행
1. 기금의 통지 ····· 24

2. 기금의 집행계획 수립 ····· 25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25

Ⅴ. 기금의 평가
1. 기금운용평가의 목적 ····· 26
2. 기금운용평가의 근거 ····· 26
3. 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7
4. 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과 조직 ····· 27
5. 기금운용 평가방법 ····· 27
6. 기금운용평가 인센티브 ····· 28

제3장 축산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Ⅰ. 축산발전기금의 개요
1. 설치근거 및 목적 ····· 30
2. 연 혁 ····· 30
3. 조성재원 ····· 33
4. 사용용도 ····· 34
5. 예산편성/융자/결산절차 ····· 35
가. 축산발전기금의 예산편성 절차 ····· 35
나. 축산발전기금 융자지원절차 ····· 36
다. 축산발전기금 결산절차 ····· 37

Ⅱ. 축산발전기금의 조달 및 운용
1. 축산발전기금의 조성과 및 운용상황('74년~'04년) ····· 38
2. 연도별 기금조성 사용 및 잔액 ····· 39
3. '74년 ~ '04년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 ····· 40
가. 조달내역 총괄표 ····· 40
나. 운용내역 총괄표 ····· 41
4. 축산발전기금 사용 및 운용 누계('74년~'04년) ····· 42
5. 사업별 · 연도별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74년~'04년) ····· 43

Ⅲ.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1.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계정 일반현황 ····· 45
2.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재원 조성 ····· 47
3. 대손보전계정 이행내역 설명 ····· 50

제4장 축산발전기금의 운용평가

□ 2002년 축발기금 운용평가
1.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 56
2. 자산운용 부문 ····· 113

제5장 축산발전기금과 축산업의 성장

Ⅰ. 축산현황과 성장
1. 한국 축산업의 위치 ····· 122
2. 성과와 과제 ····· 122
3. 향후 여건전망 ····· 124
4. 축산관련 통계자료 ····· 125

Ⅱ. 축산정책의 기본 방향 ····· 132

Ⅲ. 축산경제의 발전
1. 축산물 유통부문 ····· 134
2. 축산물 가공 · 판매부문 ····· 141
3.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 148
4. 축산물 생산기반부문 ····· 152
5. 친환경축산 및 컨설팅부문 ····· 154
6. 사료사업부문 ····· 161
7. 조합 경영지원부문 ····· 165
8. 농정활동부문 ····· 168

제6장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

Ⅰ.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개요
1. 존치평가 배경 및 경과 ····· 174
2. 축발기금 평가내용 및 추진일정 ····· 174

Ⅱ. 기금정비 추진요체 ····· 176

Ⅲ. 축산발전기금 평가상 문제점 및 의견
1. 축산발전기금 평가상의 문제점····· 177
2. 축산발전기금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 ····· 181
3. 축산발전기금(수급조절사업)과 농안기금의 통합시 문제점 ··· 184

Ⅳ. 축산발전기금 존치 주요 추진사항 ····· 186
〈붙임〉 일정별 추진사항 및 국회서명추진사항

Ⅴ.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 결과····· 199
〈붙임〉 57개 기금중 폐지 또는 이관 기금

❖ 부 록

축산발전기금관련 법령

Ⅰ. 기금운영관련 법령
1.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206
2. 축산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222

Ⅱ. 사업실시관련 규정
1. 농림사업실시규정 ····· 261
2.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 294
3.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311
4. 농림사업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331
5.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 335

발 간 사

'74년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은 지난 30년간 한국 축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축산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국제화, 개방화로 '97년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서 '01년 수입쇠고기의 완전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농가의 전업화, 전문화가 가속됨으로써 소규모 축산농가는 시장 경쟁력을 잃고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냉혹한 시장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은 그 소임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지금까지 "축산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조성된 순수 민간기금"이었던 바 기금의 집행 역시 한국 축산업의 발전에 쓰여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축산발전기금과 축산경제의 성장』을 발행하는 목적은 축산부문 예산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축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축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동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축산경제 대표이사 송 석 우

송 석 우

제 1 장 기금의 기본체계

Ⅰ.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 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뜻함

○ 예산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제 · 사회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 ·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지원을 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 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서 확정('02. 3. 1 시행, '01.12.3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 기금의 기능

○ 외부경제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 전략부분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 특정산업지원 ·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등 정부가 자원배분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확대 ·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기금설치의 제한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음(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

4. 기금관리 · 운용의 원칙(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가. 일반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 운용하여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나. 계리의 원칙

○ 기금은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5. 기금의 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6.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기금의 경우도 예산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정부와 국회에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구비

□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함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가. 운용총칙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포함)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

나.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
○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세입예산과 같이 관 · 항 · 목으로 구분
○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 : 장, 관, 항
- 세부항목 : 세항, 목

다.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

○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정함(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예산회계법 제26조)

Ⅱ. 기금의 기본체계

1. 기금운용에 관한 법체계

○ 기금운용에 관한 법체계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결산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며, 기금 심의기구와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을,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개별법을 적용

※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기금운용의 탄력성 유지 필요성에 의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심의절차 생략 등)

농림부 소관 기금의 설치근거

○ 축산발전기금 : 축산법 제35조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 농지관리기금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4조

2. 기금의 범위

○ 국가의 경제활동은 크게 분류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며, 공공 부문은 다시 공공기관과 정부활동으로 구분

○ 광의의 정부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하지만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관련 자료의 작성 및 분석은 중앙정부재정을 대상

○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다시 기금과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예산이라 할 때에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의미

※ 통상적으로 정부재정규모라 함은 일반회계 세출과 재특회계 순세입액을 합한 것을 의미함

3. 회계와 기금의 비교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으로서 내국세, 관세 등 조세수입과 차관수입, 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을 수입으로 하여 편성되며, 이러한 세입은 정부의 일반행정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재정교부금 및 채무상환, 기타에 지출

○ 치안, 사법, 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교육, 주택,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의 사회 개발과 농수산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소기업육성, 과학기술 등 경제개발사업이 대부분 일반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짐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으로서

- 국가에서 철도 · 통신 등 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 특정한 세입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함

○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특정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 특별회계의 구분 】

구 분	특 별 회 계 법
공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자금특별회계	재정융자, 군인연금, 우체국보험
기타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기, 지방양여금, 교도작업, 군인연금, 교육양여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국립의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다. 기 금

○ 정부는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

○ 기금은 주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비교 】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 모든 국가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재원조달 및 적용실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부담금, 출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 제공
운용계획의 확정 · 집행	•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며 국회가 심의 · 확정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좌 동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 국회 심의 · 확정 • 집행과정에서 합목적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 일부 보장
세입과 세출	• 원칙적으로 특정한 세입과 세출연계 배제	• 특정한 세입과 세출연계	• 좌 동
정부세입세출예산에의포함	• 포 함	• 포 함	• 미포함

4. 기금의 과목구조

가. 기금별 분류

○ 기금사업은 일단 기금별 구분에 의하여 분류된 후 예산과 같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 관, 항, 세항 분류와 경비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으로 분류

○ 다만, 기금의 통계 · 통제 등을 위한 성질별 경비영역을 항 위에 별도 표기하고,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과 다른 항 및 세항을 표준화하여 사용

나. 기능별 분류

○ 기능별 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100), 방위비(200), 사회개발(300), 경제개발(400), 지방재정지원(500), 제지출금 및 기타(600)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 밑에 장, 관, 항, 세항의 코드체계로 분류

다. 경비 성질별 분류

○ 기금의 특성에 따라 단위사업은 세항 또는 세세항 단위로 표시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단위사업은 경비성질별 세출예산의 분류방법과 같이 목별 내역으로 구성

제 2 장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집행절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집행개요

□ 2001. 12. 31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 시행(2002.3.1 시행) 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 변경과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관리토록 제도화 됨
※ 예외 : 금융성 기금은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 등에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의 협의(사실상 예산과 같이 심의 · 조정절차를 거침)를 거쳐 당정협의,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최종 확정됨

○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각 기금운용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함

○ 특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처, 관련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되므로 정부안 확정후 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 이렇게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처 등에 의하여 집행되며,

□ 집행결과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결산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결산승인이 되면 당해 기금운용계획은 완결

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개요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대규모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요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기금조성계획 ·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6조)

④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 · 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안으로 확정

⑤ 정부안은 국회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 기금운용계획안의 정부안 확정절차 】

기 간	사 항	비 고
3월말	• 운용계획작성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 → 각부처
5월말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각 부처 → 기획예산처
6. 1~9월 중순	• 기금운용계획안심의 · 조정	• 사업계획 청취, 당정협의, 1차심의, 문제사업심의 • 장관협의회, 대통령 중간보고, 당정협의, 대통령 최종보고
9.20전후	• 국무회의 의결	
10월 초순	•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2.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실시되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제출

〈참 고〉

신규사업 선정요구 절차 등 요약

□ **신규사업의 선정요구(농림사업실시규정 제36조)**

○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농림사업 시행 지침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전문가위원회심의 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

○ 위 (1), (2)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 필요성이 최종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

□ **신규사업의 채택(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40조)**

○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전임자문관 지정)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

○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

※ 전문가위원회

□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실국별 분야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둠

○ 기능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국장) 및 부위원장(해당사업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지자체의 기금신청 및 신청내용 분석

가. 개 요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농림예산 신청요령에 따라 시 · 도 등은 다음연도 국고예산 지원소요를 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 각 실 · 국은 동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나. 업무처리절차

○ 시 · 도 등 신청일정

- 농업인신청 : 1월중순까지
- 시 · 군에서 시 · 도로 신청 : 2월말까지
- 시 · 도에서 농림부로 신청 : 3월말까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각 시 · 도의 기금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즉시 양청 및 각 실 · 국에 배부(4월초순, 기획실 → 양청 및 실 · 국)

○ 시 · 도 신청예산(기금)의 시 · 도별, 사업별 분석(4월초순)

4. 기금 운용계획 작성지침 시달

가. 개 요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여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주요 분야별 기금운용방향,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기금운용계획 작성요령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서식 등을 포함

나. 업무처리절차

○ 농림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보고(차관)

○ 지침시달 회의개최(예산+기금 통합지침시달회의, 4월초)
- 참석대상
  - 농림부 :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주재), 재정기획관, 예산 · 기금담당사무관(서기관), 각실 · 국(관서) 주무과장 및 기금운용담당과장, 예산담당서기관(사무관), 각과 주요예산 사업 및 기금담당사무관
  -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예산부장 및 과장, 기금수탁기관 책임자(부장, 과장)

5. 농림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가. 개 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기금조성계획 ·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나. 업무처리절차

① 기금사업요구(사업담당과 → 기금운용과) : 4월 초순까지
- 시 · 도별 신청사업, 중앙사업의 기금사업 요구
- 제출자료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 단위사업계획 설명서(기획예산처 심의자료 참조)
  - 단위사업별 분석 및 설명자료(FIM-sys 프로그램) 등

② 기금운용 실 · 국 사업조정 및 재정기획관실 제출
- 사업설명(사업담당 → 기금담당) : 4월 초순경
- 기금운용계획초안 작성 : 4월 중순경
- 기금운용계획초안 재정기획관실 제출 : 4월 하순경

③ 재정기획관실 사업설명 및 조정
- 사업별 설명 · 청취 일정 수립 : 4월 중순경
- 사업별 설명 · 청취 및 조정 : 4월 하순~5월 초순까지

④ 기금운용계획초안 조정내역서 작성 : 5월 중순경
- 예산편성개요, 사업별요구 및 조정내역서 작성 보고(실장)

⑤ 기금운용계획 실무조정협의회의 개최 : 5월 중순경
- 참석대상
  - 주 재 : 정책홍보 관리실장
  - 참 석 : 사업국장 등
  - 간 사 : 재정기획관
- 회의안건
  - 기금운용개요

• 기금운용계획 초안 및 조정내역
※ 회의결과를 검토 · 반영한 기금운용개요, 사업별 요구 및 조정내역서 작성 보고(차관)

⑥ 기금운용계획 조정협의회의 개최 : 5월 중순
– 참석대상
• 회의주재 : 차 관
• 참석대상 : 사업국장, 재정기획관 등
– 회의안건
• 기금운용계획안개요
• 기금운용계획 초안 및 조정내역
※ 기획실은 조정협의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각 기금운용 실 · 국에 통보

⑦ 기금별 장관보고 및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5월 하순
※ 기금담당 실 · 국은 기금운용계획초안에 조정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한 후 장관보고 및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⑧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기금운용계획개요 및 첨부서류 제출(실장 전결)
• 기금운용 실 · 국 → 재정기획관실 : 5월 하순
• 재정기획관실 → 기획예산처 : 5월말까지
– 제출해야 할 자료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운용총칙 및 부속서류 설명자료(FIMsys 프로그램)
• 기금관리비 및 자체수입 설명자료(FIMsys 프로그램)
• 기금사업별 설명자료(FIMsys 프로그램)
• 자금운용계획(FMS-net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력)
• 수입 및 지출계획(FMS-net 프로그램)
※ 기금운용계획안개요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하고, FIMsys 및 FMS-net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한 자료는 전자문서로 직접제출(기금운용실 · 국 → 기획예산처) 하되, 1부를 출력하여 기획실에 제출

6. 예산처 심의 등 기금운용 계획안 협의

가. 개 요

○ 근거규정

–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 · 조정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안으로 확정(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

※ 상기의 협의 · 조정은 사실상 예산과 같이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의 소관담당과에 제출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정(안)을 기획예산처 국 · 과장이 참여하는 기금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는 과정임.

○ 심의개요

- 시　기 : 6월~9월
- 내　용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취합하여 기금재정의 건전화, 핵심사업 위주 기금사업 구조개편 등 기금운용계획안 협의 · 조정방향을 마련
  - 기획예산처 각 소관담당과에서는 6월초부터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수입 · 지출계획을 조정

○ 사업별 심의절차

〈 인 건 비 〉

- 기금사업 수탁기관의 인건비 인상율은 9월경 기금총괄과에서 정한 후 공통 적용

〈 사 업 비 〉

- 1 차 심 의 : 예산처 소관담당 설명후 기금심의회에서 조정 심의
- 문제사업 심의 : 1차 심의결과 미반영 등 문제사업 재심의
- 기금 · 예산 공동심의 : 문제사업심의 후 기금 · 예산사업간 조정을 위해 심의
- 장관협의회 : 주요역점 시책사업중 미반영 등 문제사업 심의

나. 업무처리절차

①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 부처안 보고자료 작성 협조 : 6월초

② 사업별 예산설명일정 수립 : 6월초

③ 사업별 설명 및 1차 심의(6~7월)

- 사업별 설명일정에 따른 설명(실 · 국)
- 기금별 나누어 심의
- 심의회차별 심의자료 작성 협조(기금운용담당자, 기획실 협조)
- 심의완료후 심의결과 자료작성 협조(기금운용담당자)

④ 당정협의(6~7월) : 부처작성 기금운용계획 기준
- 농림부소관 요구예산에 대한 협의시 포함 이행(필요시)
- 준비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현안사업 예산(서식등 예산담당과 협의)

⑤ 문제사업요구 및 심의(7월말)
- 문제사업별 설명 및 심의자료 작성 협조

⑥ 장관협의(7월말~8월초)
- 문제사업 심의후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료작성(예산사업과 같이 협의)

※ 필요할 경우 기획관리실장협의회 개최

⑦ 당정협의(8월말~9월초) : 기획예산처 주관
- 사항별 설명서 작성 협조
- 주요 현안사업 별도 정리

⑧ 기금정책심의회 심의(9월 중순)
- 안건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심의위원 : 기획예산처 장관주재, 각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8명)

⑨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확정, 국회제출 : 9월말~10월 초순

Ⅲ.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사

1.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개요

가. 관련규정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 국회법 제84조의2)

나. 심의절차

①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기획예산처 → 국회) : 10월 초순경

② 상임위 및 예결위 전문위원 예비검토 : 10월 초순경
③ 상임위 심의(전체회의→소위→전체회의의결→예결위 회부) : 10월 하순~11월 중순
④ 예결위 심의(전체회의→부별심의→계수조정소위→전체회의 의결) : 11월 중순~12.1
⑤ 본회의 의결 : 12월 초순
※ 기금도 예산과 같이 심의하게 되므로, 그 일정, 준비사항 등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

다. 준비사항

○ 관련자료 작성 및 인쇄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서
- 기금운용계획안 내역 설명서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예상쟁점정리
- 예산정책국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

○ 예산처 자료작성 협조
- 기금운용계획안
- 사항별 설명서
- 예산안 부속서류 등

※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사계획 수립(행동요령)

2.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상임위 심의절차

① 상임위 전문위원 예비검토
② 상임위 심의(전체회의 → 소위 → 의결)
③ 예결위 회부

가. 전문위원 예비검토

○ 시 기 : 10월초순(전문위원과 사전협의 결정)

○ 총괄설명
- 참 석 : (국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 조사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주요 사업국장, 과장, 재정기획관, 예산 · 기금계장
- 설명자료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5부)

○ 국별 설명
- 참 석 : (국 회)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 조사관, (농림부) 국장, 과장, 실무자
- 설명자료 : 국별로 별도설명자료 준비(15부)

※ 설명시 전문위원 요구자료 별도 제출

나. 상임위 전체회의(상정 및 정책질의)

○ 시 기 : 10월 하순~11월 중순
○ 참 석 : 장 · 차관, 실장, 각 국장 등
○ 진행순서
-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장관)
- 예산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설명(실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책질의 · 답변

○ 제출자료 :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서(각 50부)
○ 기타 준비사항(예산담당과 협조)
- 자료 : 전문위원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행정실과 회의장 자료배포여부 협의)

※ 정책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예산안 심사소위 개최전에 각 의원실에 배포하여야 함

다. 상임위 예산(기금)안 심사 소위원회

○ 내 용 :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금사업 증감액 조정
○ 참 석
- 국 회 : 소위위원, 전문위원
- 농림부 : 차관, 실장, 각 국장 등

○ 진행순서
- 인사말씀(차관)
- 상임위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설명(실장)
- 위원별 증감액 제시 및 조정

※ 증액은 위원장의 내역설명 및 동의요청에 따라 차관의 구두동의로 성립함.

○ 제출자료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의원 및 전문위원 제기기금 요약,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상임위 의원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각 15부)

○ 기타준비사항 : 차관말씀자료(시작시 및 의결시)

※ 기타 조치사항

- 심사 완료후 소위심사보고서 작성협조 및 보고서 입수
- 기금별 수입 · 지출 조정내역 정리 협조

라. 상임위 전체회의(의결시)

○ 내　용 : 상임위 소위에서 조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참　석 : 장 · 차관, 실장, 각 국장 등
○ 진행순서
- 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 위원별 발언
- 의　결
- 인사말씀(장관)

○ 기타준비사항
- 장관말씀자료(원안의결시 및 수정의결시)

※ 심사완료후 상임위 조정내역 요약정리보고(장관)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의절차

① 예결위 전문위원 예비검토　② 종합정책질의
③ 부처별 심의　④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⑤ 전체회의 의결

가. 전문위원 예비검토

○ 시　기 : 10월초순경
○ 장　소 : 예결위 소회의실(본관 5층)
○ 참　석
　– 국　회 :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 농림부 : 실장, 재정기획관, 국장 또는 과장

○ 진행순서
　– 수석전문위원 인사말씀
　– 실장 인사말씀 및 예산 · 기금안 기본방향 설명
　– 예산(안)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재정기획관)
　– 질의 및 토의

○ 자료제출
　– 예비검토자료 등 수석전문위원 요구자료(디스켓 포함)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서(각 15부)

나. 예결위 전체회의(상정 및 정책질의)

○ 시　기 : 11월중순~하순
○ 장　소 : 예결위 회의실
○ 참　석 : 장관, 실장, 각국(2명 내외)
○ 진행순서
　– 제안설명(예산처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책질의 · 답변

○ 제출자료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서(각 80부)
　※각 의원실에 자료를 배포하고, 행정실 30부 제출

○ 기타 준비사항
　– 상임위, 각당 및 상임위 증 · 감액 사업 등 쟁점정리
　– 기획실 여직원 1명 및 노트북
　– 예결위원명단, 사항별 설명서, 펜접시, 메모지 등
　　※ 기타 조치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전입수(각 2부)
- 정책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익일 오전중으로 질의위원 및 예결위 행정실에 제출

다. 부별심의

○ 시　기 : 정책질의 완료후
○ 장　소 : 예결위 회의실
○ 참　석 : 장관, 실장, 주요사업국장 등
○ 진행방법
- 여러 심사대상부처 일괄심의(일정은 2~3일정도)
- 일괄질의 ·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 진행

○ 제출자료 : 장관인사말씀(예산+기금 1건처리, 통상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생략)
○ 기타 준비사항 : 부별심의 대비자료, 사항별 설명서, 펜접시, 메모지 등

라. 계수조정 소위원회

○ 시　기 : 부별심의 완료후
○ 장　소 : 예결위 회의실
○ 참　석
- 차관, 실장은 국회에 대기하면서 연락체계 유지
- 재정기획관, 예산계는 소위원회 주변에서 대기

○ 준비사항
-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명단을 입수, 주요핵심사업에 대하여 의원별 설득 추진
- 상임위, 예결위 및 각당, 경실련 등의 증감액 사업 쟁점 정리
  ※ 기타 조치사항
- 소위원회 의결시 조정내역 요약정리보고(장관)

마. 예결위 전체회의(의결)

○ 시　기 :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종료후
○ 참　석 : 장관, 실장
○ 진행순서

-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찬반토론
- 수정의견에 대한 동의(예산처 장관) - 의 결

4. 본회의 의결

○ 참 석 : 장 관
○ 조치사항
- 국회수정내용 과목별로 예산처 제출
- 확정예산(기금)에 대한 홍보 추진 협조
  ※ 기금운용계획 예산 확정후 관련자료 작성

○ 기금운용계획 개요,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기금운용계획 내역설명서, 기타 참고자료 등

Ⅳ. 기금의 집행

1. 기금의 통지

가. 개 요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확정내용을 사업별로 지자체에 통지(예산담당에서 일괄통지)

나. 업무처리 절차

○ 통지내용
- 사업별 시 · 도 및 시 · 군별 통지(국고 및 기금사업)
- 국고보조금 시 · 도 및 시 · 군별 통지
  ※ 실 · 국별로 통지프로그램으로 전산 입력

○ 통지시기
- 예산(기금)안 통지 : 10월 중순경
- 확정예산(기금) 통지 : 국회의 예산(기금) 확정후 즉시

2. 기금의 집행계획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3)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 근거규정

○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제1항)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제2항)

○ 주요 지출항목내 세부지출항목의 변경인 경우라도 세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함(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⑴ 주요항목(장 · 관 · 항) 지출계획금액의 3/10초과 변경시

○ 기금운영계획안의 작성 · 확정 절차와 동일

※ 작성 · 확정단계 : 기금운영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획예산처 협의(심의) → 국회 상임위 심의 → 국회예결위 심의 → 본회의 의결

⑵ 주요 항목 지출계획 금액의 3/10 이내 변경

주요 항목변경, 세항신설 및 주요사항 내역 변경

① 지출계획 변경요구(안) 작성 : 사업과

② 지출계획 변경요구(안) 결재

※ 기금운용과장 · 국장, 재정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장 협조를 받은후 차관까지 결재(차관전결)

③ 지출계획 변경요구(협의)
※ 사업과 → 기금운용국(과) → 재정기획관실 → 기획예산처 주요사항내역변경의 경우 생략

④ 지출계획변경 협의결과 통보(내역변경의 경우 동 절차 생략)
※ 기획예산처 → 재정기획관실 → 기금운용국(과)

⑤ 지출계획 변경내역 통보(내역변경의 경우 동 절차 생략)
※ 지출계획변경 명세서를 작성(기금운용과) →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사업과 통보(지출계획 변경의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

세부항목(세항, 목) 변경 및 경미한 사항내역 변경

① 지출계획 변경요구(안) 작성 : 사업과
② 지출계획 변경요구(안) 결재
※ 기금운용과장 협조, 기금운용국장 결재(전결)

③ 지출계획변경 확정: 사업과 → 기금운용국(과)에서 확정
④ 지출계획변경내역 통보(내역변경의 경우 동 절차 생략)
※ 지출계획 변경명세서를 작성(기금운용과) →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사업과 통보(지출계획변경의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

Ⅴ. 기금의 평가

1. 기금운용평가의 목적

○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함

2. 기금운용평가의 근거

○ 기금관리기본법의 1999년 12월 18일 개정으로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의 설치 및 동법의 2003년 12월 23일 개정으로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규정 마련 (법 제11조의 2 및 제12조)

3. 기금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회의 기능

○ 전반적인 기금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 기금운용에 대한 점검 ·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기금관리방향을 정립

나. 주요 심의사항

○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 계획지침
○ 기금의 신설 ·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등

4. 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과 조직

가. 기 능

○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
○ 매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
○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연구 및 자문

나. 조 직

○ 평가단은 4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기능별로 총괄반과 3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업무를 분담
  – 총괄반
  – 기금존치평가반, 경영개선/사업운영평가반, 자산운용평가반
  – 기금관리기관평가반

5. 기금운용 평가 방법

가. 평가지표의 구성

○ 평가지표는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자산운용의 2개부문으로 나누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함

○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각 부문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각 평가지표는 "평가기준" 과 "평가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음

○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은 최근 3년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에서 지적 및 권고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을 평가함

○ 자산운용부문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은 최근 3년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자산운용 부문에서 지적 및 권고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을 평가함

나. 평가등급

○ 계량평가지표에 대한 평점부여방식은 각 계량지표별로 별도로 정함

○ 각 비계량 평가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하여 등급별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A+, A, B+, B, C+, C, D+, D, F)으로 평가함

6. 기금운용평가 인센티브

○ 기금운용평가에서 평가대상 분류에 따라 평가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평점의 상승폭이 큰 기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할 수 있음

제 3 장

축산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Ⅰ. 축산발전기금의 개요

1. 설치근거 및 목적

가. 근 거 : 축산법 제35조

나. 목 적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2. 연 혁

연도별	내 용
1974	○ 축산진흥기금 설치 근거 : 한국마사회 제25조 및 행정지시 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975	○ 사료가격 안정적립금 설치 근거 : 사료관리법 제6조 재원 :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납입금
1976	○ 축산법 개정(법률 제2910호 '76. 12. 22) 〈기금설치 및 재원추가〉 – 정부보조금 – 축산물판매부가금 – 수입축산물 판매수익납입금 –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1977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 개시('77. 4. 15) – 축산물판매부가금 징수개시('77. 4. 15) – 정부보조금 1,000백만원 납입('77. 6. 1) ○ 축산진흥기금 관리자 : 농협중앙회
1978	○ 축산법 전문개정(법률 제3024호 '77. 12. 19)으로 축산진흥을 위한 축산진흥회 설립 및 재원추가 – 기금운용수익금 – 차 입 금 ○ 축산진흥회 설립('78. 4. 1)으로 기금관리자 변경 농협중앙회 → 축산진흥회장

연도별	내 용
1978	○ 사료가격안정적립금 → 축산진흥기금에 통합 ○ 농협중앙회로부터 축산진흥기금 인수('78. 6. 2) – 총조성액 : 31,744백만원 – 인 수 : 27,027백만원 – 사 용 : 4,717백만원 ○ 관광호텔용 육류수입시 CIF의 2/100해당액을 기금에 납입 (고시 제2995호 '78. 6. 1)
1979	○ 농협 가축개량사무소 인수('79. 12. 31)로 환특자산 634백만원을 출연금('88. 6. 22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변경)으로 납입
1980	○ 축산업협동조합법 입법회의에서 의결('80. 11. 29) 및 공포 (법률 제3276호 '80. 12. 15)
1981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81. 1. 1) ○ 축산법 개정으로 기금운용관리자 변경(법률 제3382호'81. 3. 7) 축산진흥회장 → 축협중앙회장
1982	○ 축산물판매부가금 징수유예(농림수산부 고시 '82–15) – '82. 4. 1부터 징수유예
1983	○ 도입육우 판매차익납입금 납입
1984	○ 사료원료 안정기준가격제 폐지('84. 1. 1) ○ 도입유우 판매차익납입금 납입
1985	○ 축산법('84. 8. 2), 동법시행령('85. 4. 24), 동법시행령('85. 4. 27) 개정으로 재원추가 – 초과사육부과금 – 수입가축의 국내가격차액납입금
1992	○ 초지법('91. 5. 31), 동법시행령('92. 1. 30), 동법시행규칙 ('92. 2. 7)개정으로 재원추가 –대체초지조성비
1993	○ 축산법('93. 6. 11), 동법시행령('93. 12. 14) 개정 –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 – 축산물판매부가금을 납입금으로 명칭 변경 –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납입금 폐지
1994	○ 축산법(법률 제4843호 '94. 12. 31), 동법시행규칙('95. 1. 19) 개정 – 기금의 사용용도 변경 재해 및 외국으로부터의 악성질병 유입등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 가축위생 및 방역

연도별	내 용
1994	– 수입가축 국내가격차액납입금 폐지 – 수입축산물 판매수입납입금을 축산물수입이익으로 명칭 변경
1995	○ 축산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522호, '95. 2. 8) – 수매비축 사업대상 축산물 추가(돼지고기) – 종축등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권한을 종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203호, '95. 7. 28) – 가축의 종류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상용 조류를 추가 –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등록허가 규모 상향조정
1999	○ 축산법(법률 제5720호, '99. 1. 29)전문개정 – 정액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그 개설요건을 완화 – 가축의 교배제한 및 거세,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 허가제,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 수매 비축사업자의 지정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등을 폐지
1999	– 가축시장의 개설허가 및 거래방법과 가축매매수수료의 결정등에 관한 제한사항 폐지 –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반출금지 – 생산자단체가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업자의 참여유도등을 위하여 가축공제 연관제도를 폐지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 · 운영 ○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93호, '99. 7. 29)전문개정 – 축산업에 대한 등록 · 허가제와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 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축산발전기금의 관리자는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하는등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축산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45호, '99. 9. 7) 개정 – 축산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6101호, '99. 12. 31) 개정 – 2000. 1. 1부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금"으로 편입 ○ 축산법(법률 제6101호, '99. 12. 31) 개정 – 기금의 운용 · 관리에 대한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변경
2000	○ 축산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74호, '00. 12. 15) 개정 – 축발기금의 사업의 종류 변경

연도별	내 용
200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2001	○ 축산법(법률 제6381호, '01. 01. 26) 개정 – 축산발전기금관리주체 변경(2001. 4. 27부터 시행) 농협중앙회장 →농림부장관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독립 법인화(2001. 7. 27부터 시행)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시행 주체 변경(2001. 4. 27부터 시행) 농협중앙회 →농림부 ○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212호, 2001. 4. 21) 개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농협에 위탁(신설) – 수출 관련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가능토록 개정 –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 설치(신설)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 범위(신설) ○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90호, '01.12.31) 개정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되어 기금으로 일원화(개정) – 국회 보고의무만 있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함(개정) – 기금운용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주요항목 지출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 ○ 한국마사회법(법률 제6572호, '01.12.06) 개정 – 축발기금의 납입의 근거가 되는 특별적립비율 인상(50%→60%)
2002	○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722호 02.8.26)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축발기금 신규재원확보 근거마련

3. 조성재원

가. 법적근거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1~6호

나. 내용 및 관계조항

⑴ 정부보조금 또는 출연금 : 축산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호

⑵ 한국마사회납입금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4항
⑶ 축산물수입이익금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⑷ 차입금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38조
⑸ 대체초지조성비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초지법 제23조 제3항
⑹ 기금운용수익금 : 축산법 제36조 제1항 제6호

4. 사용용도

가. 법적근거

⑴ 축산법 제39조 제1항 제1~8호
⑵ 축산법시행령 제12조
⑶ 축산법시행규칙 제44조 제1~7호

나. 용 도

⑴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⑵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⑶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⑷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⑸ 가축위생 및 방역
⑹ 축산분뇨의 자원화 · 처리 및 이용
⑺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비등의 지원범위〉
① 가축의 개량 · 증식사업
②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③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 · 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④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⑤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 · 조사 · 연구 · 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⑥ 기금재산의 관리 · 운영

⑻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① 축산통계 · 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 · 처리 · 교환과 발간
②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 · 분석과 연구
③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⑤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⑥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⑦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⑧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5. 예산편성/융자/결산 절차

가. 축산발전기금 예산편성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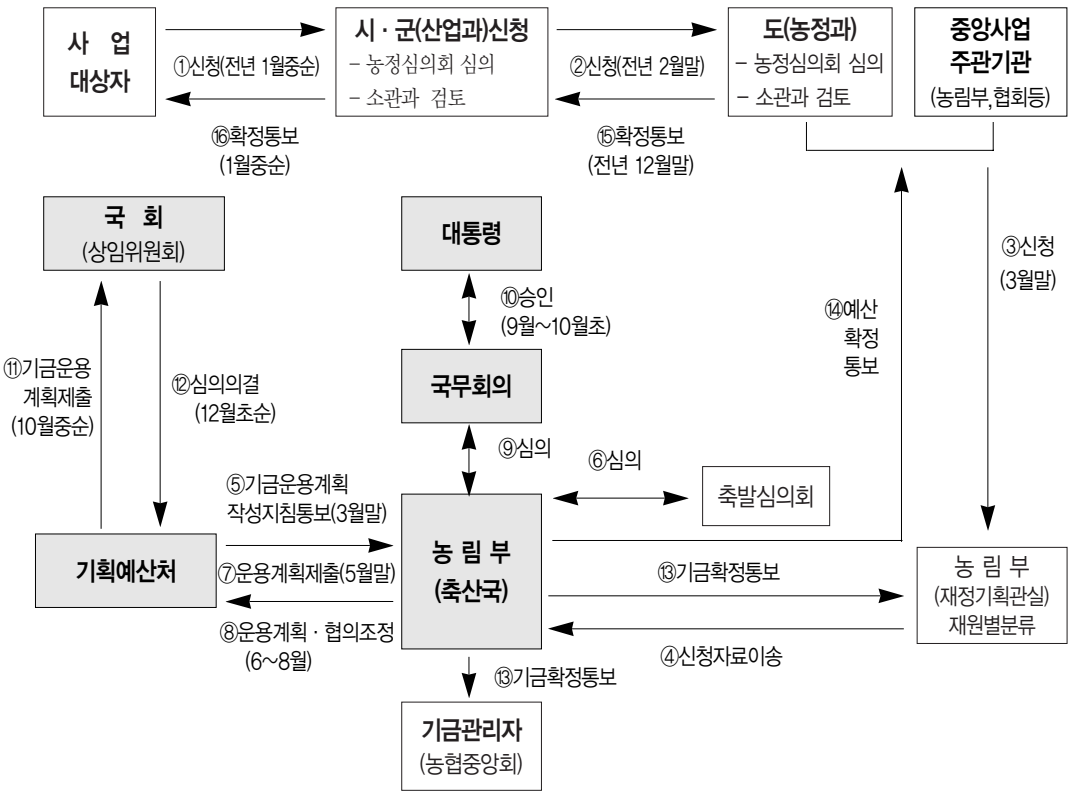

○ 축산발전기금의 예산편성절차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나. 축산발전기금 융자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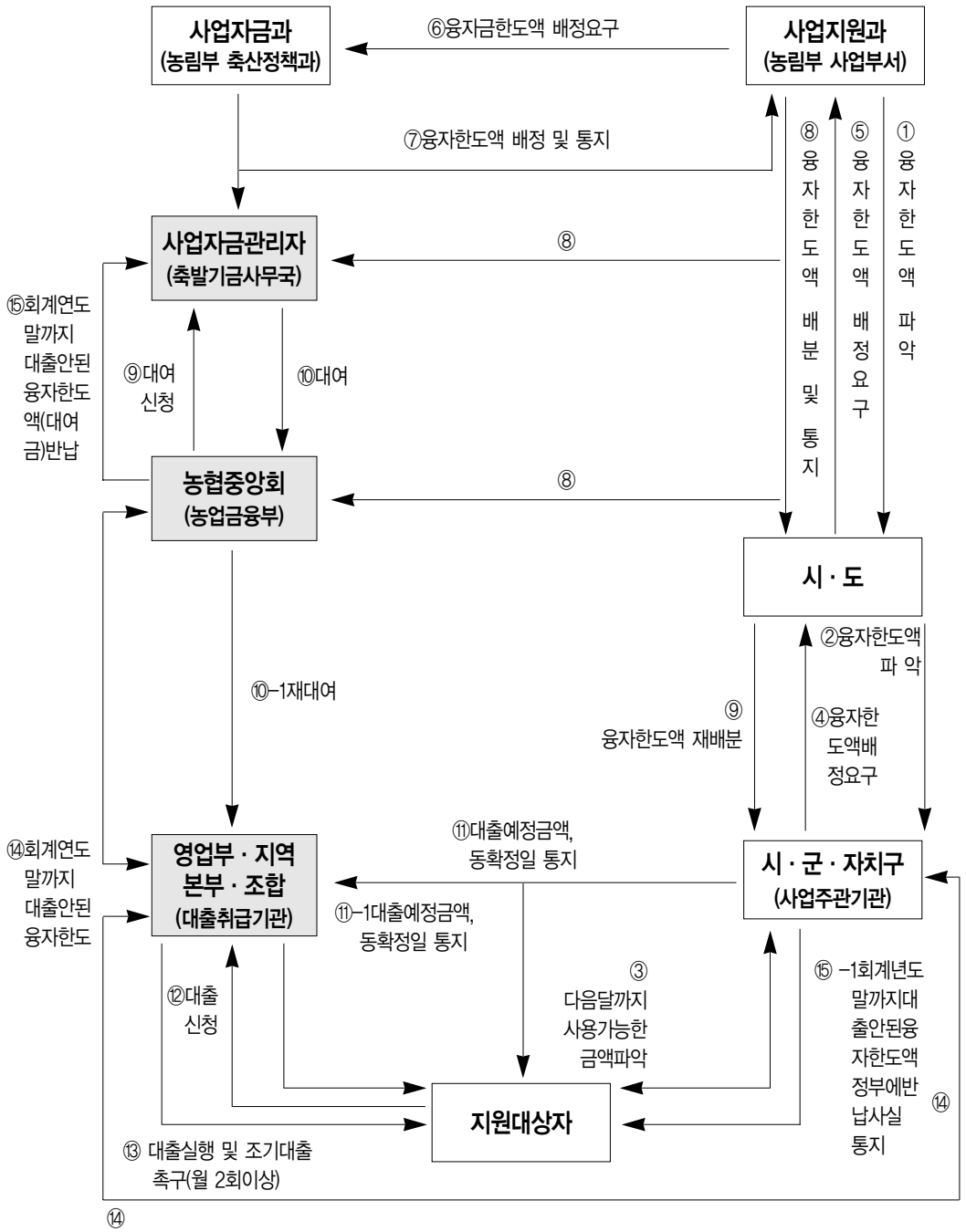

다. 축산발전기금 결산 절차

(1) 축산발전기금 결산 방법

○ 2000.1.1부터 기타기금에서 공공기금으로 변경되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부(재정경제부)가 정하는 결산절차에 의거 작성
-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농림부 경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재정경제부장관)
- 감사원의 기금결산 감사
- 국회제출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회 상임위 보고(농림부장관)

○ 2002년부터 국회 보고의무만 있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 의결을 받도록 변경 됨

(2) 결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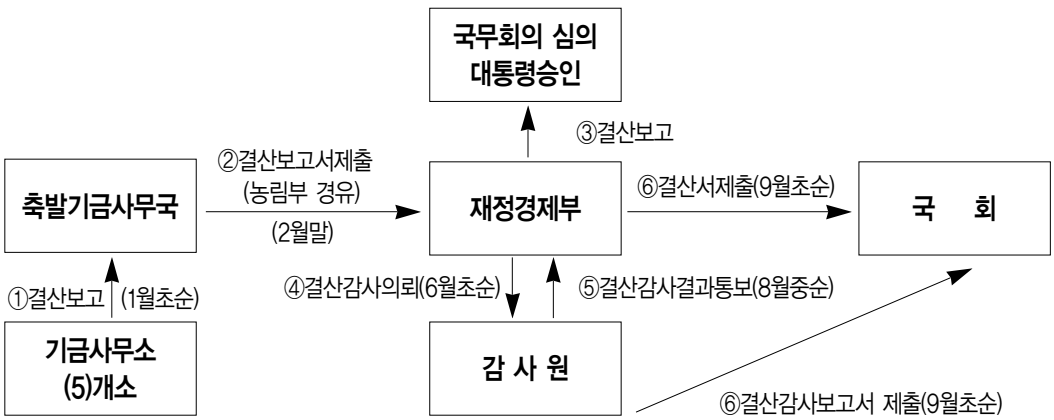

(3)결산 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부속명세서

Ⅱ. 축산발전기금의 조달 및 운용

1. 축산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상황('74년~'04년)

○ 총조성액 : 5조 4722억 7백만원
○ 사용액 : 3조 981억 13백만원
○ 잔액 : 2조 3740억 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조 성			운 용		
항 목	금 액	%	항 목	금 액	%
1. 축산물수입이익금	2,511,521	45.9	1. 대여금	1,854,072	78.1
2.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납입금	109,503	2.0	□ 장기대여금	1,729,675	72.9
3. 축산물인수납입금	28,895	0.5	(가축개량및경영개선)	137,727	5.8
4. 수입가축국내가격차액납입금	21,023	0.4	(유 통 개 선)	676,159	28.5
5. 정부출연금	91,000	1.7	(사육기반확충)	915,789	38.6
6. 한국마사회납입금	902,960	16.5	□ 단기대여금	124,397	5.2
7. 기금운용수익금	1,561,134	28.5	(사육기반확충)	33,190	1.4
8. 대체초지조성비	16,171	0.3	(유 통 개 선)	91,207	3.8
(소 계)	5,242,207	95.8	- 2003말 잔액	1,924,106	
9. 차 입 금	230,000	4.2	- 2004 신규지원	468,250	
계 (A)	5,472,207	100.0	- 2004 회수	538,284	
사 용			2. 수급조절자금	28,908	1.2
항 목	금 액	%	- 2003말 잔액	112,402	
1. 유 통 개 선	238,035	7.7	- 2004 신규지원	28,682	
2.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1,270,026	41.0	- 2004 회수	112,176	
3.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706,538	22.8	3. 고정자산 등	29,762	1.3
4. 사육기반확충	503,722	16.3	4. 출 자 금	4,150	0.2
5. 기금운용관리	34,780	1.1	5. 사업준비금	457,202	19.3
6. 대여금 양도	274,812	8.9			
7. 농어민후계자기금출연	70,200	2.3			
계 (B)	3,098,113	100.0			
잔 액 (A-B)	2,374,094		계	2,374,094	100.0

2. 연도별 기금조성 사용 및 잔액

○ 조성금액중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음

○ '85~'87기간중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았던 것은 동 기간중 축산물수매(소, 돼지, 분유등)에 따른 결손보전이며 00년도는 구)축협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 손실보전(2,748억원)에 기인한 것이고, '01년도는 순조성액보다 보조사업비와 기금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사 용	잔 액	연도말 잔액
'81까지	291,841	81,228	210,613	210,613
'82	136,216	15,690	120,526	331,139
'83	119,269	101,953	17,316	348,455
'84	68,546	39,839	28,707	377,162
'85	29,480	43,440	-13,960	363,202
'86	20,135	44,510	-24,375	338,827
'87	11,664	61,087	-49,423	289,404
'88	62,043	44,360	17,683	307,087
'89	88,128	44,636	43,492	350,579
'90	136,326	35,658	100,668	451,247
'91	318,362	50,283	268,079	719,326
'92	442,156	38,830	403,326	1,122,652
'93	427,641	52,878	374,763	1,497,415
'94	441,263	77,091	364,172	1,861,587
'95	388,297	104,626	283,671	2,145,258
'96	462,689	78,057	384,632	2,529,890
'97	322,480	99,213	223,267	2,753,157
'98	143,841	125,289	18,552	2,771,709
'99	192,734	123,423	69,311	2,841,020
'00	220,607	377,480	-156,873	2,684,147
'01	199,897	236,450	-36,553	2,647,594
'02	263,640	622,647	-359,007	2,288,587
'03	266,019	321,607	-55,588	2,232,999
'04	188,933	277,838	-88,905	2,144,094
계	5,242,207	3,098,113	2,144,094	

3. '74년~'04년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

가. 조달내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항 목	'01까지	'02	'03	'04	계
1. 신 규 조 성	4,520,476	268,764	266,019	193,362	5,248,621
○축산물수입이익금	2,507,317	507	1,554	2,143	2,511,521
○한국마사회납입금	485,264	121,532	183,398	112,766	902,960
○대체초지조성비	12,902	1,285	1,203	781	16,171
○정부출연금	91,000	0	0	0	91,000
○기금운용수익금	1,264,572	145,440	79,864	77,672	1,567,548
○사료원료수입가격 차액납입금	109,503	0	0	0	109,503
○수입축산물국내가격 차액납입금	21,023	0	0	0	21,023
○축산물인수납입금	28,895	0	0	0	28,895
2. 회 수 자 금	4,287,712	348,258	388,605	551,220	5,575,795
○융자금회수	2,365,317	341,188	388,605	538,285	3,633,395
○수급조절자금회수	1,776,360	7,070	0	12,935	1,796,365
○자산처분 · 기타	146,035	0	0	0	146,035
3. 축산물가격안정자금	764,171	0	0	0	764,171
4. 차 입 금	513,000	0	0	0	513,000
5. 전년도 이월액	3,116,287	501,300	413,028	465,642	4,496,257
소 계	13,201,646	1,118,322	1,067,652	1,210,224	16,597,844
6. 기 타 조 달	34,147	0	1,944	0	36,091
합 계	13,235,793	1,118,322	1,069,596	1,210,224	16,633,935

나. 운용내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항 목	'01까지	'02	'03	'04	계
1. 사육기반확충	3,008,290	132,591	182,401	92,354	3,415,636
2. 유 통 개 선	1,571,289	217,047	227,586	406,936	2,422,858
3.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853,041	144,271	75,378	63,693	1,136,383
4. 수급 및 가격안정	3,049,808	200,481	105,997	77,769	3,434,055
5. 보조출연금	70,200	0	0	0	70,200
6. 기금운용관리	27,823	1,004	2,692	3,246	34,765
7. 차입금 상환	183,000	9,900	9,900	109,024	311,824
소 계	8,763,451	705,294	603,954	753,022	10,825,721
8. 기타운영	308,127	0	0	0	308,127
9. 차기이월	3,300,044	413,028	465,642	457,202	4,635,916
10. 재특예탁금	100,000	0	0	0	100,000
11. 축산물가격안정자금	764,171	0	0	0	764,171
합 계	13,235,793	1,118,322	1,069,596	1,210,224	16,633,935

4. 축산발전기금 사용 및 운용누계('74년~'04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 용(A)			운 용(B)						합 계 (A+B)
	보조금	기금 사업비 (대여금양도)	계	대여금	자산 취득	수급 조절	차입금 상환	출자 금	계	
1. 사육기반확충	473,893	29,828	503,721	2,907,965	3,950				2,911,915	3,415,636
2. 유 통 개 선	158,249	79,572	237,821	2,132,688	52,349				2,185,037	2,422,858
3.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419,964	281,538	701,502	334,678	96,046			4,157	434,881	1,136,383
4. 수급 및 가격안정	346,552	152,138	498,690	384,670	2,449	2,548,246			2,935,365	3,434,055
5. 보조출연금	70,200		70,200						0	70,200
6. 기금운용관리		34,153	34,153		612				612	34,765
7. 차입금상환			0				311,824		311,824	311,824
8. 대여금양도		(274,812)	(274,812)						0	(274,812)
합 계	1,468,858	577,229 (274,812)	2,046,087 (274,812)	5,760,001	155,406	2,548,246	311,824	4,157	8,779,634	10,825,721 (274,812)

주) ( )외서는 '00년도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여금 양도분 임

5. 사업별 · 연도별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74년~'04년)

○ 총지원규모 : 10,825,721백만원 → 10조8,257억21백만원
- 사육기반 확충 : 3,415,636백만원 → 3조4,156억36백만원
- 유통기선 : 2,422,858백만원 → 2조4,228억58백만원
-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 1,136,383백만원 → 1조1,363억83백만원
- 수급 및 가격안정 : 3,434,055백만원 → 3조4,340억55백만원
- 보조출연금 : 110,200백만원 → 702억
- 기금운용관리 : 34,765백만원 → 347억65백만원
- 차입금 상환 : 311,824백만원 → 3,118억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구 분	'01까지	'02	'03	'04	계
사육기반확충	보 조 금	316,922	67,274	68,220	21,477	473,893
	기금사업비	29,828	0	0	0	29,828
	대 여 금	2,657,590	65,317	114,181	70,877	2,907,965
	자산취득	3,950	0	0	0	3,950
	소 계	3,008,290	132,591	182,401	92,354	3,415,636
유통개선	보 조 금	132,285	8,950	8,970	8,044	158,249
	기금사업비	75,832	3,740	0	0	79,572
	대 여 금	1,316,503	200,727	218,085	397,373	2,132,688
	자산취득	46,669	3,630	531	1,519	52,349
	소 계	1,571,289	217,047	227,586	406,936	2,422,858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보 조 금	241,978	55,043	60,001	62,942	419,964
	기금사업비	266,098	15,440	0	0	281,538
	대 여 금	254,174	68,722	11,782	0	334,678
	자산취득	89,141	2,559	3,595	751	96,046
	출 자 금	1,650	2,507	0	0	4,157
	소 계	853,041	144,271	75,378	63,693	1,136,383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구 분	'01까지	'02	'03	'04	계
수급 및 가격안정	보 조 금	232,342	25,292	39,831	49,087	346,552
	기금사업비	151,882	256	0	0	152,138
	대 여 금	382,564	2,106	0	0	384,670
	자산취득	2,162	287	0	0	2,449
	수급조절자금	2,280,858	172,540	66,166	28,682	2,548,246
	소 계	3,049,808	200,481	105,997	77,769	3,434,055
보조출연금	보 조 금	70,200	0	0	0	70,200
기금운용관리	기금사업비	27,255	997	2,667	3,234	34,153
	자산취득	568	7	25	12	612
	소 계	27,823	1,004	2,692	3,246	34,765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183,000	9,900	9,900	109,024	311,824
합계	보 조 금	993,727	156,559	177,022	141,550	1,468,858
	기금사업비	550,895	20,433	2,667	3,234	577,229
	대 여 금	4,610,831	336,872	344,048	468,250	5,760,001
	자산취득	142,490	6,483	4,151	2,282	155,406
	수급조절자금	2,280,858	172,540	66,166	28,682	2,548,246
	차입금상환	183,000	9,900	9,900	109,024	311,824
	출 자 금	1,650	2,507	0	0	4,157
총 계		8,763,451	705,294	603,954	753,022	10,825,721

Ⅲ.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계정

1.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계정 일반현황

가. 설치 목적

○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수 있도록 함

나. 설치 근거

○ 축산법 제40조 제 3항

축산법 제40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③ 농림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 대한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 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농림부훈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

다.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부담금(대여금 평잔의 0.5%)
○ 계정운영 수익금
○ 손실보전이후 납입되는 회수금

라. 주요 연혁

□ '95. 2.13 :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계정 설치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계정운영규정 제정(농림부훈령 810호)

☞ '95. 2.18 : 동 요령 제정(축산발전기금내에 대손보전계정 설치)

□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제도 개선

○ '95.12.28 : 대손보전 이행대상 대출금 확대

☞ '95. 1. 1이후 대출금 ⇒ '94.12.31이전에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 대손보전 이행범위 축소 (1차 : '98. 8.21)

☞ 연체이자까지 이행 ⇒ 상환기일(기한의이익 상실)익일부터 1년 이내의 연체이자

○ 대손보전 이행범위 축소 (2차 : '99. 9. 1)

☞ 상환기일(기한의이익 상실)익일부터 1년 이내의 연체이자 ⇒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 대손보전 이행범위 축소 (3차 : '01. 8.31)

☞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 상환기일(기한의이익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의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2002. 1. 1이후 대손보전 이행분부터 적용)

□ 기타 주요 개정내용

○ '97. 12. 30 :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 매년 2회 (6, 12월 말) ⇒ 대여금이자 납부일

○ '98. 9. 7 : 대손보전 시기 조정

☞ 연 2회 (6, 12월) ⇒ 연 4회 (2, 5, 8, 11월 말)

○ '00. 8. 24 : 대손보전 심의회 위원 조정

☞ 당초 9명 ⇒ 변경 7명

○ '02. 8. 26 : 대손보전 이행범위를 명시

☞ 준칙에만 명시 ⇒ 규정에도 명시

○ '04. 8. 18 : 대손보전 이행범위 명확화

☞ 축산정책자금대출금 ⇒ 축산정책자금 대출금 중 비농업인에 대한 대손보전 제외

□ 부담율 변경 내역

○ '95년 : 대여금 평잔의 0.5%
○ '96년 : 대여금 평잔의 0.7%
○ '97년 : 대여금 평잔의 0.8%
○ '98년 이후 현재까지 : 대여금 평잔의 0.5%

□ 자산관리회사 추심위임 계약체결 및 추심위임

○ 2004. 3. 5 : 계약체결【농협중앙회 자산관리(주)】
○ 2004. 3. 22 : 추심위임 시작

2.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재원 조성

가. 재원별 조성 내역

○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의 주요 재원은 부담금, 운용수익, 보전채권 회수금이며, 최초 대손보전계정이 설치된 '95년도에 부담금 4,550백만원, 운용수익 112백만원 등 4,662백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 이후 매년 재원이 조성된 결과 '04년말 현재 부담금 87,967백만원, 운용수익 21,915백만원, 보전채권회수금 255백만원 합계 110,137백만원이 조성됨

(단위 : 천원)

년 도	이 월	조 성			
		부담금	운용수익	보전채권 회수금	계
1995		4,549,754	111,675		4,661,429
1996	4,661,429	9,084,821	314,475		9,399,296
1997	14,060,725	12,067,890	1,434,474		13,502,364
1998	27,336,052	7,146,961	5,207,948	1,200	12,356,109
1999	38,275,299	12,373,094	3,233,943	1,940	15,608,977
2000	49,520,665	9,532,042	3,557,946	15,905	13,105,893
2001	54,222,892	9,447,134	3,482,118	61,481	12,990,733
2002	47,788,842	8,414,604	2,284,536	75,859	10,774,999
2003	32,000,790	7,822,604	1,410,346	25,407	9,258,357
2004	41,259,147	7,528,044	877,488	72,906	8,478,438
합계		87,966,948	21,914,949	254,698	110,136,595

나. 지출 내역

○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의 주요지출은 대손보전비, 대손보전운영비이며 최초로 계정이 설치된 '95년도 및 '96년도에는 지출 내역이 없었고, '97년도부터 대손보전비 227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음

○ 이후 매년 대손보전비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특히 IMF의 영향으로 '01~'03년에는 전체 대손보전비 85,201백만원의 76%인 64,941백만원을 대손보전비로 지출하였음

○ 그 결과 '04년말 현재 대손보전비 85,201백만원, 대손보전운영비 1,553백만원 합계 86,754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잔액은 23,382백만원임

(단위 : 천원)

년 도	지출			예치금 잔 액
	대손보전	대손보전 운 영 비	계	
1995			0	4,661,429
1996			0	14,060,725
1997	227,037		227,037	27,336,052
1998	1,416,862		1,416,862	38,275,299
1999	4,363,611		4,363,611	49,520,665
2000	8,403,666		8,403,666	54,222,892
2001	19,157,191	267,592	19,424,783	47,788,842
2002	26,194,356	368,695	26,563,051	32,000,790
2003	19,589,011	482,085	20,071,096	21,188,051
2004	5,849,595	434,642	6,284,237	23,382,252
합 계	85,201,329	1,553,014	86,754,343	

다. 대손보전 이행 내역

○ 대손보전 이행은 '97년도에 6건, 227백만원의 이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04년도말 현재 총 대손보전 이행은 994건, 85,201백만원임

○ 특히 '01년~'03년도에는 전체 대손보전 이행금액의 76%인 64,941백만원의 대손보전을 이행하였는데 이는 IMF 당시 축산업체의 부도로 인한 현상이었으며 이후 '04년도 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함

(단위 : 천원)

년 도	건 수	대손보전 이행 내역			
		원 금	이 자	비 용	계
1995					0
1996					0
1997	6	203,799	20,243	2,995	227,037
1998	36	1,179,949	235,979	934	1,416,862
1999	63	4,013,757	337,814	12,040	4,363,611
2000	129	7,619,667	771,992	12,007	8,403,666
2001	126	17,537,344	1,605,006	14,841	19,157,191
2002	239	23,419,328	2,758,966	16,062	26,194,356
2003	240	18,097,480	1,471,057	20,474	19,589,011
2004	155	5,520,894	320,958	7,742	5,849,594
합 계	994	77,592,218	7,522,015	87,095	85,201,328

3. 대손보전계정 이행내역 설명

가. 연도별 대손보전 신청 및 이행 내역

○ '97년도 대손보전 신청 및 이행은 신청 3건, 314백만원, 반송 3건, 18백만원, 불인정 69백만원, 최종 대손보전 이행은 6건, 227백만원임

○ '04년말 현재로 신청 1,433건, 137,741백만원, 반송 437건, 47,606백만원, 불인정 5,469백만원이며 대손보전 이행은 994건 85,201백만원임

○ 또한 대손보전 이행금액에는 대출취급기관의 대손보전 신청일 익일부터 대손보전 이행일까지 이자 534백만원이 포함됨

(단위 : 천원)

년 도	신청 금액		반송 금액		불인정 금 액	대손보전이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5							
1996							
1997	9	314,006	3	17,651	69,319	6	227,037
1998	55	3,452,244	19	1,372,109	676,061	36	1,416,862
1999	104	5,776,121	41	948,244	523,766	63	4,363,611
2000	228	22,457,123	99	13,578,840	569,754	129	8,403,666
2001	219	27,383,795	93	6,889,124	1,534,404	126	19,157,191
2002	316	45,400,989	77	18,348,023	899,151	239	26,194,356
2003	294	25,355,253	56	5,139,124	679,952	240	19,589,011
2004	208	7,601,678	49	1,312,718	516,397	155	5,849,594
계	1,433	137,741,209	437	47,605,833	5,468,804	994	85,201,328

나. 대출취급기관별 대손보전 이행 내역

○ 대출취급기관별 대손보전 이행내역은 중앙회 34,160백만원, 축협 51,023백만원, 농협 18백만원임

○ 중앙회 이행금액은 대부분 축산관련 도축·가공등의 업체들이며 농협의 경우는 대부분 '83, '84소입식자금 관련 자금임

(단위 : 천원)

년 도	중 앙 회	축 협	농 협	계
1995				0
1996				0
1997	154,725	71,412	900	227,037
1998	551,402	864,860	600	1,416,862
1999	822,218	3,541,393		4,363,611
2000	3,229,506	5,163,860	10,300	8,403,666
2001	10,565,157	8,592,034		19,157,191
2002	15,022,151	11,169,698	2,507	26,194,356
2003	3,484,736	16,100,685	3,590	19,589,011
2004	330,467	5,519,127		5,849,594
합 계	34,160,362	51,023,069	17,897	85,201,328

다. 지역별 대손보전 이행 내역

○ 각 시도별 대손보전 이행내역은 서울 3,051백만원, 경기 7,236백만원, 강원 1,943백만원, 충남북 23,477백만원, 전남북 25,603백만원, 경남북 32,282백만원, 제주 2,458백만원임

○ 단일 도별로는 경북이 28,036백만원으로 전체 대손보전 이행금액의 33%를 점유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년 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95											0
1996											0
1997								14	155	58	227
1998		113		685	4	451	157	4		3	1,417
1999		424		219	788	158	158	2,329	15	272	4,363
2000		1,092	210	246	1,760	595	1,407	2,514	266	314	8,404
2001	76	2,906	37	3,402	1,212	2,832	381	7,663	122	526	19,157
2002	70	1,371	367	810	238	12,834	1,593	7,402	1,287	222	26,194
2003	2,905	755	606	1,420	1,048	363	2,690	6,790	2,109	903	19,589
2004		575	723	252	543	651	1,333	1,320	293	160	5,850
합 계	3,051	7,236	1,943	7,034	5,593	17,884	7,719	28,036	4,247	2,458	85,201

라. 채무자별 대손보전 이행 내역

○ 채무자별 대손보전 이행내역은 개인 47,911백만원, 비회원조합 153백만원, 영농조합법인 11,719백만원, 회사 25,418백만원임

○ 비회원조합은 전남서부낙협이며, 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만을 의미하고 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함

(단위 : 천원)

년 도	개 인	비회원 조 합	영농조합 법 인	회 사	계
1995					0
1996					0
1997	72,312			154,725	227,037
1998	294,246		1,032,745	89,871	1,416,862
1999	1,769,153		1,772,240	822,218	4,363,611
2000	5,817,520		777,524	1,808,622	8,403,666
2001	11,133,569		3,528,679	4,494,943	19,157,191
2002	12,194,759	153,184	224,880	13,621,533	26,194,356
2003	11,105,174		4,165,276	4,318,561	19,589,011
2004	5,524,144		217,920	107,530	5,849,594
합 계	47,910,877	153,184	11,719,264	25,418,003	85,201,328

제 4 장

축산발전기금의 운용평가

Ⅰ. 2002년 축발기금 운용평가

1.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였으며, 부처별 평가지표는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영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항목별 배점으로 평가하였다

–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배점 100점)
-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 관리의 적정성 : 30점
-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20점
-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 50점

– 자산운영부문(배점 100점)
- 자산운영실적(계량지표) : 20점
- 단기 자금운용의 적정성 : 20점
- 중장기 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25점
- 중장기 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 35점

평 가 지 표	배 점	등 급
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30**	**23.1**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18	13.2
1. 중장기비전과 운용전략의 적정성	5	C
2.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 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5	B
3.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8	B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2	9.9
1. 관리조직의 규모와 구조의 적정성	8	B+
2.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보상시스템의 합리성	4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15.7**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0	7.9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5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5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7.8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5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50**	**37.3**
1.3.1. 사업운영성과	30	22.1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1)	5	C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15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10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20	15.2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10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10	B
합 계	**100**	**76.1**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 0.6266

경영개선 총평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 축산국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기금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본 기금은 축산업 발전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기금의 역할, 기능에 대한 비전이 다소 불명확하고 사업수가 많아 기금의 핵심 사업역량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축산업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기금운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특히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근절대책(1402) 등 예산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기금사업목적의 명료화 및 일부사업의 예산사업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기금의 재원은 마사회납입출연금으로 조성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지니고 있으나 기금재원의 납입주체와 기금수익자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팽창 인센티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한 기금으로 평가됨. 일부 세항사업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의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봄

본 기금의 운용주체는 전반적으로 사업구조의 복잡성, 예산사업과의 경합관계, 축종간의 형평성 문제 등의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문제점의 해소와 사업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금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기금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인원은 1999년 22명에서 현재 1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의 관리인원 규모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1.1. 경영혁신 및 조직 · 인력관리의 적정성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 본 기금은 축산업 발전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기금의 역할, 기능에 대한 비전이 다소 불명확하고 사업수가 많아 기금의 핵심 사업역량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축산업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기금운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일부 사업의 단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사업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축산정책의 상당부분을 본 기금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하므로, 예산 사업의 성격을 지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사업화하고 기금의 차별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 축산업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금사업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 기금에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예산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금 고유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자금집행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예산사업과의 차별화 및 사업의 단순화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음
- 마사회 납입금, 소싸움이익납입금, 축산물비축창고 매각처분, 축산물등급판정 등 일부사업에서의 수익자부담 증대 등을 통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됨
- 사업비 지출측면에서의 절감노력 및 사업내용의 합리화 노력은 다소 미흡하며 폐기 가능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 수입이 마사회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익자와 기금 부담자간 불일치로 불필요한 사업비의 절감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2002년 중 기금운용계획을 축소하고 사업을 현실화하여 사업집행실적을 다소 향상시켰으나, 다양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해 재편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사회 납입금 비율을 상향조정 하였음
- 소매유통시설 등 문제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비 감축 등 사업운용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친환경축산, 우선순위 조정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다소 미흡함. 특히 사료사업지원, 소매유통지원, 닭고기체인화사업, 돈가스 프랜차이즈사업, 수출활성화사업의 축소 내지 폐지가 바람직함

○ 사업관리비 절감, 한우다산장려금 및 거세장려금 감축 등 예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함

○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투자풀의 MMF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보임

- 투자풀의 MMF에 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농협의 상품에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농협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년도에 지적한 도덕적해이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여타 금융기관과 운용상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음

○ 목표수익률 설정이 실제적인 운용과 연관 없이 설정되고 있음
- 외부자문이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노력이 없음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기금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기금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인원은 1999년 22명에서 현재 12명으로 적정하게 조정 되었음
-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으로 운용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관리비 운영계획의 초과분은 농협이 부담토록 하여 기금관리비 절감을 도모하였음
- 1999년 민간관리기금에서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인원 조정이 있었고, 이후 인원 증가없이 유지되고 있음

○ 기금관리조직이 농협중앙회 내에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의 평가체제에 따르며 근무우수자에 대해서 위탁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사업운영 총평

본 기금은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 축산국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기금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특히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근절대책(1402) 등 예산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기금사업목적의 명료화 및 일부사업의 예산사업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가축개량사업(1401)에서의 수익자 부담률 상향조정, 등급판정수수료의 인상 등을 통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의 합리화를 통한 사업비의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특히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일부사업(경영여건개선 (1404)의 일부사업 등)은 생산자단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리고 일부 세항사업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의 사업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봄. 송아지생산안정, 한우다산장려금, 송아지생산기지 사업 등은 모두 한우 번식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됨

1 도축도매시설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융자 및 보조를 통하여 도축도매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바, 축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의 타사업과 차별성이 있음
- 식품위해요소 증가 및 WTO체제하의 국제기준 준수 요구 등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도축장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축산물 도축과 유통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에서 기금목적에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본 사업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정착을 위한 시설과 재래 도축장 통합 및 현대화 시설을 위한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목적에 적절히 연계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사업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통상적인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선정기준의 객관화와 공정한 기준수립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축산위생시설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 공정성이 다소 미흡함

○ 특히 사업 신청자의 사업약속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도축장시설현대화 및 축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2002년중 사업실적이 전무하며 축산위생시설의 경우도 당초 기대수준의 사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됨
- 축산 위생시설도 실적이 미흡하며 HACCP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미흡함
- 소에 대한 HACCP적용 도축비율이 50%에 머무르고 있고, 도축장시설 현대화의 경우 통폐합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체계적인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대상 ·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를 파악하여 업무처리에 환류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도축도매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에 따르는 문제점 및 사업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축산물 물류표준화와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은 체계적인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됨
- 사업량 이외의 실제적인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 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구됨
- 도축도매시설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운영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도축장시설 현대화, 축산물 물류표준화 등의 사업이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폐지 혹은 사업방식의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지극히 미흡함

2 가공판매시설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C+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계란가공 및 집하장 등 9개의 다양한 사업으로서 이중 LPC운영활성화, 축산물등급판정 및 시판시설, 축산물유통조사사업 등은 축산기반 확충에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외의 사업은 시장기능에 따라 업체 자율에 맡겨야 될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기금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기능적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임
  - 사업 내에 기금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은 닭고기 체인, 돈가스프랜차이즈 등 세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인프라 확충이라는 면에서 축산업 발전이라는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나 소매관련 사업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음
  - 특히 식육소매유통시설, 닭고기체인점, 돈가스프랜차이즈 등은 기업자율에 맡겨도 될 만한 사업이며 기금의 역할을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평가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계란가공 및 집하장, 축산물브랜드활성화, LPC운영활성화 등은 적절한 사업으로서 목적과 내용이 연계되나, 식육소매유통시설, 닭고기체인점, 돈가스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로 인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불필요하고 수요가 없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

○ 각 사업별로 사업대상자 → 시 · 군 → 시도지사 → 농림부의 순으로 신청을 접수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판단됨
  - 사업지원율이 매우 낮은 상태인 바, 당초 일부사업의 사업수요예측이 과다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최초계획(1,000억원) 대비 사업실적(520억원)이 부진한 바, 사업규모를 계획단계에서 확대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실적이 50%미만으로 양적으로도 매우 저조하며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양적 집행실적이 미흡할 뿐더러 실제적인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계란가공 및 집하장 사업 등 세부사업별로 사업대상자의 사업상 문제점 및 사업 여건,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환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사업 대상자의 요구와 건의가 본 사업 개선을 위해 반영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업 전반적으로 성과평가지표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양적인 성과평가지표가 있으나,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여러 사업의 경우 간접적으로 나타나므로 성과관리가 어려움
- 사업량 이외의 실제적인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 이 사업은 매우 복잡다기인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지원율이 낮은 것은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소매유통(식육소매유통시설, 닭고기체인점, 돈가스프랜차이즈) 및 브랜드활성화 사업은 지원실적도 미미하고 효과성도 적어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

3 축산물등급판정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A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A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를 통하여 유통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려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축산물 등급판정은 유통개선의 시발점이며 공공서비스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임
- 축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타 사업(특히 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과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기금 목적에 잘 부합되며 축산발전에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현재 관련 비용의 50%를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2010년까지 수익자부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2001년 7월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축산물 등급판정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목적과 내용의 연계가 분명함
- 초기 단계에서 축산물 등급판정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운용주체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 돼지에서는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이며 등급판정소에서 한도배정을 요청하면 농림부에서 승인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대상이 명확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전반적으로 소 · 돼지의 상위등급 판정비율이 상승하는 등 축산물 품질개선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한우 고급육 출현율과 돼지 A · B등급 출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였음
- 등급판정률이 소 100%, 돼지 98%에 이르는 등 등급판정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였음

○ 등급판정자체는 의무사항이나 대상자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등급판정결과의 전산처리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축산물 등급판정소 업무 전체의 성과평가지표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우고급육 출현율, 등급판정비율, 판정결과 등의 사업량 이외의 실제적인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등급화가 축산물유통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요비용의 50%를 징수토록 한 것은 적절한 개선노력으로 판단됨. 등급판정수수료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계획되어 있는바 동 계획의 조기 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와 돼지에서 계란과 닭고기로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요비용 50%를 자체 충당하는 목표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자립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등급판정 결과를 토대로 농가지도 및 고품질 돼지 생산기반 조성에 활용하고 있음

4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식육가공 기술보급을 통한 위생적인 식육유통을 도모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사업과의 차별적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음
- 축산물등급판정 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식육가공 기술보급을 통하여 식육유통의 개선을 도모하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만 관련 비용은 기금보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식육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기 단계에서 식육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순히 등록 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좀 더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식육 유통체계를 합리화하고 식육규격의 통일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현재까지 2,759명을 양성했으나 이것은 교육대상인원의 6%수준이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수료자는 대체로 교육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교육 수료후 일정기간 현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실제적 도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90%선이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교육관련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는 바 본 사업만의 성과 평가 지표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이수자의 증가로서 양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당초운영계획을 초과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의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고 사업홍보를 통하여 업체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사업비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식육인력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5 축협조합경제활성화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일선 축협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별 경제사업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일선 축협조합을 축산 경제 · 유통사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사업목표는 적절하고 타사업과 차별화 된다고 평가함
-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건전화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기금목적에 부합됨
- 축산 발전의 주체인 일선 축협조합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축산농가 계통출하 선급금 운영 및 유통사업 운전자금등의 융자사업으로서 목적과 내용의 연계가 분명함
- 융자와 융자시 선정조건에 정책의지를 담음으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축협 조합에 중기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합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력개발, 협동조합 제도개선 등의 여건 마련은 다소 미흡함

○ 기존사업대상 조합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신규조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조합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와 선정기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실적 우수조합 및 사업전망이 좋은 신규조합을 선정하며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전반적으로 적자 조합수가 감소하고 조합수익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사업성과로 보고한 적자 조합수 감소, 축산물브랜드개발 사례 등은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목표 달성 정도는 평가하기가 어려움

– 축협 경제사업 기반이 점차 구축되고 있으나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

○ 사업대상조합은 대체로 본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자금운용실적 및 사업추진성과 등을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합계점수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실적부진조합에 대하여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조치하고 우수조합에 대하여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본 사업의 다양한 경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의 정립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합별 중장기비전의 미흡, 사업 총괄조정기능의 미비, 평가과정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사업개선 방향은 잘 설정되어 있으나,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등 근본적인 발전방안 수립에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됨

6 축산물 수출활성화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육가공업체의 구매자금 및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계속적으로 현재의 방식대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지는 검토가 요구됨
-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여 HACCP지정 육가공업체 지원으로 성격이 바뀌어 차별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외형상 수출 지원사업이나 내용은 규격돈 구입, HACCP기준 등 위생수준 강화 관련 시설자금 융자로서 다른 사업과의 통합도 가능할 것임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육가공업체에 원료돈 구매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서 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분명함
- 육가공업체에 단기 융자를 하고, 선정기준에 규격돈 출하율, HACCP활용도를 고려함으로서 사업목적과 내용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은 가공판매시설사업(1203)과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원료돈 구매사업과 시설현대화자금은 각각 투명한 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규격돈 출하율, HACCP활용도를 고려함으로서 사업목적에 일치하게 구성되어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PSE출현율, HACCP인증 육가공업체의 수 등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사업의 본래 목표인 수출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 사업대상의 만족도 및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업체별 구매자금의 연간 회전율과 PSE돈육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사업추진독려 및 기술지도를 하는 통상적인 수준임
- 연간 자금회전율 등을 파악하여 지원업체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수출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분명함
- 자금 회전율 및 HACCP지정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나 수출 실적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음

○ 2002년도는 사업초기 연도로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희망자가 소수에 머물렀음
-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통상적 수준의 성과관리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 하에서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가공업체 운영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축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생산자 단체에 의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려는 사업목적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축협조합경제활성화(1206)사업 등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축소되어야 할 것임
-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과 통합이 가능할 것임

○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서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이라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축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한 직거래 매취, 결제자금의 융자사업으로서 내용과 목적의 연계는 분명함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연계되고 있으나 지원액이 1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생산자단체에 대한 단순지원의 성격이 강함

○ 농협중앙회장이 직거래 추진성과 등을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개소당 1억원으로 24개 생산자단체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5배 이상 회전운용 기준을 초과하는 8.2배 회전운용 실적이 달성되어 양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회전운용실적 자체가 적절한 효과측정지표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사업대상자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체계적인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지원금액의 운용능력이 지원금액의 2.5배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5배는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됨

○ 회전운용실적 외에는 성과지표가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성과 관리는 미약하다고 판단됨
– 가격 안정 기여도와 같은 성과지표의 계량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과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노력이 미흡하며 지원기준을 정책목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8 축산물 수급조절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원유수급조절사업과 축산물수급안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축산물수급안정사업은 질병발생지역의 가축수매 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원유수급조절사업은 원유 수급조절을 통한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유과잉공급을 유발하여 원유 수급의 시장기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축산물 수급안정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만성적인 과잉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원유수급조절사업은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원유수급조절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축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축산물수급안정사업은 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가 분명함
- 축산물수급안정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지역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유수급조절사업은 장기적으로 원유과잉상태를 연장시켜 낙농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수급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손실보전 위주의 수급조절시책은 수급조절이라는 사업의 목표는 달성에 한계가 있고 통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대상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조사업으로서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급조절을 지연시킬 개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축산물수급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농가소득보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유수급조절사업은 3년째 계획대비 초과 지출하여 원유과잉상태를 초래하고 있음

– 과잉생산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잉 생산을 오히려 유지시키는 등 시장 기능에 대한 왜곡의 우려가 있음

○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평가지표개발이 다소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성과평가지표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양적인 성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량지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급안정 효과 분석에 따른 사업성과 관리 미흡함
– 원유수급조절사업의 경우 계량화된 평가 지표가 없음

○ 원유수급조절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여 생산 감축을 유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시장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낙농의 경우 가격조정, 쿼터제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다른 축종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급안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송아지가격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송아지 재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우산업의 기반인 송아지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나 송아지수급 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축산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이나 다산장려금 등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음

○ 송아지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송아지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 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가 분명함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함

-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일정부분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방식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의 경우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실제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 지난 3년간 송아지가격이 안정가격 이하로 하락되지 않아 관리비만 집행하였음
- 송아지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높아서 집행실적이 없으나 사업목표달성이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송아지 생산율과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번식 농가 육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2001년도 농협에서 실시한 "한우정책에 대한 농가반응" 조사결과에서는 본 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번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나 본 사업만의 체계적인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한우사육두수 연도별 송아지생산율, 인공수정률 등의 간접적 성과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객관적인 사업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송아지 지지가격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수급상태와 생산비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10 학교우유급식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C+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나 이 사업은 사회복지정책적 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 부적당하다고 평가됨
- 예산사업과의 차별화가 분명하지 않음
- 저소득층 보호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원유수급조절은 축산물수급조절사업으로 시행중이므로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기금사업으로 특별히 수행할 이유가 없는 사업임

○ 우유소비촉진을 통하여 축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금설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함
- 우유소비기반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축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관련법에 의한 보호 대상 학생들에 대한 우유공급가의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분명함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관련법에 의한 보호대상 초등학생으로서 투명하게 결정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학교우유급식 실시로 장기적인 우유소비 기반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낙농가에 대한 편중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또한 사업목표가 저소득층 지원인지 우유소비 확대인지 목표가 불명확하여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함

○ 본 사업의 경우는 만족도조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시도에서 확대를 요청했다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수요는 높은 것이 당연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큰 의미가 없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우유급식 참여 학교수 및 학생수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지표자체가 성과평가지표라 보기는 어려움
–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므로 성과지표를 구성하기도 곤란함

○ 보조사업의 성격상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보조지원 확대 논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육부와 중고등학생에 대한 보조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운영방식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축산물가격조사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가축가격 및 축산물의 산지가격 조사 사업으로 축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가격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물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기금의 핵심적 사업임

○ 축산물 가격조사는 기금의 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격조사 후 이를 수집 가공하여 공표하는 사업으로서 목적과 내용의 연계가 분명함
- 가격 조사체계는 품목수, 조사지역수 등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조사사업으로서 축산물 가격 정보의 수집을 통해 특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등의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됨.
- 일보, 전산망 등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의 활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축산물 가격조사의 정확성, 신속성,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격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인 사업성과 지표 개발 노력이 요구됨

○ 가축거래가 거의 없는 가축시장은 조사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지역을 조정하고 조사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농산물 가격조사와의 통합 등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됨

12 축산물비축창고운영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기금의 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2년중 청산되었음.
- 축산발전기금 소관 비축창고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비축창고가 모두 처분되어 종료됨

○ 당초 국영무역을 위한 사업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사용목적소멸에 따라 본 사업도 2002년중 종결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3개 비축창고 관리비로서 사업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분명함
–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사업내용이 적절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유휴 고정자산을 사업목적 종결 후 적기에 처분하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기금 확충에 큰 도움을 주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비축창고가 모두 매각 되었으므로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종료됨

13 가축개량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우개량사업 등을 통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금내 타 사업과 차별화되어 있고, 축산발전을 위해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기금의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기금목적에 충실한 사업임
- 가축 개량은 축산발전이라는 기금설치 목적과 명확히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축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검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9개의 세부사업이 이루어지는바 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분명함
- 한우개량농가 육성, 한우정액생산 및 공급, 종축등록, 조사, 생산을 지원하고 가축능력 검정 및 정액공급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 종축검정, 등록기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바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합리적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가축개량관련 주요 지표는 대체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 됨.
- 가축개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개량사업 농가수 증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 등의 기대효과의 달성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가축개량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에 환류 함으로써 농가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축산기술 연구소 등을 통하여 가축개량 정도를 측정하는 계량적 성과지표가 있으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축개량협의회를 운영하여 가축개량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축검정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계량화된 성과지표 및 가축 성적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중장기 가축개량목표를 고시하고 젖소산유능력사업 등 일부 사업의 보조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의 검정비 지원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와 같이 타 사업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적용이 바람직할 것임

14 가축질병 근절대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가축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예산사업과의 보완적 관계 설정에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사업은 외부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차별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농특회계의 가축방역사업과 연계하여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금사업으로서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장점이 어느 정도 인정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및 장비 지원 등의 가축질병방역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계성이 명확함
- 보조사업으로 민간방역단체에 운영비 및 장비, 소독약품을 지원

○ 사업대상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 및 기타지역의 불특정 다수 축산농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하여 선정한 방역관련 민간단체로서 대상선정기준은 명확하다고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도에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비 투입으로 사업비 지출 규모가 당초계획의 2배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축산업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됨
- 가축질병에 대한 초동방역추진, 방역의 상시화 등을 방역조치에 따라 확산방지, 발생기간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구제역, 돼지콜레라 억제를 위하여 질병모니터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축산농가들은 대체로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축산농가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가축질병의 발병횟수, 발병기간, 확산도 등으로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에 조치도 분명함
  – 외국방역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고취 등의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음
  – 특기할만한 사업운영방식의 변화는 없으나 지원확대를 통하여 가축질병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장기적 사업체계 개선방안 설정이 필요하고, 농특회계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경영여건 개선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점차 생산자 단체의 자립적인 사업으로 이관해야 할것임
- 축산사업자조금, 축산물브랜드전, 축산종합컨설팅은 정부의 지원을 점차 줄여 자율성과 자립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식육상시전시관임대사업 등은 사업의 성격상 축산물수출활성화(1207)사업으로 편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국형가축사양의 표준화사업은 예산사업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사업과의 차별적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농가 경영비에 대한 보조지원 및 일반 사업비의 성격이 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업과의 통합의 여지가 큼

○ 축산농가의 경영여건개선을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축산발전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점차 생산자단체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임
- 가축공제, 축산사업자조금 등 보험적 성격을 지닌 사업들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사업내용도 매우 복잡하므로 사업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여건 개선은 축산발전에 기초적인 사업이나 일부사업은 이질적인 성격으로 사업의 통합적 효과가 미흡함
-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식육상시전시관임대 등은 사업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됨

○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통상적인 수준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생산자단체 지원성격이 강한데, 선정기준을 점차 생산자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규모가 큰 가축공제와 농가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축산물의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농가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구제역 발생 등의 우발적 사태에 대응한 긴급 지원자금이며 타 사업도 대체로 당초 기대목표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세부사업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이 여러개의 세부사업으로 분할되어 있어 통합적인 성과 발휘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세부 사업은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대체로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교육홍보사업의 경우는 상당수 세부사업이 사업대상자 단체로 이양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일부 세부사업은 계량적인 성과지표가 있으나 계량화된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양돈농가 경영기술지도 사업은 실태조사결과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사업이 다기화되어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체계화하여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재분류,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부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성 사업은 규모를 점차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양돈농가 기술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이관하고, 가축공제의 경우 필요성은 크나 재해지원과의 경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6 낙농진흥회 운영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C+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낙농가의 집유일원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개년(1999~2003)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유수급의 시장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음

– 집유일원화를 지원하는 조치로서 사업목적상 원유수급조절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음

○ 집유일원화를 통한 원유유통비용 절감목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낙농가에 대한 지원 외에 장기적 정책목표는 없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원유인수자금, 폐쇄영업권 지원 등 각 사업은 집유일원화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분명하나 원유인수자금, 폐쇄집유영업권,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낙농업체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집유일원화 참여율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나 목표대비 다소 부진한 실정임

○ 체계적인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 집유일원화 참여율이 부진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 · 조합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집유일원화 참여율, 유통비용절감분 등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양적인 성과지표는 있으나, 이 사업에 따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우유 과잉 상태에서 집유일원화의 무리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젖소사육농가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2003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인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에서는 낙농가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17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C+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농업벤처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사업으로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농업벤처를 통하여 농업기반기술을 개발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정부기금을 통하여 벤처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금의 역할을 너무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벤처를 통한 기술개발 등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임

○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를 지향하는 사업이나 기금설치목적과 거리가 있음
- 농업벤처를 육성하는 것은 축산발전과는 거리가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업벤처를 활성화하려면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보다는 농업벤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고수익사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하여 사업 시행기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선정하나 구체적인 선정방법이 불투명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제2호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이 2002년도에 완료되었으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음

○ 사업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는 해당사항 없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지표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인바, 벤처의 특성상 성과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목표 달성도 측정과 벤처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간투자위축에 대응하여 정부출자비율을 33%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정부 투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나 회수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음

○ 중장기적 사업체계 개선방안 설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18 축산종합시상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C+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로 정부시책 호응도를 높이려는 사업의 목적은 이해되나, 시상금 및 인센티브 사업비는 기금보다는 예산 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기금용도에 대한 관리가 힘든 문제점이 있음

○ 인센티브를 통하여 축산정책의 호응도를 높여서 정책효과를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축산정책목표에는 포괄적으로 부합되는 측면은 다소 인정되나, 기금설치목적과 운용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축산발전 호응도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목적과 내용의 연계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시상과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동기유발을 하는지는 불명확함

○ 농림부가 설정한 주요 사업별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자(시상단체)를 선정하나 구체적인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시상제에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축산 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효과이외에 실제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거두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시상제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대상이 지자체이므로, 수혜자인 지자체의 본 시상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여 지역 축산의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호응도 유도라는 모호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업운영 성과가 간접적이므로 성과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관리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없음. 특히 사업비 인센티브는 성격상 관리가 힘든 문제가 있음

○ 또한 보조사업으로서 지출되는 인센티브사업비(2002년도 40억원)는 기금전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성과 평가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사업은 기금사업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점수 차등화 및 인센티브 사전예고를 통한 효과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센티브 사업비의 지방비(자부담 포함)부담 비율 인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9 경주마생산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기금내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경주마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경주마 과잉기조가 있으므로 점차 사업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주마 사육사업도 축산업의 일종이며 기금 수입의 상당부분이 마사회 출연금이란 점에서 본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일부 부합하는 면은 있으나 전반적인 축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은 크지 않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경주마도입지원, 시설자금지원 등의 사업내용은 사업목적에 연계되어 있으며,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한 종빈마 도입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은 적절함
- 그러나 수요가 한정된 경주마 생산이 비용 효율적인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자격은 투명하게 공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 및 선정우선순위도 제공되어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경주마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주마 과잉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반감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따라서 종빈마 자급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 사업은 점차 감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목표자급율(75%)이 달성되고 경주마 과잉기조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지원효과를 실제적으로 낼 수 있는 수혜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마사회 및 관련협회와 경주마의 과잉기조 수급조절 등 성과관리를 협의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지표, 성과관리지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청됨

○ 경주마 과잉 등 사업여건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축산발전의 파급효과가 낮고 경주마생산 과잉기조가 있다면 점차 사업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국내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농가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사료작물재배 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며,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산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료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가공 등의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하는 사업의 내용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연계됨

○ 각 사업별로 축산농가, 영농조합 법인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료작물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기계화율이 올라가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료 사용기반 구축에는 다소 미흡함

○ 통상적인 설문조사가 있으나 만족도 조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본 사업만의 만족도와 개선정도를 측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농가는 조사료 생산기계·장비의 보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의 수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시도별로 조사료 생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료작물재배면적, 볏집처리비율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지표를 통하여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조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볏짚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 및 기술지원단 운영 등, 조사료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단계로 이루어진 기금집행방식의 단계축소 및 실적확인절차의 유효성 확보 등에 관심이 요구됨

21 가축계열화사업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가축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계열화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기금 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계열화를 통해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설치 목적인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며,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축산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시설자금과 사육비등 운영자금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융자하여 축산물생산, 가공, 유통 계열화를 촉진하는 연계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서의 사전심사 검토과정이 있으며, 시 · 도로부터 계열화 사업자로 선정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정기준은 투명함

○ 사업의 성격상 지원대상 업체수가 소수업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계열화 업체가 돼지는 12%, 닭은 70%를 담당하고 있어서 유통의 합리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돈육은 아직 성과가 낮은 편으로 평가됨

○ 계열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계열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및 수익 증대 유발 효과 등의 분석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요청됨

○ 사업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산농가의 계열화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지표의 계량화가 미흡하고, 계열화 사업의 객관적 성과 등 사업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농가안정성 제고, 품질규격화 등 계열화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별다른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노력은 찾기 어려우며, 이미 계열화가 상당 수준 진척되어 있기때문에 추가적으로 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 사료사업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축산업의 필수원료인 사료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료업체 원료 구매자금을 통해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료사업 육성은 본래 민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농가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사료업체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융자사업 등, 사료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료사업은 일부 특수 사료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료제조시설지원, 사료원료 구매지원, 사료검정 장비지원 등은 사업목적에 적절히 연계되어 있으나, 민간대기업에 대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절차 등이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다소 불분명하며,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에 있어 사료협회 등 관련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우유, 육우, 가축 등의 생산비의 절감 등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우유과잉 생산,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격차 축소로 사업 수요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원방법이 비용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의 경비절감의 효과 면에선 직접 육우농가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 할 수도 있음

○ 사업대상자들은 대체로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 지원 및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사료제조시설지원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지원방법이 비용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료제조시설지원의 경우 생산비의 비교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는 환율과 사료원료의 가격상승률과 사료가격상승률을 비교 검토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정부가 사료원료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료사업 경쟁력을 쇠퇴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업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검정장비 보조비율의 하향 조정은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23 한우다산장려금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A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A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우번식을 촉진하여 한우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을 감안할 때 한시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한우 수급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사업임

○ 송아지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송아지생산을 장려하여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은 한우농가육성을 통한 축산발전 등 정책목표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3두 이상 생산 송아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한우번식 기반 확충이라는 사업 목적에 연계성이 명확함

○ 사업대상과 선정의 객관적 기준(3살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암소)이 명확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양적인 사업목표가 초과달성('02년 사업목표 대비 실적이 76%초과 달성)되었으며 암소도축율, 송아지생산율 등 생산지표가 증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시현되었음

○ 이 사업에 대하여 일선 농가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전체 농가 중 84% 도움이 된다고 응답) 수혜자 만족도 조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육두수, 암소도축율, 인공수정율 등 계량적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단가를 축소하는 등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육두수 증가세와 번식지표를 감안하여 사육두수 확대에 따라 지급단가를 축소하고 사업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24 거세장려금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측면에서 기금 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우농가의 자발적인 거세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쇠고기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수소거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함으로써 소고기 품질 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으나, 거세 한우가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유통체계 개선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육우개선 노력을 하게 할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은 거세 사업 참여 농가로서 시 ·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나, 구체적 선정기준이 다소 불명확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집행실적이 계획보다 높고, 1등급 출현율과 거세우 출하율이 점차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농가의 7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일선 농가의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의 자발적인 육우 품질개선 노력이 미비한 이유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1등급 출현율 및 거세우 출하율 등 계량적 성과지표가 있으며 통상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있으나, 농가 단위의 미시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 관리 체계의 개발 · 구축이 필요함

– 일부 축산농가의 큰 소 거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사업계획 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평가되며, 거세우가 시장에서 차별적인 가격을 받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유통구조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고, 고품질 생산농가에 지원을 한정하는 등 사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서는 수소거세라는 간접적 방법보다는 1등급소 출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5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한우생산기반인 송아지 공급비용을 절감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한우생산기반확충을 통하여 한우 산업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사육기반 안정을 통한 축산물 수급 조절에의 기여라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조사료 생산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우 생산 기반인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초지 조성에 보조, 융자하는 것은 송아지 생산가격 절감으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의 확보라는 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있음

○ 지원대상은 지역축협, 전업 한우사육농가 등으로서 초지를 20ha 이상 확보한 자로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대형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성으로 사업이 운용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도는 사업시행 1년차로서 당초 목표(10개소)를 초과하여 송아지 생산기지수가 21개로 확대되는 등 양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잠재적 사업대상자들이 현재 초지 20ha로 설정된 기준의 완화를 희망하나, 기준의 완화는 본 사업의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송아지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업초기연도로서 단순히 사육두수, 송아지 생산 공급두수 등의 양적인 성과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송아지 생산비 절감액 등 구체적인 사업성과 분석이 필요함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03년부터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초지 및 사료포를 10ha 이상 기확보한 자로 완화)하여 사업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으나, 사업비 지원대상 조건의 완화는 본 사업의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효과적인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26 농협 번식우 시범목장 조성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사업은 농협의 번식우 시범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며 독립된 세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범 목장 조성을 통한 번식농가에 대한 기술, 경영기법 개발 보급의 취지는 기금 설치 목적에 포괄적으로 부합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번식우 목장 모델제시를 위한 관련 축사 시설지원은 농가의 번식우 목장 전환에 도움이 됨으로써 사업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됨

○ 지원대상이 농협으로서, 농협보다는 모범적인 민간업체에 대한 경영지도가 더욱 효과적이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목장을 조성 중인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평가하기는 어려움

○ 농협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이므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조사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일선농가가 이 사업에서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관리지표와 성과관리체계는 현재 구축되어있지 않으며, 향후 시범 목장과 일반 농가의 생산성 등의 비교 평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별다른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노력은 없으나 기금의 다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27 가축입식자금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 · 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방역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기축입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축산기반유지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 경영여건 개선사업(1404)의 가축공제 등 가축질병관련 사업이 여러 세항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분류의 체계화가 요망됨

○ 가축 질병의 확산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가에 실익을 주는 사업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질병 발생 농가에 일정기간 경과 후 가축입식 자금 제공은 살처분 농가의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 연계됨

○ 시군에서 살처분된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이 명확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적기 자금지원으로 구제역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양축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가축전염병의 우발적 사고성격을 감안하여 융자 조건이 기금의 타 융자조건보다 유리(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가축질병관련 대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가축입식자금에 의한 가축의 조기 입식성과 등을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여건개선사업(1404)의 가축공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축산 농가가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경영여건개선사업(1404)의 농가긴급경영 안정자금사업과 유사사업으로 통합체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운용부문

평 가 지 표	비 중	등 급
2.1. 자산운용실적 (계량지표)	**20**	**13.9**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4	C+
2.1.2.-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2	B
2.1.2.-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2	C+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3	D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3	C+
2.1.5.-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3	B
2.1.5.-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3	B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0**	**14.8**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10	B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10	C+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5	19.8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15	B+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10	C+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35**	**26.4**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15	B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10	C+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	10	B
합 계	**100**	**74.9**

자산운용 총평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준비금은 2002년에 평잔기준으로 4,620억임. 이 중 2,900억이 단기자금으로 운용되고 약 40%에 달하는 1,730억이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전년도에 단지 15%만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됨. 또한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투자풀의 MMF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함

그러나 투자풀의 MMF에 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농협의 상품에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농협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년도에 지적한 도덕적해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타 금융기관과 운용상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여유자산 운용대상 상품에 채권, 수익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협의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만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위험관리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위험대비 성과측정 등에 대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향후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1금융권, 2금융권 등 투자대상 기관의 선정기준을 명문화하고 투자대상 상품과 이에 따른 허용위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산운용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1. 자산운용실적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 4.98%

2.1.2. 적정유동성

2.1.2 – 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 0.18%
2.1.2 – 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 1.1054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 100.00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 19.74%

2.1.5.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과 샤프비율

2.1.5 – 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 5.87%
2.1.5 – 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 2.83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 단기자금은 당해연도의 사업성 자금으로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 자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바탕으로 현금성 자금의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단기자금 운용시 예상수입과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하여 현금성 자금의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의 성격상 가축질병(구제역, 콜레라 등), 재난(수해)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성 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어 단기자금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여기에 1년내 지출을 예상하는 자금을 유동성 자금으로 분류하고 이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유동성자금의 기준수익률은 6개월~1년 정기예금의 연 평균금리를 책정하고 목표수익률은 가능한 장기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1년~2년의 정기예금 금리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목표수익률의 책정이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음. 년중 단기자금의 소요를 예측하여 이상적인 단기자금의 운용비중을 정하고 이를 목표수익률 설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의 현금성 자산, 6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금, 6개월 이상의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비중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수익률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자금에 대한 허용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의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위탁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농협의 자금운용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외부보다는 내부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거래 금융기관 선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운용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1년까지는 전액 농협에 운용되고 있었으나 2002년도에 기금 투자풀에 투자함으로써 이의 운용기관인 삼성증권이 추가된 것에 불과함. 사전적으로 운용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 분기별, 월별 자금계획에 의한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확보를 꾀하고 있음. 실제 중요한 것은 예비성 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예측의 적정성임. 2002년도에 현금성 자금 지출규모가 연 중 최고 1,900억에 이르고 평균이 700억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2002년도의 현금성 자산운용 평잔이 670억인 것은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이 자금중 570억을 투자풀의 MMF에 운용하여 수익률 제고에 기여함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 자금 운용인력은 농협에서 자금관리 경력을 가진 직원들로서 전문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금운용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음. 다만 자금운용자들이 농협과 수시로 협의하여 수익률이 높은 일부 신탁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투자풀에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액을 농협에만 운용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의사결정에 농협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던 도덕적해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국고계좌에서 2 영업일 후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률을 제고함
-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목표수익률 대비 단기 자금의 운용성과는 양호함. 기금에서는 이에 대한 요인으로 농협중앙회 자금운용팀과의 네고를 통하여 높은 금리로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러나 이는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현금성 자금의 경우 대부분을 투자풀의 MMF에 운용한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유동성 자금은 전액 농협의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는데 대체상품으로 고려할 만한 투자풀의 채권형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음
- 기금에서는 투자풀 채권형상품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투자풀의 리스크가 농협의 신탁상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농협 상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체상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임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단기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성자금으로 규정하고 가용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기타 여유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중장기자금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2001년 전까지는 자금을 모두 단기자금으로만 운용하다가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 여유자금으로의 운용을 시작하여 그 규모가 15%였고 2002년에는 여유자금의 규모가 40%에 이를 정도로 개선되었음. 이는 과거에 운용자들이 기금의 자금이 사업성자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막연히 단기자금으로 편성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사항임. 2001년도에 단기자금 중 1년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들 자금 중 상당부분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어 여유자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 중장기자금의 기준수익률은 1년~2년 정기예금의 연 평균금리를 책정하고 목표수익률은 2년 만기 통안증권의 평균금리로 정하고 있으며 운용시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기준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의 책정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기준수익률은 운용상품의 만기별로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정하고 목표수익률은 연 중장기자금의 운용의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장기자금의 만기별 운용비중을 정하고 이들 비중에 따른 기준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허용위험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식과 같은 위험상품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여유자금의 운용규정에 50%이상을 농협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점은 위험의 분산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함

- 효율적인 중장기 자금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산 부채종합관리는 지출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함

○ 중장기 자금수급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중장기 자금계획 수립과 운영이 제한적임. 또한 중장기자금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만 포함

하도록 하지 않고 여유자금중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중장기자금운용비율이 과다 계상되고 있음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 정책적 배려로 여유자금의 50%이상과 단기자금 전액을 농협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금운용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선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기금자산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농협중앙회 자금운용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운용대상 금융상품 선정에 있어 농협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명확한 금융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운용규정에 50%이상을 농협에 예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에서는 오히려 규정보다도 더 집중이 심해 전액을 농협에 운용하고 있음

- 기금에서는 네고금리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자금운용의 만기구조나 대상상품의 선정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운용대상 금융기관과 투자 대상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위험관리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 신용도가 앞선 기관에 집중하는 것보다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자금관리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러나 동 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농협내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성이 부족함. 따라서 외부전문가가 자금운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선정 및 투자대상 상품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 기금의 관리는 농협이 위탁받아 하고 있으며 이는 나름대로 자금운용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자금 운용대상까지도 농협에 제한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임

○ 기금의 자산운용은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단기자금 운용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인 운용의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될 필요성이 있음. 운용인력의 권한은 충분히 위임되어 있지만 전원 농협의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음

○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위험대비수익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으며 정기예금 일변도의 자산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과보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의 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금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 위험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용위험, 시장위험으로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으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운용대상 상품에 채권, 수익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유자금의 운용은 거의 정기예금만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허용위험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좀 더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점점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1금융권, 2금융권 등 투자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문화하고 투자대상 상품과 이에 따른 허용위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산운용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 중장기자금의 기준수익률은 1~2년 정기예금의 연 평균금리를 책정하고 목표수익률은 2년 만기 통안증권의 평균금리로 정하여 실제 운용수익률이 평잔기준으로 목표수익률(5.72%)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자산만기 배분에 따른 성과인지 아니면 개별 상품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할 만한 체제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기준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가 어떤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매우 위험이 낮은 정기예금등과 같은 상품의 운용비중이 높아 위험대비 성과 평가를 실행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신탁상품이나 투자풀의 상품 등 시가평가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대비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투자대상의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위험측정 및 이에 따른 위험대비 성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 5 장

축산발전기금과 축산업의 성장

Ⅰ. 축산 현황과 성장

1. 한국 축산업의 위치

□ '02년 농림업 생산액 33.4조원 중 축산업생산액이 9.1조원(27%)

○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
※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우유 ⑤ 건고추 ⑥ 계란 ⑦ 닭 ⑧ 사과 ⑨ 수박 ⑩ 딸기

○ '95년에서 '02년까지 농림업 생산액 증가분 6.7조원 중 쌀이 2.8조원, 축산물이 3.1조원(46%)기여(쌀 6.7조원 → 9.5 , 축산물 5.9조원 → 9.1)
※ 연관산업을 포함한 축산 Agribusiness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

□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 1인당 육류소비량 : ('90) 19.9kg → ('97) 29.3 → ('02) 33.5
※ EU국가 87kg, 미국 72, 호주 66, 중국 36, 일본 34 (01년 기준)

○ 1인당 우유 · 유제품 소비량 : ('90) 42.8kg→ ('97) 52.1→ ('02) 64.2
※ 시유는 최근 감소추세, 치즈 · 버터 · 발효유 등 가공품은 증가 추세

□ '9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었던 축산농가는 90년대 중반 이후 축산물 수입개방, IMF 경제위기 등으로 크게 감소

○ 축산농가 수 : ('90) 88,522호 → ('95) 155,923 → ('00) 72,123
○ 축산농가 비중 : ('90) 5.0% → ('95) 10.4% → ('00) 5.2%
※ 출처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축산농가 : 축산이 주업인 농가)

□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

○ 40대 이하 경영주 비율 : 축산농가 28.8%(전체평균 9.7%)
○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 : 축산농가 26.7%(전체평균 51.0%)
○ 판매액 5천만원 이상 농가비율 : 축산농가 16.4%(전체평균 2.2%)

2. 성과와 과제

□ UR타결과 WTO체제출범 이후의 축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규모화, 시설현대화, 유통개선, 품질고급화 등에 중점 지원

○ '92년부터 '01년까지 총 6조 296억원 투융자(42조/45조 투융자 기준)

※ 분야별로는 기반시설 분야에 3조 5,897억원(60%), 경영개선에 9,547억원(16%), 품질안전 6,734억원(11%), 유통개선 5,385(9%), 축산가공 2,347억원(4%)

주요 성과

전업화 촉진, 고품질 · 안전 축산물 생산확대, 방역체계 조직화, 친환경 축산시책 도입 등의 성과 거양

□ 한우, 양돈, 양계, 젖소 전 축종에서 규모화 ·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

【 축종별 전업농 현황('95~'03.9) 】

축종	전업농 농가수(비중)	전업농 농가수(비중)
한육우	2,458호(0.5%) ⇨ 4,736(2.5)	206천두(8%) ⇨ 466(31.8)
젖소	1,325호(5.6%) ⇨ 4,552(42.6)	98천두(17.7%) ⇨ 341(64.9)
돼지	1,113호(2.4%) ⇨ 2,998(19.4)	2,360천두(36.5%) ⇨ 6,742(72.6)
산란계	357호(12.5%) ⇨ 449(19.5)	23,515천수(50.8%) ⇨ 29,730(60.2)
육계	306호(12.0%) ⇨ 684(39.9)	12,518천수(37.8%) ⇨ 32,034(75.4)

※전업농 : 한우 · 젖소 50두, 돼지 천두, 닭 3만수 이상

□ 등급판정을 통한 시장차별화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 확대

○ 쇠고기 / 돼지고기 등급판정률 : ('95) 30/49% → ('02) 100/98
○ 쇠고기1등급/돼지고기A등급 출현율 : ('95) 12.8/6.3% → ('02) 35.2/38.8
○ 브랜드화 : ('03) 한우 138개, 돼지 151, 닭고기 37, 계란 80

□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쟁력 제고

	'92		'95		'02
○ 한우수소 출하체중 :	499kg		538		593
○ 젖소 두당산유량 :	5,835kg	→	5,941	→	7,071
○ 돼지 이유자돈수 :	18.5두		18.9		19.7
○ 육계 일당증체량 :	37.7g/일		38.4		39.4

□ HACCP 도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제고

○ HACCP 적용 도축장 : ('00) 10개소 → ('03.8) 89
※ HACCP실시로 식육중 세균수가 $10^{5\sim6}$에서 $10^{2\sim3}$수준으로 감소

○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 ('98) 83 / 18천건 → ('02) 106 / 116
※ 02년 잔류물질 부적합률 0.14%, 미생물부적합률 0.20

□ 친환경축산 등 축산업 선진화를 지향한 제도적 기반구축

○ 축산업등록제 도입('02),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04)
○ 축산식품 안전성 관리 일원화('97), 민간방역지원본부 출범('03) 등

향후 보완과제

□ 소규모 브랜드의 난립으로 고품질 브랜드는 미흡
□ 축산분뇨 자원화 및 수요처 확보, 악취 등은 고질적 문제
□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HACCP 등 선진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수준 미흡
□ 중앙 가축방역 의존도가 여전히 크고 농가의 방역의식 희박
□ 자조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생산자의 자율수급조절 능력은 미흡

3. 향후 여건 전망

〈WTO/DDA협상에 따른 전망〉

□ 의장초안 선진국기준 적용시 2010년말 축산물 관세 전망

○ 쇠고기 40% → 26, 냉동돈육 25→16, 냉동계육 20 → 13, 전지 · 탈지분유 176 → 96, 혼합분유 36 → 23.4, 천연꿀 243→134
※ 개도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의 1/3이하로 부담이 감소

□ UR에서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타 품목에 비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기준이 적용되거나 고율관세품목은 영향이 클 예상

〈기타 일반적 전망〉

□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
○ 축산분뇨 악취규제 및 질소 배출량 규제 강화

□ EU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중시하여 이를 국제규범화 · 교역조건화 하려는 움직임이 확대
○ 밀집사육 · 살처분방법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개선요구 증가

□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지속 증가

◎ **그동안 규모화 ·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집중투자로 전업농이 크게 진전되었으므로 향후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 브랜드화, 친환경,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제고, 가축방역의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

4. 축산관련 통계자료

가. 연도별 가축사육 동향

□ 사육 가구수 및 두수 증감

○ 한 · 육우
- ('90) 620천가구, 1,621천두 ⇒ ('04) 189천가구, 1,666천두로 가구수는 감소했으나,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전업화 및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젖소
- ('90) 33천가구 , 504천두 ⇒ ('04) 9.6천가구, 497천두로 '90년 500천두를 정점으로 두수변화는 없으나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어 젖소 사육도 규모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임

○ 돼지
- ('90) 133천가구 , 4,528천두 ⇒ ('04) 13.27천가구, 8,908천두로 한우 및 젖소와 유사하게 영세사육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육규모는 규모화 · 전문화 되고 있음

○ 닭
- ('90) 161천가구 , 74,463천수 ⇒ ('04) 131천가구, 106,736천수로 돼지와 비슷하게 영세사육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육규모는 규모화 · 전문화 되고 있음

나. 국민 총소득 및 농업 총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

○ 국민총소득중 축산업의 비중
- ('90) 0.8% ⇒ ('03) 0.4%로 국민총소득 대비 축산업의 소득 비중이 0.4% 감소

○ 농업 총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
- ('96) 28,986억원 (13.9%) ⇒ ('03) 26,868억원(13.7%)으로 농업 총소득 대비 축산업의 비중이 2,118억원 (0.2%) 감소

다. 축산물 생산액 현황

○ 농업 생산액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 ('96) 69,341억원 ⇒ ('03) 88,696억원 으로 19,355억원 증가함

라. 한국 축산업의 국제적 위치(OECD)

○ OECD 국가중 국내 총생산액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 ('99) 10위 ⇒ ('01) 10위로 동일

○ 축산규모중 사육두수는
- 소 : ('00) 18위 ⇒ ('02) 18위로 동일
- 돼지 : ('00) 12위 ⇒ ('02) 11위로 1단계 하락
- 닭 : ('00) 11위 ⇒ ('02) 10위로 1단계 하락

○ 축산규모중 생산량은
- 육류전체 : ('00) 15위 ⇒ ('02) 15위로 동일

○ 축산물수출액은
- ('99) 18위 ⇒ ('01) 21위 3단계 상승

○ 축산물수입액은
- ('99) 8위 ⇒ ('01) 8위로 동일

붙임 : 1. 연도별 가축사육동향
2. 국민총소득 및 농업총소득 중 축산업 비중
3. 축산물 생산액 현황
4. 한국 축산업의 국제적 위치(OECD 순위)

〈붙 임〉

1. 연도별 가축 사육 동향

가. 가축사육두수 및 호수

(단위: 천두(수), 천가구)

축종	구 분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육우	가 구 수	620	519	465	427	350	290	235	212	188	189
	마 리 수	1,621	2,594	2,735	2,383	1,952	1,590	1,406	1,410	1,480	1,666
	호당평균	(2.6)	(5.0)	(5.9)	(5.6)	(5.6)	(5.5)	(6.0)	(6.7)	(7.9)	(8.8)
젖소	가 구 수	33	23	17	16	14	13.3	12.8	11.7	10.5	9.6
	마 리 수	504	553	544	539	535	544	548	544	519	497
	호당평균	(15.3)	(24.0)	(32.0)	(33.7)	(37.1)	(40.7)	(42.7)	(46.4)	(49.3)	(51.7)
돼지	가 구 수	133	46	27	27	24	24	19.53	17.44	15.24	13.27
	마 리 수	4,528	6,461	7,096	7,544	7,864	8,214	8,720	8,974	9,231	8,908
	호당평균	(34.0)	(140.5)	(262.8)	(279.4)	(321.7)	(344.5)	(446.5)	(514.7)	(605.6)	(671.4)
닭	가 구 수	161	203	162	168	210	218	201	176	144	131
	마 리 수	74,463	85,800	88,251	85,847	94,589	102,547	102,393	101,693	99,019	106,736
	(산란계)	–	–	48,190	45,923	51,934	51,076	49,800	50,191	48,351	51,419
	(육 계)	–	–	34,427	34,671	36,558	45,000	45,660	45,005	44,803	50,122
	호당평균	(462.5)	(422.7)	(545)	(511)	(451)	(470.5)	(509.5)	(577.1)	(686.2)	(813.0)

자 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축통계-최근동향)

나. 가축별 사육두수별 호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한육우	계	235	1,406	212	1,410	188	1,480	189	1,666
	50두미만	232	1,007	208	976	183	990	183	1,115
	50~100	2.8	187	2.9	192	3.7	236	3.9	251
	100두이상	1.1	212	1.3	242	1.4	254	1.6	300
젖소	계	12.8	548	11.7	544	10.5	519	9.6	497
	50두미만	8.5	235	7.2	207	6.0	176	5.1	153
	50~100	3.8	250	4.0	267	3.9	263	3.9	261
	100두이상	0.5	63	0.5	70	0.6	80	0.6	83
돼지	계	19.53	8,720	17.44	8,974	15.24	9,231	13.27	8,908
	1,000두미만	16.80	2,890	14.49	2,590	12.31	2,525	10.40	2,197
	1,000~5,000	2.59	4,512	2.78	4,902	2.75	5,058	2.68	5,019
	5,000두이상	0.14	1,318	0.17	1,482	0.18	1,648	0.19	1,692
닭	계	201.0	102,393	176.0	101,693	144.0	99,019	131.0	106,736
	10천수미만	198.0	8,092	173.4	7,103	141.7	6,821	128.7	6,397
	10~30	1.8	31,454	1.6	28,467	1.4	25,140	1.3	23,846
	30천수이상	1.2	62,847	1.2	66,123	1.2	67,058	1.3	76,493

자 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축통계-최근동향)

2. 국민총소득 및 농업총소득 중 축산업 비중

가. 국민총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구분 / 년도	국민총소득 (A)	농 림 어 업	농 업 (B)	축산업 (C)	농업/국민 (B/A)	축산업의 비중	
						국민총소득대비(C/A)	농업총소득대비(C/B)
1990	178,628.3	15,212.2	13,027.3	1,440.2	7.3	0.8	11.1
1995	397,458.7	22,829.2	19,924.7	2,934.6	5.0	0.7	14.7
1996	446,856.4	23,961.6	20,861.1	2,898.6	4.7	0.6	13.9
1997	448,457.4	23,896.3	20,548.6	2,197.1	4.6	0.5	10.7
1998	476,245.4	22,355.5	19,030.6	1,308.9	4.0	0.3	6.9
1999	523,355.3	24,812.2	21,424.2	2,694.1	4.1	0.5	12.6
2000	576,160.0	25,029.8	21,672.4	2,597.6	3.8	0.5	12.0
2001	621,027.9	24,806.2	21,529.3	2,598.3	3.5	0.4	12.1
2002	685,069.0	24,654.9	21,580.2	3,242.7	3.2	0.5	15.0
2003(P)	722,355.8	22,833.3	19,583.3	2,686.8	2.7	0.4	13.7

자 료 : 농림부(농림업주요통계)

나. 농업총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96	'98	'99	2000	2001	2002	2003(P)
농림어업	23,961.6	22,355.5	24,812.2	25,029.8	24,806.2	24,654.9	22,833.3
농 업	20,861.1	19,030.6	21,424.2	21,672.4	21,529.3	21,580.2	19,583,3
재 배 업	17,641.3	17,362.8	18,387.4	18,646.0	18,456.5	17,813.7	16,385.2
축 산 업 (농업대비)	2,898.6 (13.9%)	1,308.9 (6.9)	2,694.1 (12.6)	2,597.6 (12.0)	2,598.3 (12.1)	3,242.7 (15.0)	2,686.8 (13.7)
부대서비스	321.2	358.9	342.8	428.8	474.6	523.8	511.2
임 업	962.4	1,201.5	1,268.5	1,202.7	1,209.6	1,262.9	1,253.9
어 업	2,138.0	2,123.4	2,119.4	2,154.7	2,067.2	1,811.7	1,996.1

자 료 : 농림부(농림업주요통계)

3. 축산물 생산액 현황

가. 농업 생산액 중 축산물 비중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구분 / 년도별	농산물 생산액	경종부문				축산부문
		계	미곡	채소류	기타	
1996	28,128.8	21,194.6 (75.3)	8,613.2 (30.6)	6,356.3 (22.5)	6,225.1 (22.1)	**6,934.1 (24.6)**
2000	31,828.9	23,746.5 (74.6)	10,504.5 (44.2)	6,724.2 (28.3)	6,517.8 (27.5)	**8,082.4 (25.4)**
2001	32,447.5	24,135.5 (74.4)	10,721.7 (44.4)	7,273.6 (30.1)	6,140.2 (25.5)	**8,312.0 (25.6)**
2002	32,163.7	23,111.8 (71.9)	9,556.4 (41.4)	6,769.4 (29.3)	6,786 (29.3)	**9,051.9 (28.1)**
2003	31,808.7	22,939.1 (72.1)	8,835.9 (38.5)	7,618.9 (33.2)	6,484.3 (28.3)	**8,869.6 (27.9)**

자 료 : 농림부(농림통계연보-부록-생산액)

나. 축종별 축산물 생산액 현황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연도	계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닭/계란	기타
1996	69,341	21,050 (30.3)	11,617 (16.7)	19,013 (27.4)	14,048 (20.2)	3,613 (5.2)
2000	80,825	18,787 (23.2)	14,236 (17.6)	23,719 (29.4)	14,719 (18.2)	9,364 (11.6)
2001	83,120	16,997 (20.4)	15,004 (18.1)	26,923 (32.4)	16,909 (20.3)	7,287 (8.8)
2002	90,519	21,363 (23.6)	16,449 (18.2)	29,184 (32.2)	14,612 (16.1)	8,911 (9.8)
2003	**88,696**	**24,633 (27.8)**	**18,581 (20.9)**	**26,812 (30.2)**	**13,362 (15.1)**	**5,308 (6.0)**

자 료 : 농림부, ( )내서는 구성비임, 기타는 사슴, 벌꿀, 토끼, 오리, 산양 등 임

※ 생산액 순위 10위 이내 품목 ('03)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순위	①미곡	②돼지	③한육우	④우유	⑤건고추	⑥계란	⑦딸기	⑧닭	⑨포도	⑩배추	계
생산액	88,359 (45.2)	26,812 (13.7)	24,633 (12.6)	14,789 (7.6)	8,165 (4.2)	6,950 (3.6)	7,294 (3.5)	6,412 (3.3)	6,360 (3.3)	6,267 (3.2)	195,610 (100)

자 료 : 농림부(농림통계연보-부록-생산액)

4. 한국 축산업의 국제적 위치(OECD 순위)

항 목	통 계 치			세계 순위			OECD 순위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국내총생산액(10억$)	405.8	461.7	427.3	13	13	13	10	10	10
○농림어업비중	(5.1)	(4.7)	(4.3)						
□국토면적 및 경지면적									
○국토면적(천ha)	9,943	9,946	9,954	109	109	109	19	19	19
○경지면적(천ha)	1,899	1,889	1,876	93	93	93	21	21	21
○농가인구1인당 경지면적(ha)	0.45	0.47	0.48	144	145	145	28	28	28

항 목	통 계 치			세계 순위			OECD 순위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인구(천명)									
○총 인 구	47,008	47,343	47,640	26	26	26	9	9	9
○농가인구	4,031	3,933	3,591	63	63	65	6	6	6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5	25	25	9	9	9
○농림어업 경제활동인구	2,243	2,148	2,069	56	57	58	6	6	6
□축산									
○사육두수									
- 소 (천 두)	2,134	1,954	1,954	74	76	77	18	18	18
- 돼지 (천 두)	8,214	8,720	8,974	19	17	17	12	11	11
- 닭 (백만수)	103	102	102	33	32	32	11	10	10
○생산량(천톤)									
- 육류전체	1,539	1,496	1,556	28	28	28	15	15	15
- 쇠고 기(지육기준)	306	233	210	31	39	41	16	17	18
- 돼지고기(지육기준)	916	938	1,006	18	18	18	13	13	13
- 닭 고 기(정육기준)	262	267	291	35	36	36	16	16	17
- 계 란	479	490	537	20	20	19	11	11	10
○도축두수(천두)									
- 소	997	730	633	43	53	58	16	17	19
- 돼지	13,293	14,325	15,338	16	16	16	10	10	10
○도축중량(kg/두)									
- 소 (지육기준)	312	327	338	6	5	4	5	4	3
- 돼지(지육기준)	81	81	83	36	36	27	17	18	15
○우유									
- 생산량(천톤)	2,253	2,339	2,537	39	40	38	23	23	22
- 두당산유량(kg/두)	6,872	6,889	7,017	8	9	9	6	7	7
□수출액(백만$)									
○농림축산물전체	1,532	1,580	1,640	41	38	40	23	23	23
○축산물									
- 육류전체	83	52	30	28	37	37	18	21	21
- 쇠고기	0.76	0.11	0.12	71	90	93	27	28	29
- 돼지고기	75	46	22	20	22	27	17	17	21
- 가금육	4.5	4.6	6.6	39	40	37	22	22	20
□수입액(백만$)									
○농림축산물전체	8,450	8,463	9,584	14	14	13	12	12	12
○축산물									
- 육류전체	1,187	902	1,345	9	11	9	8	9	8
- 쇠고기	795	555	947	5	8	5	5	8	5
- 돼지고기	259	182	216	11	17	14	10	15	12
- 가금육	80	112	111	20	19	19	14	13	13

자 료 : 농림부(해외농업통계-세계속의 한국)

Ⅱ.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 합자금 및 컨설팅을 브랜드 전업경영체에 중점 지원
○ 산자, 가공 및 유통업체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

○ 친환경직불, 분뇨자원화, 사료영양관리 등 자연순환체제 구축
○ 유기축산, 조방축산, 동물복지 등 축산선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

□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장단계에 우수농장인증제 도입, 사료공장에 HACCP 도입
○ 도축 · 가공장에 HACCP를 정착,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HACCP 도입
○ 농가 · 가공장 · 소비자 교육 · 홍보 강화 및 위생검사 확대

□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제 구축**

○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
○ 농가 교육강화와 방역관련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방역인식 제고
○ 지방 방역인력 확충과 민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방역 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

○ 축종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중심의 수급관리체계 정착
○ 가축공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

축산정책 목표 및 수단

테마	추진개념	주요 프로젝트	비전
경쟁력 제 고	○ 브랜드가 경쟁력 제고의 전략적 축 ○ 시설개선,가축개량 등 기반정비	• 브랜드 중심의 전업경영체 육성 • 등급화 등 품질관리 강화 • 가축개량, 사양관리 효율화 • 새로운 요리개발 및 수출상품화 • 소비촉진 등 국산 수요기반 확충	環境·人間·動物이 調和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환 경 증 시	○ 직불 등 환경개선 인센티브 강화 ○ 축산업과 농경지의 자연순환 체계구축 ○ 동물복지 강화	• 친환경 · 유기축산직불제 도입 · 확대 • 초지 · 사료포 기반 대폭 확대 • 농경지 액비살포 확대 • 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 오염부하를 고려한 사육제한 • 동물복지 제도화 및 직불제 추진	
소비자 증시	○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 확인 · 추적 · 제거 ○ 소비자 시장평가가 가능토록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 농장단계 HACCP체계 확립 • 선진 위생제도 도입 · 정착 • 생산이력제(Traceability) 도입 • 단계별 위해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 시장평가 제도화 • 원산지 등 공정시장질서 확립	
예방적 방역	○ 민간 ·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는 예방적 방역체계 확립	• 국경검역 강화, 악성질병 유입차단 • 민간 및 지방방역 체계화 •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 축종별 · 질병별 긴급방역 체계화	
자율수급 경영안정	○ 전국단위의 자조금 단체를 통한 수급관리 ○ 경영안정 제도화	• 의무자조금단체 육성(8축종) • 자조금단체 수급관리기능 정착 • 수급관리 개입원칙 정립 • 가축공제 확대개편, 재해지원현실화	

◈ 정부 : 환경, 안전성, 브랜드, 차별화 등 경쟁요소를 중심으로 지원
◈ 농가 : 자율과 창의로 시장기능에 따라 자기혁신에 의해 생산성 향상

Ⅲ. 축산경제의 발전

1. 축산물 유통부문

축산물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조성

○ 조합 산지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확대

- 지원실적 : ('01)600억원 ⇒ ('02)741 ⇒ ('03)755 ⇒ ('02)1,405
- 조합 브랜드사업 컨설팅 : 15개조합

○ 「Power Brand Twenty」 운동전개로 인한 선도브랜드 육성

- 선도브랜드 선정 : 15개 브랜드(한우10, 돼지5)

구분	선 정 브 랜 드
한 우 (10)	가평(옻한우), 횡성(횡성), 평창영월정선(대관령HAPPY700), 장수(장수), 함평(천지), 전남동부(순한), 상주(감먹는), 대구(팔공산강우), 합천(황토), 하동(솔잎)
돼 지 (5)	도드람양돈(도드람양돈), 논산(장군), 금산(인삼), 부경양돈(포크밸리), 고령(가야그린)

※ 조합 축산물브랜드 : 150개 (한우72, 돼지54, 닭2, 계란6 기타16)

- 추진성과 : 조합 축산물 선도브랜드 매출액 25% 증가
  ('03) 1,345억원 ⇒ ('04) 1,680억원, (335억원↑)

○ 한우 연합브랜드사업 추진 : ('04) 4개소

- 전남동부(순한한우), 강원(하이록), 충청권(토바우), 경기남부(한우람)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선도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한 브랜드 육성

-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 12개업체
- 인지도 조사 : 15개 선도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이미지 평가
- 농협브랜드 점유율 : 32%(등록된 전국브랜드 428개중 농협 136)

○ 브랜드육 전문점 개설로 우수 축산물 판매 차별화

- 서울 송파 문정점 브랜드 판매제품
  * 한우 : 평창(대관령한우), 전남(순한한우), 합천(황토한우)
  * 돼지 · 닭고기 : 농협(목우촌)
  * 계란 : 한국양계(산소란, 목계촌)
  * 꿀 : 한국양봉(선유) 등

○ 브랜드육 축산물공판장 상장 경매제 도입 및 물량확대

- 상장브랜드 : ('03) 4개 ⇒ ('04) 6개
- 상장두수 : ('03) 796두 ⇒ ('04) 1,492두(696두↑)
- 브랜드육 서울공판장 등급판정 B1이상 상장 출연율 58.4%

【 '04 브랜드육 서울공판장 상장실적 】

(단위 : 두)

구 분	홍 천 늘푸름	합 천 황 토	영 주 한 우	순 한 한 우	상주감 먹는 한우	익 산 황 토	계
상장두수	528	414	331	1,010	104	169	2,556
출현두수	302	236	180	600	48	126	1,492
출현율	57.2	57	54.4	59.4	46.2	74.6	58.4

○ 「소비자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인증한 축산물브랜드중 농협 점유율은 50% 차지

- 전체 18개(한우8, 돼지10) ⇒ 농협 9개(한우5, 돼지4)

【 축산물 브랜드 인증업체 주요 현황 】

축 종	업 체 명	브랜드명	브랜드육 연간출하두수	주요거래처
한우 8개	평창영월정선축협	대관령한우	804	농협유통 등
	안성농협사업연합	안성마춤한우	860	LG유통, 신세계
	장수축협	장수한우	1,169	까루프
	대구축산농협	팔공상강우	585	대구백화점 등
	하동축협	하동솔잎한우	337	농협부경유통 등
	횡성축협	횡성한우	948	자체매장 등
	남해한우영농조합	남해화전한우	571	대동백화점 등
	양평초우회	양평개군한우	368	삼성플라자 등
돼지 10개	도드람양돈농협	도드람포크	62,000	대형유통점
	의성축협	의성마늘포크	18,764	롯데백화점 등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	144,088	E마트 등
	농협육가공분사	프로포크	73,365	농협계통매장 등
	(주)선진	크린포크	135,765	현대백화점 등
	대상농장(주)	하이포크	78,476	현대백화점 등
	진왕영농조합	동설맥포크	37	진왕정(식육전문점)
	(주)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돼지	30,536	LG유통 등
	소백산쑥돈영농조합	소백산쑥돈	16,505	롯데백화점 등
	탐라유통	한라산도야지	59,636	가맹점(서울20여개)

※ '04년 축산물브랜드인증 심사자료에 의함

가공공장 HACCP인증 획득

○ 축산사업장 HACCP 인증 지원 확대

- 지원실적 : ('02~'04년) 140백만원, 15개소

○ 축산사업장 HACCP 인증 획득으로 위생육 유통시스템 구축

- 도축장 13개소 ⇒ 13개소(전 축산물도축장 100% 인증완료)
- 육 · 유가공공장 : 전사업장 45개소 ⇒ 23개소(51%)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point)식품위생 국제기준으로 식품을 처리 · 가공하는 작업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를 중점관리 하는 선진 위생관리제도 임

초음파 육질진단 시스템 구축

○ 초음파 육질진단시스템 구축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지도

- 개발 기간 : '03. 6 ~'03. 12
- 개발 내용
  * 인터넷을 통한 초음파 측정자료 전송 및 판독시스템 구축
  * 초음파 자료의 D/B 및 활용서비스 구축
  * "촬영 → 전송 → 판독결과등록 → 농가지도"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보급 및 운영 : 74개조합 보급('04.9월)
- 초음파 영상판독비 지원(축산연구소) : 10천두, 100백만원

○ 기대효과 : 출하적기 판정 및 판정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로 대 농가 사양지도에 활용

축산물 명품인증제 추진

○ 조합 생산 우수축산물 명품인증제 도입('04.12월)

- 인증대상 : 조합 생산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인증기준 : 안심축산물(유해성 잔류물질로부터 안전성확보)
  명품축산물(안심축산물 중에서 품질우월 품목)

– 인증마크 종류

인증번호 : 123-456789
(공통)

인증번호 : 123-456789
(농산물)

인증번호 : 123-456789
(축산물)

– 인증절차

지역조합	⇨	중앙본부	⇨	품질검사기관	⇨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	중앙본부
인증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품질검사 (중앙분석센터)		심의, 의결		인증서 교부

– 인증검사 : 출하전 단계 및 시판품에 대해 검사
– 품질보증마크 활용 : 축산물 포장재에 부착
– '05년 품질인증 계획 : 한우 3개소

○ 명품인증제 기대효과
– 농협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고품질 · 안전 축산물 생산 확대 유도

농협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 농협자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으로 축산물 안전공급체계 및 신뢰도 제고
– 브랜드 선도조합을 대상으로 전문판매장과 연계 추진
– 시스템구축 지원 : 터치스크린 및 프린터(라벨인쇄용)
– 참여조합 : 3개조합(평창영월정선축협, 대구축협, 횡성축협)
– 적용판매장 : 5개판매장(브랜드축산물문정점,대구축협판매장 대구백화점, 동화백화점, 횡성한우프라자)

〈농협 자체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한우의 출생에서 생산 ⇒ 도축 ⇒ 가공 ⇒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을 정보측면에서 추적하는 시스템
- 생산단계 : 개체별로 생산이력 정보 입력
- 도축 · 가공단계 : HACCP인증 작업장 지정 운영 및 관련정보 입력
- 판매단계 : 소비자가「생산이력」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정보 검색

축산물 공판장사업 활성화

○ 조합원 출하물량 우선 배정 및 계약출하제 실시로 물량확보
- 중앙회 계통출하 물량 실적
  ※ ('04)소(135천두 83.9%), 돼지(1,018천두 74.5%)
- 계통출하 활성화자금 운영 및 지원(83억원)
  ※ 출하선급금(31억), 한우계통활성화자금(40억), 가축계약출하사업자금(12억)

○ '03년도 축협 전체 계통출하 물량 10.2% 상승

【 축협 공판장 계통출하 두수 】

(단위 : 천두)

구 분	'00	'01	'02	'03	'04
소	140	115	126	133	151
돼 지	1,555	1,712	1,633	1,713	1,536
합 계	1,695	1,827	1,759	1,846	1,687

○ 공판장을 권역별 부분육 유통 중심 기지로 육성
- 일반대형 유통점, 조합판매장, 식육점에 대한 거래 확대
- 부분육 유통시설 확충 : ('04) 255두/일
- 부분육 가공(소,돼지) : ('04) 80천두

○ 서울공판장을 브랜드전문도매시장으로 육성하여 도매유통기능 강화
- 한우 브랜드육 상장업체 : ('04년) 6개소

【 공판장 현황 】

구 분	개 설 일	시설 규모 (평)		처리능력 (두/일)	
		부 지	건 물	소	돼 지
서울공판장	'86.6.25	6,656	5,152	288	2,710
부천공판장	'00.5.29	7,832	3,369	120	1,500
나주공판장	'92.5.8	13,151	3,378	100	700
고령공판장	'93.6.18	8,909	3,560	100	700
부경양돈(김해공판장)	'97.1.10	3,151	4,910	200	2,500
부경양돈(부경공판장)	'02.12.17	42,752	4,606	300	2,000
제주축협공판장	'93.3.25	6,216	1,542	100	1,250
	7개소			1,208	12,410

※ 서울축산물공판장 이전 후보지 물색

○ 이전사유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공해 민원해소」

○ 폐쇄시기 : 2007년까지 도축기능 이전 결정
- 서울시 방침 제915호('03. 12. 30)

○ 추진 내용
- 공판장 이전 Task-Force Team 구성('04.8.23)
- 수도권 인근 기존도축시설 인수 불가에 따른 개별부지 물색
  ※ 해당지자체에서 인허가 불가 통보(이천, 광주, 용인, 여주)
- 공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후보지 공개모집

산지-소비지 직거래사업 활성화

○ 산지조합과 대형유통업체 연계추진으로 조합 축산물 판로 확대 및 다양화

- 조합 생산 브랜드 축산물 입점 지원 : 17개 조합
- 브랜드축산물 유통점 입점 : 9개 브랜드
- 대량사용업체 계약내용 : 한우고기 170톤, 26억원

○ 공영방송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홍보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 TV 기획프로그램 방송 : 32회(쇠고기 11, 닭 · 오리 21)
-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 27회(쇠고기6, 닭 · 오리12, 우유등 9)
- 옥외 및 전파광고 : 3회(오리1, 우유등 2)

○ 국내산 축산물 요리대회 및 바이어 상담회를 통한 소비촉진 도모

- 요리대회 개최 : 참가 240팀
- 바이어 상담 : 156건(해외 6건, 국내 150건)
- 유통업체 바이어 간담회 : 58명

2. 축산물 가공 · 판매부문

축산물 단체급식사업 매출액 증대

○ 단체급식 매출액 : '00년 대비 238억원 증가 및 183% 성장

- ('00) 284억원 ⇒ ('04) 522억원

○ 단체급식 거래처 수 : '00년 대비 127개소 증가

- ('00) 834개소 ⇒ ('04) 961개소,

【 단체급식 실적 】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한우	1,472	18,301	874	14,268	939	17,711	970	19,993	908	17,863
돈육	1,130	5,129	1,073	5,672	1,335	7,445	1,967	9,914	2,990	19,495
수입육	279	1,940	184	1,286	237	2,302	218	2,462	31	311
계육	490	2,229	697	3,794	868	4,206	1,105	5,342	1,163	6,815
육가공품	95	654	141	927	139	1,026	134	873	213	1,240
계란 등	52	185	97	632	136	1,624	560	2,609	921	6,510
합계	3,518	28,438	3,066	26,579	3,654	34,314	4,954	41,193	6,226	52,234

축산물 단체급식사업 권역별 공급체계 확대

□ 축산물 단체급식 가공시설 확충 : 3개소(부천, 영남, 호남)

○ 부천 가공센타
- 시설현황 : (기존) 614평 ⇒ (확장) 720평(↑106평)
- 일 생산능력 : 21톤, 개장일('00. 9.)

○ 호남 가공센타
- 시설현황 : 150평
- 일 생산능력 : 9톤, 개장일('04. 9.)

○ 영남 가공센타
- 시설현황 : (기존) 85평 ⇒ (확장) 128평(↑43평)
- 일 생산능력 : 9톤, 개장일('01. 8.)

□ 기대효과

○ 호남지역 생산공급으로 권역별 축산물단체급식 공급체계 구축

○ 일 생산능력 증대 (일16톤 ⇒ 일39톤)
※ 학교 급식시장 점유율 : 12%

– 국내 급식학교수 8,117개소중 거래 급식학교수 961개소

조합 – 중앙회 단체급식협력사업 추진

○ 조합과 중앙회간 단체급식 역할분담 및 협력사업 추진
– 중앙회는 원료조달 및 제품가공, 조합은 영업 및 배송 담당
– '04추진실적 : 7개조합, 매출액 28억원, 물량 370톤

○ 조합이 생산한 급식제품 원료육 구매
– '04추진실적 : 8개조합(2,568톤, 금액 116억원)
– 기대효과 : 조합 경제사업활성화 기여

【 원료육 구매 내역 】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대구축협	논산축협	고령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기타조합	계
단체급식	물량	736	725	714	104	73	44	2,396
	금액	3,055	3,367	2,993	553	357	240	10,565
군납가공	물량	13	41	23	60	20	15	172
	금액	75	242	133	355	120	87	1,012
계	물량	749	766	737	164	93	59	2,568
	금액	3,130	3,609	3,126	908	477	327	11,577

※기타조합은 대전양돈 파주축협, 대전축협임

한우 부분육 상장판매

○ 한우 부분육 상장 판매개시('04. 6. 8)
- 취급실적 : 상장 39톤(145두), 판매 18톤,
  매출액 282백만원, 수익 29맥만원
- 기대효과
  * 경매제 도입으로 도매시장 한우 경락가격 지지역할 제고
  * 지육에서 부분육 으로의 유통 선도
  * 중도매인 식육점 홍보 등을 통한 브랜드육 구매 유도

군납 취급물량 및 공급체계 확대

○ '04년 군납 취급액은 '00년대비 10%↑, 물량기준은 8%↑ 성장
- 취급액기준 : ('00)1,973억원 ⇒ ('04)2,178억원 (205억원↑)
- 물량기준 : ('00) 86천톤 ⇒ ('04) 93천톤(7천톤↑)
- 군납조합 수 : 48조합 (육류 43개소, 우유 7개소)
- 한우고기 군납추진 : ('04) 911톤

○ 군납조합 안전공급을 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지원
- 냉동운반차량 : 15조합, 238백만원
- 제품위생검사 : 28개조합 20백만원
  ※ '04군납 계약단가 인상 : 11.7% ↑

【 군납 취급실적 】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사업물량	쇠고기	6,190	7,060	7,362	7,119	6,466
	돼지고기	12,968	13,666	12,470	12,988	12,286
	계 육	14,196	15,648	14,926	15,345	15,722
	계 란	13,353	11,111	11,057	10,820	11,198
	우 유	39,983	39,262	38,423	47,185	47,563
	계	86,690	86,747	84,238	93,457	93,235
취 급 액		197,291	193,660	198,811	214,462	217,767

가공사업장 전문인력 육성

○ 유통 및 가공사업장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 전문인력 육성인원 : 63명(농협28, 축협35)
- 육가공장 운영실무회를 통한 교육 : 2회

○ 축산물 위생교육 강화로 도축검사원 및 위생감시원 육성
- 도축검사원 육성 : '05년 100명 교육예정
- 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육성: '05년 3,000명 교육예정

○ 축산물 위생교육원 신설로 전문인력 육성
- 주요시설 : 실습용 도축시설(소5두, 돈30두, 닭100수)
- 생 활 관 : 120명 수용

양돈부문 계열화사업 추진

□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유도한 양돈계열화사업 추진

○ 수직계열화체제를 구축하여 축산발전 선도 물량확대
- 완전수직계열조달 : ('04) 71천두

○ 조합과의 사업연계 강화로 조합의 경영수익 개선 지원
- 육가공조합 생산 돈육 체화부위 구매물량 확대

[육가공사업 현황]

◇ 주요시설 및 생산능력
- 김제육가공공장 : 도축(돼지 2,000두/일),
  가공(육가공 42톤/일), 부분육(100톤/일)
- 유기질비료 : 폐기물처리 40톤/일, 비료생산 11톤/일

◇ 주요제품 : 프로포크(부분육), 주부9단(햄, 베이컨, 소시지 등)

◇ 육가공품 시장점유율 : '00년7.9% ⇒ '04년10.3%(2.4% ↑ 성장)

◇ 영업망 : '00년 952개소 ⇒ '04년 976개소 (824↑ 증가)

◇ 규격돈 조달 : '00년 56% ⇒ '04년 64% (8%↑ 증가)

【 육가공사업 농협계통 취급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1	'02	'03	'04
총 매출액 (A)		118,781	110,291	109,491	119,491
계통매출	중 앙 회	3,974	9,065	9,757	11,015
	자 회사	3,280	10,661	13,059	14,981
	회원조합	4,348	5,595	4,993	6,329
	소 계 (B)	11,602	25,321	27,809	32,325
점유비 (B/A)		9.8%	23.0%	25.4%	27.1%

양계부문 계열화사업 확대

□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지원으로 양계계열화사업 추진

○ 계열농가에서 '00년이후 436농가에서 총 56백만수 원료육 조달
- 계열농가는 음성 계육가공공장 인근 반경 100㎞ 범위내 농가

【 계육가공사업 농협계통 취급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1	'02	'03	'04
총 매출액 (A)		50,760	49,999	44,037	57,946
계통매출	중 앙 회	4,200	5,019	6,906	7,439
	자 회사	5,079	5,196	5,081	7,287
	회원조합	703	835	730	1,437
	소 계 (B)	9,982	11,051	12,717	16,163
점유비 (B/A)		19.7	22.1	28.9	27.9

○ 계열농가별 사양기록부 작성 및 데이터분석 등 농가지도

○ 농가사육비 지급기준을 농가에 유리하게 적용
- 사료이용인센티브 : 실제 농가평균 요구율 및 계절별 하한선 적용
  ※ 타업체(고정요구율 적용)
- 자금 결제방법 : 출하후 7일 이내 현금정산
  ※ 타업체(2~3개월후 어음결제)

【 농가 사육비 지급내역 】

사육 수수료	약 품 비	깔 짚 비	상 차 비	연 료 비
140(원/kg)	50(원/수)	10(원/kg)	14(원/수)	70(원/수)

[계육가공사업 현황]

◇ 주요시설 : 음성계육가공공장(도계 64천수/일, 가공 8톤/일)
- 보관능력 : 1,128톤(냉동창고 : 844, 냉장창고 284)

◇ 주요제품 : 치킨, 버거, 미니스테이크, 통닭 등

닭고기 외식 프랜차이즈사업 진출

○ 또래오래(TOREORE) 가맹점 300호점 초과 달성
- 가맹점 : ('03) 100개소 ⇒ ('04) 325개소
- 매출액 : ('03) 1,364백만원 ⇒ ('04) 6,421백만원

○ 영업망 확충 및 증가
- ('01년) 305개소 ⇒ ('04년) 909개소 [604개소↑ 증가]

○ 외식(냉식)사업 시장점유율 및 사업물량 성장
- 시장점유율 : ('01년) 5.6% ⇒ ('04년) 7.2% [1.5%↑ 성장]
- 사업물량 : ('01년) 496톤 ⇒ ('04년) 2.801톤 [2,305톤↑증가]

○ 목우촌 소비자 대상 (13개 신문) 및 '04년도 광고대상 식품 부문상 수상 획득

3.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양돈 · 양계수급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양돈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설치 : '01. 3. 27.

○ 구 성 : 각 위원회 별 15명 이내 위원
○ 재 원 : Seed money 1,000억원 유치, 축발기금
○ 성 과
-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공익광고('02.10, 홍보비 17억원)
- 산지가격 안정을 위한 계란수매비축 및 종계 도태
  ※ 계란수매물량 : 13,612천개, 406백만원
- '04 미국 박람회 참관 및 조사연구

□ 양돈수급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I lovepig. or. kr)

○ 사업목적 :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홍보사업 활성화
- 주요콘텐츠 : 돼지고기 요리정보, 맛집정보 등 소비자 정보

○ 개설일자('04. 6월), 사업비(17백만원)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노력 강화

□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 파동,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에 의하여 급격한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시 정부와 비상대책을 공동추진하여 조기정상화에 기여

□ 농 · 축산 계통조직간 협력강화로 조직 시너지효과 극대화

○ 농촌 · 도시형 조합간 축산물 직거래 알선 및 중개
○ 농 · 축산 유통사업 마케팅담당자 판촉기법개발 워크샵 개최

품질관리 노력 강화

□ 양계 · 양봉 유통개선 및 품질관리

○ 양계 품질관리 선도농가 육성(120농가) 및 조합계란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양봉농가 표준경영모델 개발 보급 컨설팅, 보증벌꿀 품질검사 및 판촉 지원

○ 육용종계 농가 사양관리 자료 시스템 구축(150백만원)

○ 유통벌꿀 수거검사(4회) 및 품질보증심의회 개최(5회)

□ 한우고기 판별검사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위한 유전자분석실 축산연구소에 설치운영

축산물 소비촉진홍보 강화

○ 조합과 유통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홍보 강화
- 우수 축산물 및 산지 상품설명회 개최

○ 축산물 소비자의 반복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가정 요리개발 및 요리강습회
- 건강 · 장수 · 어린이 등 다양한 컨셉으로 축산물 시식회 개최

○ 돈육 부위별 균형소비 유도
- 양돈 품질관리 선도농가 육성 지원 : 150농가

○ 대중 음식점 메뉴개발보급사업 추진
- 일본 식품개발원과 공동 추진 (돈가스 덮밥)

○ 양돈농가 출하의향 및 폐사율 설문조사

○ 연중 계획적인 홍보활동 및 축산물 소비행사 주도적 참여
- 축산물요리콘테스트, 서울국제식품전시회, 하이서울페스티발

가금류 수급안정사업 추진

○ 종계도태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4. 1. 27 ~ 2. 21
- 종계 도태수(511천수), 사업비(3,050백만원)

○ 병아리 및 닭종란 폐기(랜더링)사업
- 사업기간 : 2003. 12. 30 ~ 2004. 1. 19
- 폐기수(병아리 2,500천수, 종란 3,500천개)
- 사업비(604백만원, 폐기단가 100원/수,개)

○ 종오리 및 종란 폐기사업
- 사업기간 : 2004. 2. 22 ~ 3. 10
- 도태수(종오리 100천수, 종란 840천개)
- 사업비(1,250백만원)

○ 육용종계농가 사양관리자료 취합분석 시스템 구축(150백만원)

○ 가금산물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조사(60백만원)

2004 돼지고기 축제 (Pork Festival) 개최

□ 돈육 소비촉진을 위한 제1회 돼지고기축제 개최홍보

○ 주제 : 우리돈 좋을시 GO !

○ 개최일정 : '04.11.3. 잠실종합운동장(1만5천명 참가)

○ 개최내용
-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 테마 중심으로 구성
- 시식관 : 무료 시식 · 2004인분 순대국밥, 맛대맛 시식
- 전시관 : 별비 맛집관, 수출부위관, 돼지체험관
- 이벤트 : 기네스도전 ! , 120M 꼬치구이, 돼지오줌보 축구, 요리경연대회, 선물증정 등 각종 이벤트 마련

컨 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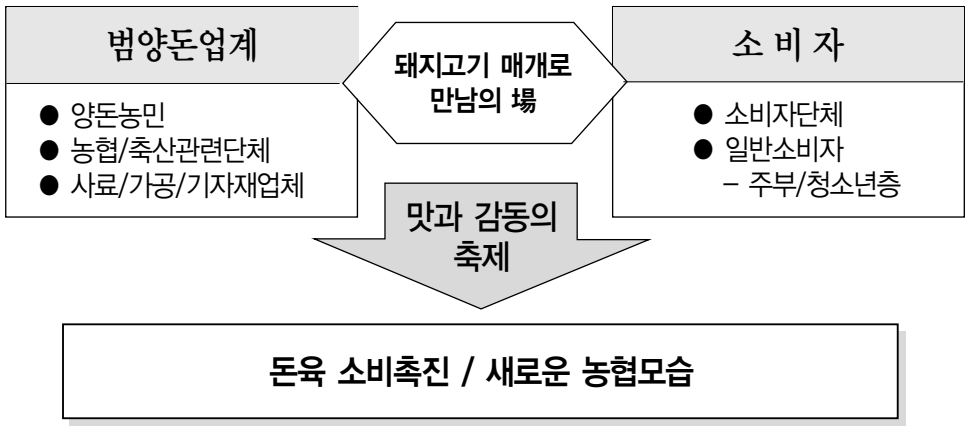

□ TV · 라디오 · 신문 등 언론에 관련기사 홍보 및 보도

○ 축산물 소비실태 및 개선책 보도

수출부문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강화

○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131백만원, 포장비 및 국내운송비)
– 지원조건 : 연간 10만불 수출실적 및 수출검역장 첨부시 지원

○ 수출부위 세분할 동영상 요리방법 제작보급
– 동영상 200본, 요리책자 3,000부

○ 가열 돈육가공품 대일 수출시장 개척활동 전개
– 일본 및 중국 OEM공장 현지방문 조사

○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돈육 가공품 개발 · 보급 확대
– 육가공조합의 돈육가공품 개발 · 홍보비 지원
– 수출부위 전문음식점 판촉비용 지원(17개 음식점, 48백만원)

4. 축산물 생산기반부문

한우 번식사업지원 확충

□ 한우번식사업 지원확대를 통한 사육기반 확충

○ 생축장사업 : 조합 보유 및 임차 민간축사에 대한 사업지원

○ 위탁 · 예탁사업 : 농가에 번식밑소 사육위탁 및 입식비 지원
- 지원규모 : ('02) 7,500두, 150억원 → ('03) 6,000두, 150억원 → ('04) 21,600두, 300억원
- 생축장 가축공제가입비 지원(5,917두, 88,735천원)
- 면역백신 지원(22,868두, 150,932천원)등 609백만원

가축개량 사업 활성화

□ 한우개량사업 활성화 추진

○ 등록우 및 검정우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67억원)
○ 한우육종농가 시범사업 실시(50두, 355백만원)
○ 한우 생체단층촬영 기술교육보급을 통한 개량촉진(5천두, 1억원)

□ 가축개량 및 우량정액 적기공급

○ 정액공급실적 : 1,770천str(한우정액 : 1,330, 젖소정액 : 440)

○ 한우개량 성과(연간 1,423억원 농가 소득증대)
- 한우종모우 선발 : 후보종모우 40두, 보증종모우 20두
- 한우체중(18개월령↑) : ('01)512kg ⇒ ('04)558kg [9.0%증가]

○ 젖소개량 성과(연간 1,768억원 농가 소득증대)
- 젖소종모우 선발 : 후보종모우 15두, 보증종모우 3두
- 검정농가 산유량 : ('01)8,364kg ⇒ ('03)8,899kg [6.4%증가]
- 일반농가 산유량 : ('01)6,749kg ⇒ ('03)7,117kg [5.5%증가]

□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활성화

○ 고능력 젖소 보증종모우 선발기반 조성

○ 젖소품평회 및 검정사업평가대회 개최

□ 종돈 개량

○ 개량목표 : 강건, 다산, 균일한 우수 종돈 생산

○ 개량내용
- 능력적 경제형질 : 총 산자수, 등지방 두께, 정육율 등
  ※ 돼지 총 산자수 : ('02)11.0두 → ('03)11.3 → ('05)12.5
- 외모적 경제형질 : 다리, 유두, 생식기 등의 외형 개량

【 가축개량시설 현황 】

구 분	사무소	소재지	종모우	총사육두수	면 적	건 물
한우개량	한우개량사업소	충남서산	191두	2,052두	337만평	16천평
젖소개량	젖소개량부	경기고양	76두	82두	21만평	2천평
종돈개량	종돈사업소	전남영광	4,088두	41천두	11만평	11천평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 계약수의사 및 낙농헬퍼사업 지원 : 137백만원
○ 대북 분유지원 : ('03) 1,400톤, 3,267백만원
○ 낙농조합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중국(World Dairy Expo)
○ 낙농체험관광사업 등 특색사업 개발 보급
- 소비자가 낙농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관광상품화
  ※ 사례 : 치즈피아사업(임실치즈축협)
- 투자규모 : 40억원(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주요시설 : 치즈가공판매장, 치즈만들기 체험장, 치즈박물관 등

〈낙농조합 운영 현황〉

○ 집유장 : 14조합, 25개 집유장
  - 집유능력 : 4,921톤/일

○ 유가공 공장 : 5조합, 9개 유가공공장
  - 일평균 생산능력 : 2,341톤/일(시유 및 가공유, 치즈 등)

낙농제도개선 및 우유 소비촉진 홍보

○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개선 대정부 건의
  - 이원화된 원유집유기능을 집유조합과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조정 낙농조합장 협의회 개최
  - 원유가격 13% 인상안 도출

○ 우유소비촉진 홍보
  - 우유콘서트(SBS TV방영) 및 114전화 우유소비 촉진광고

○ 낙농관련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우유수급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유 수급안정 도모
  - 낙농종합정보센타(NDCIC)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젖소 개체별 산유량 예측 및 낙농 정보제공

5. 친환경축산 및 컨설팅부문

유기축산 시범목장 운영

○ 국내 유기축산 사육모델 개발보급을 위한 안성목장내 시범목장 운영
  - 사육두수 : 한우 49두, 젖소 40두, 돼지 315두, 닭 2,000수
  - '04출하실적 : 계란 135천개, 돼지 10두

【 시설 현황 】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축사면적	249평	188평	154평	153평	119평
사육규모	50두	40두	40두	2,000수	6,000수
시설형태	깔짚	깔짚	깔짚	평사	2동

○ 국제수준과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준 설정(사양관리, 인증기준 등)
→ 본부부서에 유기축산을 담당하는 '친환경축산팀' 신설

○ 유기조사료 시범포 조성 및 생산
- 조성면적 : 11ha(33,000평)
- 생산실적 : 244톤(호맥 및 수단그라스 연작생산)

○ 국내최초 유기축산물 인증취득 계획
- 취득품목 및 시기 : 유기계란, 돈육('05.상반기),
유기계육, 우유('05.하반기)

가축방역활동 강화

□ 전사적 가축방역활동 강화로 농가 피해발생 방지

○ 구제역, 돈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범국가적 방역지원
-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 기여('02. 11. 29)

○ 특별대책추진기간 설정 및 특별대책상황실 운영('04.3.1-5.31)

○ 양축농가 소독방제용 생석회 2회 무상지원 : 773백만원

○ 방역인식 고취 교육 및 홍보
- 교육 : 1,161명
- 홍보 : 인천 국제터미날 홍보용 LED전광판 제작 설치

□ 일선 사무소 가축 방역기능 지원강화

○ 조합 소독방제차량 구매 지원(564백만원)
- 연차별 지원실적 : ('02) 100대 ⇒ ('03) 31 ⇒ ('04) 20

○ 조합 백신자동주사기 · 연막소독기 구매 지원 : 41대

○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활성화 지원 : 141백만원

○ 시 · 군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매공급 : 32개품목(6,497백만원)

○ 조합 동물병원 확대 지원
- 57개소, 316백만원(기운영 49개소, 신규 8)

□ 양축농가 자율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지도 · 홍보 강화

○ 계통조직 컨설턴트를 활용한 개별농가 특별 교육 홍보

○ 농장 출입통제 시설, 소독기구 설치 유도
- "사육시설 300㎡이상 농장의 소독설비 및 소독 의무화" 홍보

농협 가축공동 방역단 활성화

○ 사업 목적
- 사업단 조기정착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 피해방지

○ 사업단 현황
- '97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으로 설치 운영
- 농협 공동방역사업단 : 중앙회 1개소, 지역 · 품목축협 85개소

【 공동방역단 운영현황 】

농 협						양돈협회	양계협회	계열주체	합 계				
중앙회	조 합				계								
돼지	소	돼지	닭	공동		돼지	닭	닭	소	돼지	닭	공동	계
1	26	47	7	5	85	20	1	3	26	68	11	5	110

○ 추진내용
- 조합 소독방제차량(151대)를 활용한 농가 소독실시 지원
- 시군단위 지역방역협의회 능동적 참여로 주도적 방역 수행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내실화 지원
– 시 · 군 공동방제사업단 소독약품 구매지원 : 54억원(27회분)

□ 기대효과

○ 조합 가축공동방역사업단 활성화로 양축농가 방역혜택 제고
○ 조합별 사업단 정착으로 방역기능 강화와 양축농가 실익증대 기여

가축무료순회 진료 활동

○ 산간지역 등 무수의촌 농가 무료순회 진료 및 질병예방 지도
– 지역본부별로(9개반) 진료반 편성 운영 : 매분기 1회
– 영세 양축농가 가축 무료 순회진료 지원('01년) 1,285농가 ⇒ ('04년) 1,638호

【 가축무료순회진료 추진실적 】

구 분		'01	'02	'03	'04
진 료 반		9개반	9개반	9개반	9개반
실시지역		22개시군	22개시군	22개시군	22개시군
실시기간		(1차) 2 ~ 3월 (2차) 8 ~ 9월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실적	농 가	1,285	2,007	1,648	1,638
	두 (수)	2,327	183,076	6,852	4,254

주) 2002년은 닭 사육농가를 신규로 포함하여 증가된 것임

축산분뇨처리 지원강화

□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환경 종합점검 지원 강화

○ 액비저장조(약 1,400개)에 대한 성분분석 및 적정 시비량 자료 제공으로 액비 자원화 촉진

○ 가축음용수분석 : 6,000점(미생물 외 12종 검사)
○ 축사시설(전기,환기,분뇨처리)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 · 교육

【 '04가축분뇨 발생량 추정 】

축 종	사육두수 (천두)	1일 배출량 (kg)	발 생 량	
			1일(톤)	년간(천톤)
한(육)우	1,666	14.6 (14.6)	24,324 (24.324)	8,878 (8,878)
젖 소	497	45.6 (35.6)	22,663 (17,693)	8,272 (6,458)
돼 지	8,908	8.6 (4.2)	76,609 (37,414)	27,962 (13,656)
닭	106,736	0.12	12,808 (12,808)	4,675 (4,675)
	계		136,404 (92,239)	49,787 (33,667)

※( )내는 세정수를 제외한 분뇨발생량 기준임

현장중심 축산컨설팅사업 강화

□ 양계 경영컨설팅사업단 지정

○ 경영개선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농림부 우수사례로 선정
– 사업량 32개소, 사업비 220백만원

□ 축산컨설팅 자격인증제 추진

○ 인증 축산컨설턴트 배출 : 141명('03 65명, '04 76명)
– 한우 74, 낙농 25, 양돈 22, 양계 7, 수의 13

○ 축산컨설팅 전문가 육성 교육실시 : 8주

□ 정보기술 활용한 컨설팅 인프라 구축

○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livestock.nonghyup.com)구축운영
○ 축종별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종합컨설팅사업 추진

○ 정부의 지원을 받아 3개년('02~'04)시범사업으로 실시

○ 대상농가 : 2,000호, 사업비 20억원(호당 1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농가 /조합 /중앙회 /농협사료 각 25% 분담
- 농가 니즈파악 → 진단 → 처방 → 시행 → 평가

○ '02~'04년도에는 조합 및 중앙회는 컨설턴트 양성, 외부인력 풀 확보 등 컨설팅 사업 기반 구축

【 시범사업 실적 】

(단위 : 백만원, 개소, 농가)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참여조합	농 가	축발기금	중앙회	조 합	농 가	계
02	145	1,930	720	420	556	0	1,696
03	111	2,299	580	580	1,651	765	3,576
04	101	2,000	485	485	1,114	1,113	3,197
합 계	357	6,229	1,785	1,485	3,321	1,878	8,469

□ '05년 추진계획

○ '04년까지 개발 완료된 「축종별 경영관리프로그램」·「축사환기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 개별농가의 경영 및 축사환경 정밀분석

○ 경영전문가(공인회계사 등) 및 축사시설 전문가를 외부인력풀 추가 편입하여 체계적인 컨설팅 실시예정

축산컨설팅 인력풀 구성 운용

□ 인력풀 운용목적

○ 전국의 축산관련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하여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양축농가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공급

○ 축산컨설팅사업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 축산전문가 인력풀 운용 : ('04) 1,520명, 214백만원

○ 중앙회 · 조합(857명), 정부기관 · 연구소 · 대학 · 관련단체(663명)

○ 축종별 : 한우 835, 젖소 288, 양돈 232, 양계 116 기타 49
- 집합 컨설팅 : 312회(16,964명)
- 개별농가 컨설팅 : 2,570호

축산연구소 신설 및 연구기능 강화

○ '00년 사료분사 축산연구소 ⇒ '02.9 사료기능 농협사료 이관
⇒ '03 축산연구소 출범

○ 분산된 연구소를 통합운영 및 신축으로 연구기능 강화
- 축산연구부, 안성목장, 중앙분석센터를 통합 운영
- 신축규모 : 토지 3,000평, 건물 550평, 소요예산 2,956백만원

○ 양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증연구 추진
- 생체 단층촬영, 고급육 생산기술 연구, 유기축산 등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연구
- 수정란 이식센타, 초음파육질진단센타설치 운영

유전자(DNA) 분석실 운용

○ 유전자 분석실 활용분야
- 한우고기 판별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 광우병 관련 사료내 육골분 검사

○ 추진실적
- '03. 3.25 ~ 3.27 : 사료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교육 (수의과학검역관 주관)
- '03. 4. 7 ~ 4.15 : PCR이론 및 운용방법 교육, 기기실습 (제일바이오 주관)
- '03.10.14 ~ 10.18 : 반추사료 동물성 단백질혼입여부 검사 교육 (농업진흥청 주관)
- '04. 3.18 ~ 3.19 : PCR이론 및 운용방법 교육, 기기실습 (한양대학교 주관)

○ 시설투자 현황 (축산발전기금)
- PCR판독기 · ELISA리더기 및 전자현미경 : 260백만원

※ 종합효소 연쇄반응기 : PCR (Polymer chain reaction)
- DNA의 원하는 부분을 증폭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변성(denaturation) → 결합(annealing) → 증폭(extension) 세 단계로 구성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DNA가 증폭 됨

※ 효소면역측정기 :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항원 · 항체반응을 이용하여 목적성분을 찾아내는 분석법
-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 판별, 병(주로 aids 판별) 바이러스성질병 판독, 병원성 미생물 판별

6. 사료사업부문

배합사료 가격인하 선도 및 적기공급

□ 배합사료 가격을 '04. 11월 이후 총 3차례에 거쳐 14.0% 인하로 농가비용 절감

○ 직접효과 1,700억원, 유도효과 6,000억원

○ 가격인하 내용 (14%)
- 1차 인하 '04.11.8(4%↓), 2차 인하 '04.12.17(6%↓),
- 3차 인하 '05.1.27(4%↓)

□ 배합사료 가격연동제 시행

○ 환율과 국제 곡물가격변동에 따라 사료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실시로 농가 실질적 이익 환원

【 축종별 생산현황 】

(단위 : 천톤, %)

축종별	국내전체				계통사료				B/A (%)
	'03	구성비	04(A)	구성비	'03	구성비	'04(B)	구성비	
비육우	2,926	19.2	3,045	20.6	1,714	40.1	1,891	43.9	62.1
낙 농	1,744	11.4	1,632	11.1	628	14.7	624	14.5	38.3
양 돈	5,663	37.1	5,419	36.7	1,136	26.6	1,043	24.2	19.2
양 계	3,907	25.6	3,836	26	534	12.5	513	11.8	13.4
기 타	1,019	6.7	819	5.6	260	6.1	241	5.6	29.5
합 계	15,257	100	14,751	100	4,273	100	4,312	100	29.2

사료사업 손익 확대

○ 수입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으나 환율에 따른 수익발생으로 순이익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 연도별 경영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사업외손익)		순이익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01	5,183	100	619	11.9	176	3.4	△74	△1.4	72	1.4
'02	4,846	100	584	12.1	165	3.4	64	1.3	160	3.3
'03	5,119	100	598	11.7	121	2.4	△4	△0.1	85	1.7
'04	6,337	100	614	9.7	67	1.1	109	2.8	121	1.9

○ 수입곡물가격 및 국제선임료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 비상경영 추진
- 추진기간 → '04.5.12 ~ 9.30일, 원가절감 효과 → 43억원

○ '04년 11월이후 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관련 사업외수익 발생 : 132억원
※ 환율변동 추이('04년 평균)
(1월) 1,184원/$ → (6월) 1,158 → (9월) 1,148 → (11월) 1,092 → (12월) 1,050

【 사료원료 수입현황 】

(단위 : 천M/T, 백만U$)

구 분	'01		'02		'03		'04	
	전 국	농 협	전 국	농 협	전 국	농 협	전 국	농 협
수 량	11,617	2,754	12,489	3,280	11,808	3,216	11,459	3,193
금 액	1,344	301	1,401	356	1,449	380	1,959	522

배합사료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

□ 배합사료 생산량 향상(324천톤, 8.1% 증가)
○ ('00년) 3,988천톤 ⇒ ('04년) 4,312천톤

【 배합사료 생산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00	'01	'02	'03	'04
전 국		14,932	14,773	15,597	15,257	14,751
계통사료	농협사료	2,279	2,200	2,044	2,122	2,225
	회원조합	1,709	1,770	2,225	2,151	2,087
	소 계	3,988	3,970	4,269	4,273	4,312
일 반 사 료		10,944	10,803	11,328	10,984	10,439

□ 배합사료 시장점유율 향상(2.4% 증가)

○ ('00년) 26.8% ⇒ ('04년) 29.2%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계통사료 (21개공장)	농협사료	15.3	14.9	13.1	13.9	15.1
	회원조합	11.5	12.0	14.3	14.1	14.1
	소 계	26.8	26.9	27.4	28.0	29.2
일반사료(74개공장)		73.2	73.1	72.6	72.0	70.8

배합사료수익 농가 환원

□ 자체환원사업

○ 판매장려금 등 조합 환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 : 392억원
- 판매장려금 197억원, 특별장려금 12, 조합수송비 지원 183

○ 축산농가 벌크사료 수송비 지원 : 84억원

□ 중앙회를 통한 간접환원사업

○ 당기순이익은 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로 반영되어 축산농가에 환원
- 축산경제 지도사업비 : ('04년) 157억원 → ('05계획) 230

조합 사료가공사업 지원 강화

○ 계통사료 전이용조합 무이자 자금 지원
- 70조합, 491억원

○ 배합사료 공동구매 공급물량 확대(892억원)

○ 계통사료 전이용조합 지도 · 지원 강화
- 회원조합 TMR 사료공장 생산설비 지원
- 조합 배합사료공장 HACCP인증 교육비 등 지원
- 농협 계통사료의 우수성 홍보 등 공동마케팅 추진

※ 배합사료 공장 운영현황(21공장, 생산능력 2,127천톤/년)
○ 농협사료(8개공장)
- 생산능력 : 3,540톤/일, 1,062천톤/년

○ 조합사료공장(13개공장)
- 생산능력 : 3,550톤/일, 1,065천톤/년

국내부존자원 활용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조사료 생산 시범농장 육성 및 볏짚곤포사일리지 활성화
-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 : 26천롤, 볏짚처리량 223천톤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총체보리) 생산사업활성화
- 재배면적 : 2,681ha(생산량 37천톤)

○ 사육농가에 목초 및 사료작물 등 우량 종자공급으로 자급조사료 증산(2,457톤)

○ 조사료 생산 · 이용 확대 대책 및 논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우수사례 등 교육 확대 (8개도 순회 교육)

7. 조합 경영지원부문

조합특화사업 육성

□ 조합별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특화사업 선정

○ 조합입지와 축산여건을 감안하여 선정 : '04. 9월 완료
- 특화유형 : 생축사업, 브랜드사업, 가공사업, 판매사업 등

○ 축종별 · 사업별협의회와 연계하여 특화사업 육성 추진

□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그룹별 분류 및 차별 지원

○ 매출액과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A, B, C그룹으로 분류
- 지역본부별 1~3개 조합을 시범조합으로 선정 집중 육성

○ 매분기 추진실적 평가후 결과에 따라 인세티브 부여

○ 매년 사업활성화 전진(평가)대회 개최

□ 조합과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발굴 지원

○ 조합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지원
- 지자체 협력사업 현황('04) : 53개조합 219사업, 134억원

○ 산 · 학 · 관 · 연의 「지역클러스터」 구성 · 운영 지원

조합 경제사업 종합정보화 지원

□ 조합 경제사업 종합정보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구매 · 판매부문 사업장('02) : 19억원 투자
- 사료, 동물약품, 계통출하, 군납, 생축장, 집하장 등

○ 회원축협 배합사료가공조합 공동 전산개발

조합 경제사업활성화자금 확대지원

☞ 5,722억원(축발기금 2.723억원, 자체자금 2,999억원)

○ 축산물 유통활성화
- 조합 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 산지조합과 대형유통업체 계약(한우170톤, 26억원)
- 경제사업장에 대한 육성 · 지원 강화 (475백만원)
  * 부분육 유통활성화(20조합, 180백만원)
  * 축산물판매장 위생시설지원(69조합, 157백만원)

- 파워브랜드 육성지원(15조합)
  * ('02) 741억원 ⇒ ('03)755 ⇒ ('04)1,405
- 안전 축산물 군납체계 구축 지원강화(43조합, 258백만원)

○ 축산물 생산지원
-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 · 지원(97백만원)
- 양계산물 생산 · 유통지원(8개조합, 26백만원)
- 양봉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11조합, 41억원)
-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수행조합 경영지원(25조합, 246억원)
  * 축산운전자금(90억원), 조합상호지원자금(156억원)

□ 무이자자금 지원

- 계통사료 100% 전이용조합(70조합, 491억원)

□ 교육지원사업비 확대 (151억 증가)

('00) 7억원 ⇒ ('01) 43억원 ⇒ ('03) 152억원 ⇒ ('04) 158억원
- 영농지도비, 조합육성비지원 등 확대

【 년도별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계획
영농지도비	601	2,199	5,824	9,919	4,940	5,410
조합육성비	22	2,064	4,376	5,030	10,544	6,870
선전보급비	1	46	58	72	92	119
조사연구비	26	15	88	172	171	391
이차보전	-	-	-	-	-	10,200
계	650	4,324	10,346	15,193	15,747	22,990

주) '05년 이차보전예산은 농업경제 예산에 통합 반영

【 조합(조합원)자금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계획
자체자금	축산운전자금		500	650	800	658	1,100
	낙농경영안정자금				1,300	1,300	–
	축산물유통활성화자금				1,000	1,000	1,000
	한우번식우자금			150	300	450	450
	젖소산유능력검정자금			56	72	156	156
	계통사료전이용자금					491	
	양봉안정자금					41	–
	소 계		500	856	3,472	4,096	2,706
축발기금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697	1,797	2,538	2,587	2,723	3,564
합 계		697	2,297	3,394	6,059	6,819	6,270

주) 자체자금은 조합상호지원자금 포함

8. 농정활동부문

축산발전기금 존치활동 전개

□ 기금정비의 일환으로 당초 축발기금을 포함한 57개 기금에서 48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금존치를 위한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농정활동 전개

□ 주요 추진 사항

○ 각종 성명서 발표 (8회) 및 기자회견 실시(7회)
○ 정당관계자 면담(6회) 및 대정부 건의안 전달(3회)
○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3회)
○ 국회의원 123명 서명추진 및 서명서 전달
– 정부 혁신지방분권위 및 기획예산처

○ 국정감사시 기금 존치 건의
  - 농해위 국회의원 전원 설득 및 질의요청

□ 국회의원, 정당, 정부행정부서, 기자회견, 언론홍보 등 다각적인 기금 존치활동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초래함

축산물 안전관리기능 조정에 대한 농정활동 강화

□ 축산물 안전관리기능(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을 식약청으로 이관에 대한 저지 대책 추진

○ 조정저지 진정서 제출 : 국회의원, 국무총리
○ 국회의원 서명(41명) 및 축협조합장 서명운동
○ 관련인사에 대한 농정활동 및 건의문 전달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구성 및 자금조성

〈한우자조금〉

□ 추진경과

○ 대의원 선거('04.8.25~11.10, 6회실시, 대의원 240명선출)
  - 투표율 : 35.6%(171천농가/61천농가 투표)
  - 선거비용 : 154백만원(농협중앙회 84, 한우협회23, 지역축협47)

○ '05.2.16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회의
  - 의장선출 및 관리위원(18명), 감사(2명)위촉
  - 자조금 거출규모 확정 : 두당 2만원

○ '05. 4월부터 자금조성 예정

〈양돈자조금〉

□ 우리회 주관으로 공동운영절차 기본협약 마련

□ 추진경과

○ 출범 : '04.3.4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원 : 생산자대표14, 농림부,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등

○ 자조금 조성계획('04.12.1~'05.11.30) : 111억
- 농가거출금(60억), 정부지원금(45억), 이익잉여금(6억)

○ '04조성실적 : 60억(농가거출 32억, 정부지원 28억)
- 농가 납부율 : 89%(농협 도축장 100%)

축산발전협의회 구성

○ 주요기능 : 축산발전방안 모색 및 상호 정보교류,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구성인원(19명) : 시도축협운영협의회장(10), 이사조합장(6), 품목협의회장(3)

○ 회의개최주기 : 분기1회

○ 주요성과 : 축산현안에 대한 농정활동 추진
- 축발기금 폐지 반대서명 대정부 전달, 식약청 이관 반대
-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농정활동
- 대외 홍보활동의 다각적 전개
※「전국 축협조합회의」 개최 : 축협현안사항 해결 및 농정건의

「농업 · 농촌종합대책」 축협 검토의견 및 건의

□ 추진경과

○ 농림부「농업 · 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05. 2.23
○ 축산경제사업분야 세부추진계획(안) 발표 : '05. 7.7
- 농협 축산경제자문위원회 1차의견 수렴 : 3.19
- 농협「농업 · 농촌종합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 3.23
- 축산부문 세부추진계획(안) 부서별1-2차 의견수렴 : 4월,7월
- 축산발전협의회 및 조합장협의회 의견수렴 : 7.16~30

- 축협조합 의견수렴 : 7.30
- 축산부문 「농업 · 농촌종합대책」 대정부 건의 : 8월

축종별 협의회 활성화

□ 축종별협의회를 구심체로 사업연합 활성화

○ 주요기능 : 축종별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활성화 하여 농정협력, 수급조절 및 공동 협력사업 적극 수행

○ 구성 : 현행 품목조합 중심 구성에서 지역축협까지 확대
- 운영현황 : 조합장협의회 5개(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 주요성과 : 대외 홍보활동의 다각적 전개
- 축산경제 자체 개혁과제 등 축산농가 실익증진 사업과 추진성과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
- 전문가 기고 등 언론매체에 홍보소재 적극 발굴 제공

축종별협의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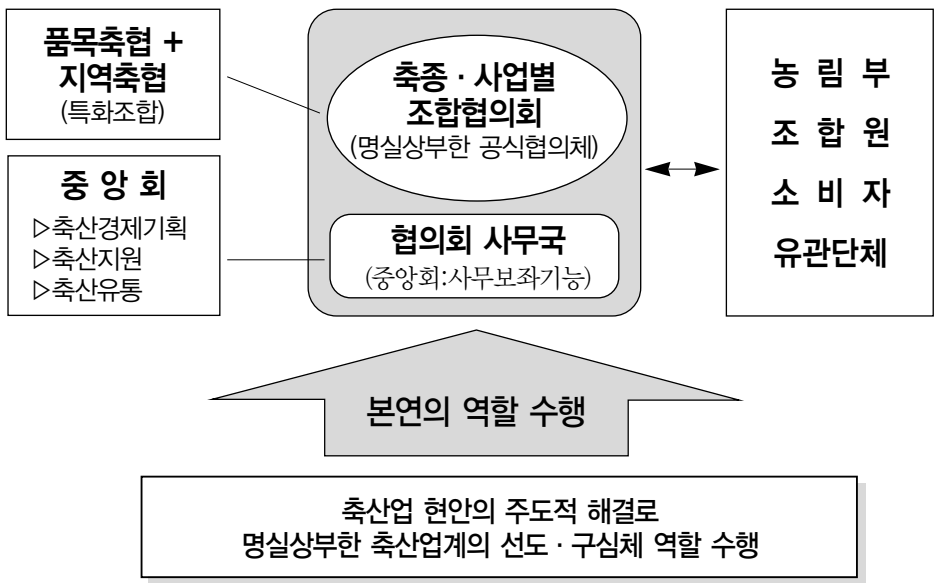

농업 · 농촌관련 축산부문 숙원사항 발굴관리

○ 축산업 경쟁력제고와 실익증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 국회 · 농정유력인사 등에게 전달 정책반영 추진
– '05년도 축산부문 농업 · 농촌관련 숙원사항 수집 및 발굴관리(15건)

【'05년 농업 · 농촌관련 축산부문 숙원사항 】

구분	제 목	검토부서
1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축산유통부
2	국내산 축산물 소비 마케팅 자금 지원	축산유통부
3	식육 특장차량 사용 승인 방법 개선	축산유통부
4	전국 한우 경진대회 재개	축산지원부
5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기준가격 상향 조정	축산지원부
6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확대 지원	축산지원부
7	수입사료 원료 의제매입세 공제율 상향및 무관세 적용	축산지원부
8	액비살포 고시 폐지 및 살포제도 개선	축산컨설팅부
9	양돈분뇨의 단계적 해양 처리방안 마련	축산컨설팅부
10	농업경영컨설팅 축종 확대	축산컨설팅부
11	면세유 공급대상 축산기자재 기종 확대	축산컨설팅부
12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사업 대상 축종 확대	축산컨설팅부
13	농지법의 '농업시설'에 축사시설 포함	축산컨설팅부
14	유기축산 조성 단지 육성	축산컨설팅부
15	축산업에 활용하는 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축산컨설팅부

제 6 장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

Ⅰ.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개요

1. 존치평가 배경 및 경과

□ 평가 배경

○ 2003년 6월 감사원의 기금감사시 38개 사업성기금 중 21개 기금에 대해 정비 필요성 제기
○ 2003년 12월 매 3년 마다 모든 기금의 존치평가 정례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평가 경과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04.3) 및 존치평가실시('04.3~7)
※ 실사위원 : 조성일교수(중앙대), 김종일교수(동국대), 이상학교수(국민대), 이원희교수(한경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비안 마련 및 평가결과 설명('04.8)
○ 국무회의 보고('04.8.31) 및 국회제출('04.9.2)
○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 공청회개최('04.9.13)

기금존치평가개요

□ 평가대상 :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총 57개 기금

□ 평가결과 : 현행 57개에서 39개로 정비
○ 축산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은 폐지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36개 기금은 존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기금은 3개로 통합
○ 문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민간자금화

2. 축발기금 평가내용 및 추진일정

□ 평가 내용 : 축산발전기금 폐지

※ 예산성사업은 일반회계로,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은 농안기금으로 이관
– 마사회납입금은 조세로 전환하여 농특회계로 납입

□ 평가 요지

○ 축산사업의 상당 부분을 기금이 담당하여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
– 기금재원증가에 따라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수행

○ 자체재원은 있으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
– 마사회납입금은 사행산업의 이익금이므로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간 연계성이 미흡

○ 축산물수급조절사업 등 일부사업 외에는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많음

○ 기금이 적정 운용규모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안기금으로 통합

□ 추진 일정

○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 : 2004. 9~10월
○ 기금정비방안 확정 : 2005년 상반기
○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 2005년 상반기
○ 일괄정비법을 마련 국회통과 추진 : 2005년 상반기
○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부터 반영

□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 예산성 사업 ⇒ 일반회계로 추진시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축소로 이어져 결국 사업이 폐지될 것이며

○ 축산물수급조절사업 ⇒ 농안기금으로 통합시
– 통합의 실익이 전혀 없으며,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의 이원적체제로 업무추진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 마사회납입금 ⇒ 농특회계로 전입시
–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조달 차단으로 기금은 고갈되고, 결국 축산부문에 대한 사업 지원은 중단될 것이며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02년 기준 농림업 총 생산액 33조 4천억원 중 약 30%인 9조원에 이르는 축산업은 퇴보되고 말 것임

☞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 품목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우유** ⑤ 건고추 ⑥ **계란** ⑦ **닭** ⑧ 사과 ⑨ 수박 ⑩ 딸기

Ⅱ. 기금정비 추진요체

○ 축발기금 존치평가 관련 사항은 정부혁신위 소속"재정세제전문위원회"소관사항으로 그 실무적 보조는 재정. 세제팀에서 수행하나, 단순 사무보조기구가 아닌 실질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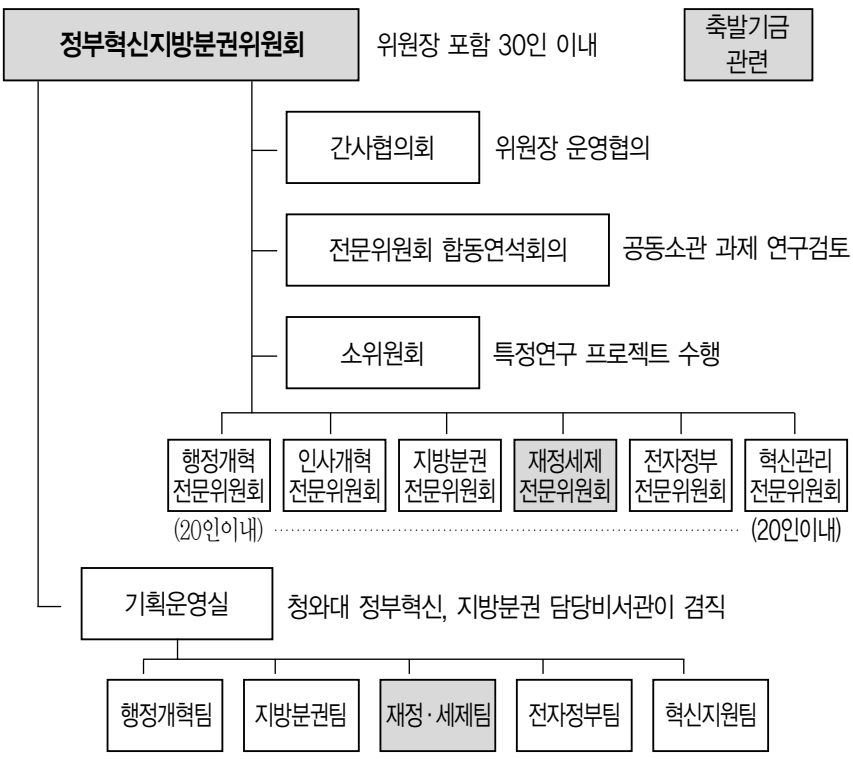

○ 재정 · 세제전문위원회(14명)

- 유일호 위원장 외 13명으로 구성(공무원 3, 학계 등 11)
- 축산발전기금 담당위원 : 최숙희 위원

○ 재정 · 세제팀(7명)

- 팀 장 : 구본진 국장(기획예산처 파견)
- 실무자 : 우병렬 과장(기획예산처 파견)

Ⅲ. 축산발전기금 평가상 문제점 및 의견

1. 축산발전기금 평가상의 문제점

□ 기금정비 필요성이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

○ 기금수가 많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듬

☞ 단순 수적 감축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금존치여부는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투명성은 현행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서도 충분
※ 미국의 경우 기금 수 200여개 정도

□ 기금평가절차가 일방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침

○ 기금존치평가가 단순서류 심사와 1시간여 토론에 그침

☞ 축산업 전문가, 일선축산농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몇몇 경제학자 중심으로 평가실시

□ 기금평가기준이 일관성 없고 형평성이 결여

○ '03~'04년 축발기금의 기금운용평가단(동일한 구성원, 여건 동일)의 평가내용이 다르고, '03년 감사원 감사시에도 비교적 우위평가를 받은 축발기금은 폐지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금 등을 존치시키는 등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이 결여됨

※ '03년도 기금평가단 평가 및 감사원 감사자료 참조

○ 수산부문 수급조절사업은 기능의 차이로 인해 농안기금에서 분리를 전제로 존치결정하면서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은 농안기금에 통합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음

□ 농촌 현실과 축산인들의 정서를 외면

○ 축산업과 축발기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평가를 실시

☞ 축발기금은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조성되어 30여년 가까이 민간기금으로 운영되어온 기금으로서, 축산업이 우리 농촌의 유일한 대안 사업이며,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없는 기금도 새롭게 설치해야 할 판국인데, 있는 기금마저 폐지. 통합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축산업의 특수성, 특히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신축적, 탄력적 대응 필요성을 간과

○ 2000년 이후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이 불시에 발생하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아 신축적,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집행할 경우 신속한 방역이 불가능함을 간과

【 '03~'04 기금 평가결과 비교】

○ 사학진흥기금의 경우 2003년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의 "낮음"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음에도 2004년 존치평가시 존치로 결정되었다

○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003년 감사원 및 기금운용평가단의 "보통"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4년 존치평가시 "폐지"로 결정되어 다분히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 되었고, 나머지 기금도 2003년 평가결과가 "낮음"으로 2004년 존치평가가 "존치"로 결정되었음

기 금 명	2003년 평가결과			2004년 존치결과		
	평가단	조성재원과 사업간 연계성	사업의 신축성	조성재원과 사업간 연계성	사업의 신축성	존치여부
축산발전기금	감사원	보 통	보 통	-	-	폐 지
	기금운용 평가단	보 통	보 통	낮 음	일부사업만 신축성 있음	
사학진흥기금	감사원	낮 음	낮 음	-	-	존 치
	기금운용 평가단	낮 음	낮 음	-	-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감사원	낮 음	보 통	-	-	존 치
	기금운용 평가단	낮 음	낮 음	-	-	
수산발전기금	감사원	낮 음	보 통	-	-	존 치
	기금운용 평가단	보 통	낮 음	-	-	
농지관리기금	감사원	보 통	낮 음	-	-	존 치
	기금운용 평가단	보 통	낮 음	-	-	

【 사업성 기금의 재원별. 성질별 분포 】

(2003. 6월 감사원 감사자료)

○ 2개 평가항목(연계성 및 신축성)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축산발전기금에 대하여 금번 존치평가시 폐지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기금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				
	높음	군인복지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사업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통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보통	국제교류기금(존치) 정보화촉진기금(존치) 관광진흥개발기금(존치) 방송발전기금(존치)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 국민체육진흥기금(통합) 농지관리기금(존치) 전력산업기반기금(존치)	과학기술진흥기금(폐지) **축산발전기금(폐지)** 국민건강증진기금 (타기금 전환)	남북협력기금
	낮음	여성발전기금(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민간자금화) 보훈기금(존치) 사학진흥기금(존치) 청소년육성기금(통합) 문화산업진흥기금(폐지) 응급의료기금(폐지)	수산발전기금(존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존치) 근로복지진흥기금 (폐지)	
		낮 음	보 통	높 음
		신축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축산발전기금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

1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예산성 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다는 평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

○ 기금존치평가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우유급식사업등 일부 사업은 예산성 사업으로 예산 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예산성 사업을 기금으로 장기간 수행한 결과로 오늘날 기금폐지의 빌미가 되었지만, 매년 일반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왔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빚어진 결과로 금액기준으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가 예산과 동일하게 변경된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평가제" 도입 이후 많은 제도개선이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성 사업은 점차 줄여 기금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임

* 제도개선 사항
- 축산발전기금 사업 수 : ('03년)39개 ⇒ ('04년)24개
- Top-Down제 도입
- 여유자금의 통합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안)
-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등

○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화촉진기금(36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31개), 국민주택기금(25개) 등은 계속 존치

2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마사회납입금은 사행산업의 이익금이므로 재원부담자와 수혜자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

○ 마사회가 축발기금에 납입하는 경마이익금은 마사회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자료에서도 '마사회납입금' 은 '축발기금사업의 연계성' 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말(馬)도 축산법에 의한 가축이며,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마사업육성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 · 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륜과 경정, 로또 등 타사행산업의 이익금도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등 여러 기금에 납입되고 있음에도 계속 존치

- 경륜 · 경정 :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재정지원 등에 납입 · 사용
- 로또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에 납입
  - 임대주택건설,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복지, 문화유산보전사업 등에 사용

3 "축산물수급조절사업 등 일부 사업 외에는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

○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구제역 · 광우병 등 국가경제 전반과 소비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성가축질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천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에 있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신축성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구제역 발생시 초동방역실패로 끼친 경제손실 비교 】

신축성 있는 대응체계로 수행한 경우	신축성 없는 대응체계로 수행한 경우
○ 한국('00~'02) 구제역 발생시 : 4,400억원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 1,500억원	○ 대만('97~'01) : 41조원 ○ 영국('01) : 14조원

○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빈발로 사업의 신축적 운용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축발기금은 폐지하면서 탄력성이 낮은 기금존치
-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4 축산발전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의 통합평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

○ 농안기금의 가격안정사업은 농산물수급의 특성상 가격변동이 심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변동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종 농산물의 단순수매와 비축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축발기금의 수급조절사업은 예측하지 아니한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가축사육조절, 가축이동제한 조치, 살처분, 도축,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물론, 생산 및 유통절차 전반에 걸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분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없음

○ 현재 농안기금은 연간 운용수익금이 대략 2,000억원 정도인데 연간 8,000억에서 1조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농안기금에 통합할 경우 축발기금과 농안기금의 동반 부실이 예견되며, 두 기금 본래의 목적 사업도 결국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임

3. 축발기금(수급조절사업)과 농안기금의 통합시 문제점

농산물가격안정사업과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은 사업내용 전반에 걸쳐 유사성이 없는 이질적 분야로 두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은 기금정비 본연의 목적인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 농산물가격안정사업은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에 의한 풍흉의 발생, 전년시장가격에 따른 경작면적 변화 등 공급 과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공급과잉시 농산물을 수매 · 비축하여 공급부족 등 필요시에 방출하는 단순 절차에 의한 가격안정 중심으로 수행되나,

○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은 계절요인, 재해 등에 의한 공급과 부족 문제해소 보다는 불측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이동제한조치, 살처분, 매몰 등 일련의 대응과정상 유통 가능한 가축을 생축상태에서 수매하여 이를 도축 · 가공 · 보관 · 유통시키는 등 복잡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축산업은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별 연계성이 특히 강조되고,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나 사업의 이질성과 축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 부문간 조정절차의 추가 등 불필요한 업무로 통합의 실익은 없으며 업무의 비효율성만 야기

【 농산물가격안정사업과 축산물수급조절사업 】

구 분	농산물가격안정사업	축산물수급조절사업	비 고
●사업의 개념	● 농산물(고추, 마늘, 깨 등)의 단순한 가격안정	● 축산물의 가격안정도 있으나, 주로 예측불허의 악성가축질병발생시 질병근절을 위한 대책수단으로 추진	
●추진 절차	○ 수매 → 비축 → 판매	○ 가축이동제한 → 방역살처분. 매몰 → 도축→ 가공 →수매 → 비축 → 판매	각 단계마다 전문성 요구
●업무성격	○ 시간적 · 공간적인 제약이 없음	○ 시간적 · 공간적인 제약이 많음	분산된 지역별로 신속한 질병차단과 방역을 위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 소요
●추진 주체	○ 농림부 유통국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156개 시군지부 및 153개 축협조합	전 조직 동원 –전국적 조직망 필요
●축발·농안기금 통합시 축산부문 운영체계		○ 재원조달 : 유통국 ○ 사업추진 : 축산국	사업추진의 이원화 체계로 절차의 번잡성 및 시간지연으로 업무효율성 저해

○ 축발기금과 농안기금의 통합 운용시 예고 없는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은
– 정책결정, 활동주체, 재원조달의 이원화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고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유통공사 조직체계로는 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이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는 기금통합은 오히려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므로 축산발전기금은 현행대로 존치 · 운용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당함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의 통합운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만성적 적자로 결국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의 동반부실로 이어집니다

○ 연간 8천억에서 1조원 규모에 이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보전을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축발기금 및 농안기금을 통합할 경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시적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안기금과 축발기금마저 동반 부실로 이어져 결국 두 기금사업은 더 크나 큰 재정적 부담만 남게 될 것임.

Ⅳ. 축산발전기금 존치 주요 추진사항

1. 축발기금존치 비상대책기구 구성

▶ 축산발전기금존치비상대책위원회(2004. 8. 27)
- 농협중앙회 및 축협조합장 등 농협자체 추진

▶ 축산발전기금존치대책위원회(2004. 9. 10)
- 축산관련 단체 · 협회 · 학계 등 범축산연대 추진

2. 각종 성명서 발표(8회)

▶ 전국축협조합장일동(9/6), 축산관련단체협의회(9/7),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9/7), 전국농협조합장일동(10/7), 전국축협조합장일동(10/1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10/18),전국농업경영인출신축협조합장협의회(11/1), 축협중앙회노동조합 · 전국축협노동조합(11/1), 전국축협경영자협의회(11/12)

3. 기자회견 실시(7회)

▶ 주관 : 각 지역 축협조합장협의회
▶ 시기 : 2004년 10월 하순 ~ 11월 초순
▶ 지역 : 7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기타 : 축발기금 폐지반대 관련 각 지역 언론 보도

4. 대정부 건의문 전달(3회)

▶ 1차 : 전국농협조합장(대의원) – 2004. 10 . 7
– 기획예산처, 농림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차 : 전국축협조합장 – 2004. 10. 15
– 청와대 외 9곳

▶ 3차 : 축산관련단체장 – 2004. 10. 29 ~ 11. 8
– 청와대 외 10곳

5. 정당관계자 면담(6회)

▶ 1차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정치국민회의
– 2004. 10. 15
– 전국 축협조합장

▶ 2차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 2004. 10. 29 ~ 11. 8
– 축산관련 단체장

▶ 3차 : 국회예결위원장(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
– 2004.11.3
– 진안무주축협 배진수 조합장 외 3명

▶ 4차 :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안병엽의원) – 2004. 11. 5
– 수원축협 우용식 조합장 외 2명

▶ 5차 : 한나라당 정책위장 및 제4정조위원장
– 2004. 11.10
– 경북 상주축협 이정백 조합장 외 8명
☞ 축발기금 존치 적극협조 약속

▶ 6차 : 한나라당 정책위장 및 제4정조위원장
– 2004. 11. 16
– 축산관련단체(농협중앙회 김병육 상무 외 6명)
☞ 축발기금 존치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임

6.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3회)

▶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 – 2004. 9. 13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기획예산처 주관
- 축발기금 폐지반대 의견개진 및 폐지의 부당성 주장

▶ 축발기금 설명회
- 2004. 10. 1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재정세제전문위원 최숙희 외 2명
- 축발기금 존치평가결과 문제점 및 존치당위성 설명

▶ 기금정비토론회
- 2004. 11. 16
- 기획예산처 주관(혁신위 전문위원, 평가단장, 팀장 참석)
- 축산관련단체 및 농림부 관계자 등 토론
- 축발기금 존치평가 결과에 대한 반대논리 주장 및 질의

7. 국회의원 서명추진 및 서명서 전달

▶ 서명요지 : 축산발전기금 폐지반대 및 존치 필요성
▶ 서명대상 : 국회의원 전원 299명
▶ 서명의원 : 123명
▶ 서명서 전달
- 1단계 : 정부안 확정이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기획예산처에 전달함 (2004. 12. 14)
- 2단계 :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관련 법률안 송부시 국회의장에게 전달

8. 기타 추진사항

▶ 수시 축발기금 존치대책위원회를 개최 주요추진사항 협의
▶ 국정감사시 축발기금 존치평가 및 폐지반대 관련 질의
▶ 농협 국정감사시 축발기금 존치건의
▶ 축발기금 존치평가상 문제점 및 존치필요성 설명
- 기획예산처 및 정부혁신위, 국회 등 주요인사 대상

▶ 축산관련단체 및 축협조합 축발기금 폐지반대 현수막 게시

(붙임)

일정별 추진 사항 및 국회서명추진현황

□ '04. 9. 7

○ 축발기금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한국 축산분야학회협의회

※ 보낸 곳 : 청와대, 국회, 기획예산처, KDI, 정부혁신위, 농림부, 농민신문, 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04. 9. 10

○ 축발기금 존치대책위원회 발족
- 공동추진위원장 선출
- 대책위 소위원회 구성

□ '04. 9. 13

○ 「기금정비방안 공청회」관련업무협의 및 공청회 참석
- 공청회 질의요지 설명
- 함평축협 안병호 조합장,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 축산발전기금폐지 강력반대, 축산현실을 파악을 위한 공청회재개 요청

□ '04. 9. 15

○ 농협 국정감사업무보고시 「건의사항」 자료제출
- 축산발전기금 존치건의

○ 국회의원(농해위, 운영위) 인터뷰 요청
- 축산신문 : 이철우의원(열린우리당, 경기포천 · 연천)

□ '04. 9. 16

○ 「축발기금 존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홍보
- 축산관련단체, 농민단체, 혁신위, 농협 임직원 및 축산발전 심의위원 등 총 121 명

○ 국회의원「축발기금 폐지 반대」질의 요청
-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 예산)
- 신중식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 보성)

□ '04. 9. 17

○ 정부혁신위 전문위원에 대한 존치평가 문제점 설명
- 재정세제 전문위원(5명)
- 농림부 안호근과장외 1명, 농협 이기수사무국장 방문

□ '04. 9. 20

○ 한농연(서정의 회장) 설명
- 축발기금 폐지 반대 동조 및 적극협조 약속

□ '04. 9. 22

○ 정부관계자 설명
○ 국회 농림해양위 수석전문위원 설명

□ '04. 10. 1

○ 축발기금 존치평가 및 폐지의 문제점 설명
- 정부혁신위 위촉위원(이행봉 경남대 교수)

□ '04. 10. 4

○ 축발기금존치를 위한 "전국비상대책회의 개최"
- 축발기금 존치를 위한 추진대책 협의
- 현수막 게시, 관계인사 설명 및 설득. 전국 축협조합장회의 개최 협의

○ 농림부 국정감사시 "축발기금평가" 관련 질의
- 국정감사시 축발기금 존치평가결과에 대한 질의
- 이철우의원, 신중식의원, 이시종의원, 김낙성의원, 김재원의원, 이상배의원 등 6명

□ '04. 10. 5

○ 축발기금존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공동 건의인에 대한 서명추진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남호경 회장), 농협중앙회 축산 대표이사(송석우), 축산발전

협의회(우용식 조합장), 축산분야학회협의회(김창근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최준구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서정의 회장), 전국농민연대(정재돈 상임대표)

□ '04. 10. 7

○ 전국농협조합장(대의원) 및 시군지부장 회의 "축발기금 폐지반대 "결의
- 축발기금 폐지반대 건의문 채택 및 전달(기획예산처, 농림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회〈농림해양위, 운영위, 예결위〉)

□ '04. 10. 13

○ 축발기금 존치 필요성 설명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 '04. 10. 15

○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 개최
- 대정부건의문 채택 및 결의대회
- 대정부 건의문 전달(청와대 외 9개 기관)
- 축발기금폐지 반대 결의대회

□ '04. 10. 18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시 기금존치평가관련 수감
- 축발기금존치관련 농협의 대책 및 축발기금 폐지시 문제점 질의(신중식 의원, 홍문표 의원)

□ '04. 10. 21

○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위원" 업무협의
○ 정부혁신위(재정세제팀) 방문

□ '04. 10. 22

○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 유도
- 축발기금 존치를 위한 대책 강구
(홍문표 의원, 신중식 의원, 안병엽 의원, 김낙성 의원)

□ '04. 10. 25

○ 광주 · 전남 축협조합장 "축발기금폐지반대" 기자회견 실시
- 신문 매체 : 광주일보 외 5개 신문사
- 방송 매체 : KBS, KBC, YTN 방송

□ '04. 10. 27

○ 축발기금 존치 대책위원회 개최
- 참석자 : 축산경제대표, 한우협회장외 24개 단체
- 내 용 : 대정부 건의문 전달(청와대외 10곳) 도시지역 및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서명 추진

□ '04. 10. 29

○ 축발기금 존치 추진전략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축산경제상무, 본부 부서장 등 10명
- 내 용 : 시 · 도별 기금폐지반대 기자회견 개최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축산발전기금 계속 존치 건의문 광고
- 명 의 : 전국농업경영인출신축협조합장협의회(31명)
- 전문지 : 축산신문

○ 기획예산처 방문(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 축발기금과 농안기금 통합시 문제점 설명
-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축발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자료 설명

□ '04. 11. 1

○축발기금존치를 위한 업무추진(재정세제 전문위원 방문)
- 방 문 처 : 삼성경제연구소(최숙희 위원)
- 방 문 자 : 이기수 국장, 황보승 차장
- 추진내용 : 축발기금과 농안기금 통합시 문제점 설명
  기타 축발기금존치 관련 자료 제시

□ '04. 11. 2

○ 전국 축협 조합장 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04. 11. 2(화) 13 : 30 -15 : 00
- 장 소 : 안성연수원
- 참석자 : 중앙회
- 축산경제상무 등 3명 회원축협
- 시 · 도 협의회장 10명
- 안건 : 각 지역별 축발기금 폐지반대 관련 기자회견 및 국회의원 서명 추진 촉구

○ 축산발전기금 폐지반대 성명서 발표(광고)
- 명 의 :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전문지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한국농정신문(4개 신문)

□ '04. 11. 3

○ 정세균 의원(국회예결위원장) 면담
- 일 시 : '04. 11. 3(수) 10 : 30 - 11 : 00
- 장 소 : 전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사무실
- 참석자 : 배진수조합장(진안무주축협) 외 3명
- 내 용 : 축발기금 존치 관련 협조 당부 및 서명 추진

□ '04. 11. 4 : 충남 · 충북 축협조합장 "축발기금폐지반대" 기자회견 실시

□ '04. 11. 5

○ 축발기금 존치관련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정세균 의원(우리당 -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 안병엽 의원(우리당 - 경기 화성)
-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 강원 원주)

□ '04. 11. 8

○ 경기 · 강원 축협조합장 "축발기금폐지반대" 기자회견 실시

□ '04. 11. 9

○ 축발기금 존치관련 정부혁신위 재정.세제팀 방문 설명
- 일 시 : '04. 11. 9 11 : 30 - 13 : 00
- 참석자 : 우병열 과장, 이기수 기금사무국장
- 내 용 : 농안기금과 통합시 문제점 등 설명

○ 축발기금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추진
- 우윤근 의원(우리당 - 전남 광양, 구례)
- 현애자 의원(민노당 비례)
- 강창일 의원(우리당 - 제주북제주군갑)
- 강길부 의원(우리당 - 울산 울주)
-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 울산 남구을)
- 조승수 의원(민노당 - 울산 북구)

□ '04. 11. 10

○ 대구 · 경북축협조합장 "축발기금폐지반대" 기자회견 실시

○ 축발기금 존치관련 국회 한나라당 방문
- 대　상 :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장) 외
- 방문자 : 경북 상주축협 이정백 조합장외 8명
- 내　용 : 축발기금 존치 평가에 관한 의견 설명 협조 당부

□ '04. 11. 11

○ 축발기금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추진
-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 충남 서산 · 태안)
-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 경남 양산)
- 허　천 의원(한나라당 - 강원 춘천)

□ '04. 11. 12

○ 축발기금존치 관련 한농연 방문
- '04. 11. 19 쌀 사수 농민궐기대회시 축발기금 폐지반대 결의 및 성명서 발표 약속

□ '04. 11. 15

○ 축발기금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추진
-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 - 전주완산갑)외 8명

□ '04. 11. 16

○ 기금정비 토론회 참석
- 일시 : '04. 11. 16(화) 14 : 00 - 16 : 00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617호
- 주요내용 : 기금존치평가결과에 대한 반대논리 설명
  축산관련단체 등 축발기금 이해당사자들과 혁신위관계자,
  기금운용평가단의 대응논리 설명 및 질의

○ 축산관련단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장 등 면담추진
- 일　시 : '04. 11. 16(화) 15 : 00 – 16 : 00
- 장　소 :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장실
- 참석자 : 한나라당 : 이한구 정책위장외 2명
  축산관련단체 : 남호경회장 외 5명
  농협 : 김병육 상무, 황보승 차장
- 면담 내용
  • 축산발전기금의 폐지. 통폐합 반대
  •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축산물 위생가공업무의 일원화

□ '04. 11. 17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최인기 의원(무소속 – 전남 나주 · 화순)
- 신중식 의원(열린우리당 – 전남 고흥 · 보성)
- 이상열 의원(민주당 – 전남 목포)
- 김홍일 의원(민주당 – 비례)
- 한화갑 의원(민주당 – 전남 무안 · 신안)
-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 – 전남 여수)
- 이정일 의원(민주당 – 전남 해남 · 진도)
-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 – 광주 서구갑)
-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 광주 광산구)
-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 – 전북 김제 · 완주)
-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 울산 중구)

□ '04. 11. 22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
-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을)
- 김성곤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여수)

□ '04. 11. 23

○ 축발기금 존치대책위 소위원회 개최
- 참석자 : 남호경 한우협회장외 17명
- 내 용 :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보고
  향후 추진할 전략
  - 축발기금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적극 추진
  - 축발기금존치의견 강력 표명요구를 위한 농림부 장관 면담 추진

□ '04. 11. 25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 경기 이천 · 여주)
- 우제창 의원(열린 우리당 - 경기 용인시 갑)

○ 축산단체장 의원 서명 추진 차 국회방문
- 방문자: 정일영(사료협회장), 유동준(단미사료협회장)

□ '04. 11. 29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 경기 수원 장안구) 외 5명

□ '04. 11. 30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비례) 외 9명

□ '04. 12. 1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 인천서구 · 강화을) 외 5명

□ '04. 12. 2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 경남 사천)
-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 - 경기 수원 권선구)

□ '04. 12. 6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우제항 의원(열린우리당 - 경기 평택시 갑)
-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 - 경기 평택시 을)

□ '04. 12. 7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박순자의원(한나라당 - 비례) 외 9명

□ '04. 12. 8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 - 전남 장흥 · 영암)
- 박혁규 의원(한나라당 - 경기 광주시)
-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 - 전남 순천)

□ '04. 12. 9

○ 축발기금 폐지반대 국회의원 서명 추진
-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 외 5명 추진

□ '04. 12. 10

○ 축발기금존치 대책위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04. 12 .10 07 : 30
- 장 소 : 팔레스호텔 다봉
- 참석대상 : 한우협회 남호경회장 등 12명
- 협의내용 : 축발기금존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서 전달건

□ '04. 12. 14

○ 축발기금존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서 전달
- 전달기관 :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 달 자 : 남호경 한우협회장외 3명

【 축산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추진 현황 】

('04. 12. 14 현재)

시·도	국 회 의 원 서 명 현 황			비고
	서명대상의원 수	서명 의원	미서명 의원	
경 기 (인천 포함)	61	20 (13)	41	
강 원	8	8 (1)	0	
충 북	8	6	2	
충 남 (대전 포함)	16	12 (3)	4	
전 북	11	9	2	
전 남 (광주 포함)	20	14	6	
경 북 (대구 포함)	27	12 (3)	15	
경 남 (부산, 울산포함)	41	18 (6)	23	
제 주	3	3 (1)	0	
서 울	48	3 (3)	45	
비례대표	56	18(12)	38	
계	299	123 (42)	176	

※ 괄호 내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추진 분임(중복추진은 10명)

Ⅴ. 축산발전기금 존치평가 결과

최종발표 결과 : 현행 57개에서 50개 기금으로 정비

○ 기금정비 기본방향
- 기금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
- 유사 · 중복되는 기금은 통합

○ 최종 발표내용
- **축산발전기금 : 종전과 같이 존치키로 확정**
- 폐지 또는 이관기금 : 7개
  -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이관)

○ 발표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발표일 : 2005. 5. 20(금)

○ 향후 추진계획
- '05년중 관련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추진
- '06년 편성 예산안부터 반영

(붙임)

【 57개 기금 중 폐지 또는 이관되는 기금 】

(단위 : 조원)

구 분		해 당 기 금	'05규모
사업성 (37개)	경제산업과학 (15)	대외경제협력, ① 방위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농수산물가격안정, 농지관리, 축산발전, 쌀소득보전, 전력산업기반,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정보화촉진, 국민주택, 수산발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FTA이행지원	37.2
	복지노동 (8)	군인복지, 국민건강증진, ② 응급의료, 근로자복지진흥,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보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4
	사회문화 (14)	사학진흥, 남북협력, 국제교류,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진흥, ④ 문화산업진흥, ⑤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한강수계관리, 금강수계관리, 낙동강수계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⑥ 여성발전, 방송발전	4.5
연 금 성 (6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4.2
계 정 성(5개)		공공자금관리, 외국환평형,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 복권	141.4
금 융 성 (9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부실채권정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수출보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38.2
계		57개	319.0

※ 폐지 또는 이관되는 기금 : 7개 (① ~ ⑦)

【 기금 정비방안 (57개 → 50개, △7) 】

ㅇ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4개)	→	폐지(△5개)
•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	–
ㅇ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1개)	→	(기존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기존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
ㅇ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금(2개)	→	이관(△2개)
• 문화예술진흥기금	→	ㅇ 문예진흥원 (→문예진흥위원회)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ㅇ 광복회(잠정)
ㅇ 사회보험성 기금,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재원·사업간 연계성이 높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50개)	→	현 행 유 지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	50개

부 록

목 차

❖ 축산발전기금관련 법령

Ⅰ. 기금운영관련 법령

1.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206

2. 축산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222

Ⅱ. 사업실시관련 규정

1. 농림사업실시규정 ····· 261

2.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 294

3.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311

4. 농림사업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331

5.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 335

Ⅰ. 기금운영관련 법령

1. 基金管理基本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85호]

第1條(目的) 이 法은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設置·관리 및 運用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基金運用의 公共性과 財政의 效率性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3.12.31, 1999.12.31〉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1.12.19, 2003.12.31〉

1. 삭제 〈2001.12.31〉
2.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3. "基金管理主體"라 함은 法律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는 者(基金의 관리 또는 運用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금융성기금"이라 함은 금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9.12.31〉]

第2條의2(基金設置의 제한) 政府의 出捐金 또는 法律에 의한 民間負擔金을 財源으로 하는 基金은 별표 2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設置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全文改正 1993.12.31]

[제2조에서 이동〈1999.12.31〉]

제2조의3 삭제〈2003.12.31〉

第3條(基金관리·運用의 원칙) ①基金管理主體는 당해 基金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맞도록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會計는 企業豫算會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7〉

[전문개정 1999.12.31]

제3조의2(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5.1.27〉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2003.12.31〉]

제3조의3(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4(기금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심사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2003.12.31〉]

제3조의6(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第4條(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改正 1993.12.31, 2001.12.31〉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 2003.12.31〉)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2001.12.31]

第6條(基金運用計劃案의 내용〈개정 2001. 12.31〉)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②運用總則에는 基金의 事業目標, 資金의 調達과 運用(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 포함한다) 및 資産取得에 관한 總括的 사항을 規定한다. 〈改正 1993.12.31, 1999.12.31〉
③資金運用計劃은 收入計劃과 支出計劃으로 구분하되, 收入計劃은 性質別로 구분하고 支出計劃은 性質別 또는 事業別로 主要項目,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 관 · 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 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12.31〉
④基金運用計劃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2001.12.31]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집행)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 범위안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본조신설 2003.12.31]

제7조의3(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8條(基金運用計劃의 變更〈개정 1999.12.31, 2001.12.31〉) ①基金管理主體는 支出計劃의 主要項目支出金額의 범위안에서 細部項目支出金額을 變更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12.31〉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基金管理主體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項目 또는 主要項目의 支出金額을 변경한 때에는 變更明細書를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제8조의2(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기금조성계획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3(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의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5(총사업비의 관리) ①기금관리주체는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중 그 사업

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9條(基金의 決算 등〈개정 1999.12.31, 2001.12.31〉) ①基金管理主體는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官署의 長이 아닌 基金管理主體는 所管中央官署의 長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5.24, 1999.12. 31, 2001.12.31, 2003.12.31〉

②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決算報告書에 의하여 基金決算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③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에 基金管理主體의 基金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다음 年度 6月 10日까지 監査院 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④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基金決算을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 年度 8月 2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⑤政府는 監査院의 檢査를 거친 基金決算을 會計年度마다 다음다음 會計年度 開始 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는 基金決算報告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基金決算報告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31, 2003. 12.31〉

1. 基金決算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그 밖의 基金決算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삭제 〈2001.12.31〉

⑧基金管理主體는 基金運用計劃의 執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第10條 削除 〈1993.12.31〉

第11條(基金運用審議會) ①基金管理主體는 基金의 관리 · 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基金別로 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

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審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金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1999.5.24, 1999.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3.12.31, 2005.1.27〉

1. 제5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案의 수립
1의2. 삭제 〈2003.12.31〉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主要項目支出金額의 變更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報告書의 作成
3의2.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4.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 基金管理主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③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委員會등은 第1項의 審議會로 보며, 委員會등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 사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事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第11條의2(基金政策審議會) ①基金관련 政策과 그 運用方向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 基金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②다음 各號의 사항은 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基金運用計劃案의 作成指針
2. 會計年度別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4.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基金評價結果 및 改善勸告事項
4의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4의3.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 委員長이 政策審議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③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者로 구성한다.

1. 企劃豫算處長官
2. 基金의 所管中央官署의 次官·次長 또는 1級公務員
3.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10人 이내의 民間委員

④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은 企劃豫算處長官이 된다.

⑤第3項第3號의 民間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⑥政策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의3(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 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기금관리주체의 장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 · 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기금관리주체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 · 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의4(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의5(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한다.

②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第12條(基金運用의 監督 · 評價) ①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豫算會計法 第117條를 準用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實態의 調査 및 評價를 하거나 基金制度에 관한 전문적·技術的인 硏究 또는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基金運用評價團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12.31]

제12조의2(기금의 통합·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본조신설 2001.12.31]

제12조의3(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4(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第13條(國政監査)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運用하는 基金管理主體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7條의 監査의 對象機關으로 한다.〈改正 1993.12.31, 2001.12.31〉

제1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등) ①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附 則

〈제4461호,1991.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運用關聯委員會 및 審議權限) ①이 法 施行當時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委員會는 第11條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運用審議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第1項의 委員會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 사항은 第11條第2項의 審議事項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 내지 第7項을 削除한다.
②調達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하고, 同條第3項중 "豫算會計法 第42條 및 第89條第7項"을 "基金管理基本法 第9條"로 한다.
③糧穀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한다.
④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한다.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5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한다.
⑥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중 "翌年度 會計年度 開始後 3月以內에"를 "다음年度 2月 末日까지"로 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25 대통령령 1875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 삭제 〈2005.3.25〉

제3조(중 · 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 · 장기 기금운용계획에는 해당 기금의 중 · 장기 기금수지 전망, 중 · 장기 기금운용의 목표 · 전략 및 중 · 장기 투자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 · 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4.4.6]

제3조의2(사업개요의 제출)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 신규사업 및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요를 제출하여야 할 주요 신규사업 및 대규모 계속 사업의 기준은 개별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3.9]

제3조의3 삭제 〈2004.4.6〉

제4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개정 2002.3.9〉)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1.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 · 항 ·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 · 관 · 항 · 세항 ·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고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대차대조표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삭제 〈2004.4.6〉

③삭제〈1999.12.31〉

제4조의2(기금의 단계적 투입) 기금관리주체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외에는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경비를 동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4.4.6〉

[본조신설 2002.3.9]

제4조의3(기금의 집행계획)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4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3.9]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 2002.3.9〉)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세항을 신설할 수 없다. 다만, 세항의 신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 12 · 23, 1998 · 2 · 28, 1999.5.24, 1999.12.31, 2002.3.9〉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3.9, 2004.4.6〉

③기금관리주체는 법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4.4.6〉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제5조의2(기금의 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이유

[본조신설 2004.4.6]

제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5백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국방관련 사업, 공공청사의 신 · 증축관련 사업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4.6]

제5조의4(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기금관리주체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명칭 · 필요성 · 사업개요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

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관련 중 · 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4.6]

제5조의5(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①법 제8조의5제1항에서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5백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총사업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변경사유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총사업비의 관리와 협의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4.6]

제5조의6(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당해 기금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말한다)의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4.4.6]

제6조(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개정 1999.12.31, 2004.4.6〉)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6〉

1. 수입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미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이월액
   라. 지출계획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②법 제9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3.9, 2004.4.6〉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고 부적정한 기금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 12.31, 2002.3.9〉

제6조의2(기금운용실적의 보고〈개정 2002.3.9〉)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3.9, 2004.4.6〉

1. 삭제 〈2004.4.6〉
2. 삭제 〈2004.4.6〉
3. 삭제 〈2004.4.6〉
4. 삭제 〈2004.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의 방식, 보고기한의 연장, 보고의 독촉, 보고된 내용의 오류정정 및 통계자료의 열람등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7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4.6, 2005.3.25〉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차관이나 차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된다.〈개정 1999.12.3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12.31〉
1. 중앙관서의 기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④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02.3.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기금정책심의회)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4.4.6〉
②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2.3.9〉
③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정책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금운용평가위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이 된다.〈개정 2002.3.9〉
⑦정책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3(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경제 · 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 · 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5]

제8조(기금운용의 감독) ①삭제〈1999.12.3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4 · 12 · 23, 1998 · 2 · 28, 1999.5.24, 1999.12.31〉

제9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의뢰받은 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4.6〉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기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금융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정책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정책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4.6]

부 칙

〈제13702호,1992.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기금관리주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 또는 기금운용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제기획원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이 영 시행후의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327〉생략

2. 畜 産 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1호]

第1條(目的) 이 法은 家畜의 개량 · 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調節 · 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발전을 도모하여 畜産農家의 所得增大와 畜産物의 안정적 供給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家畜"이라 함은 飼育하는 소 · 말 · 산양 · 면양 · 돼지 · 닭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짐승 · 家禽 등을 말한다.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家畜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은 결과 繁殖用으로 적합한 特徵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家畜을 말한다.
3. "畜産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고기 · 젖 · 알 · 꿀과 이들의 加工品 · 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 · 原毛 기타 家畜의 生産物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孵化業"이라 함은 人工孵化施設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알을 孵化하여 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5. "種畜業"이라 함은 種畜을 飼育하고, 그 種畜으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 繁殖用家畜 또는 씨알을 生産하여 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 · 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第3條(畜産發展施策의 강구) ①農林部長官은 家畜의 개량 · 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調節 · 價格安定 · 流通改善, 飼料의 안정적 需給, 畜産糞尿의 처리 및 資源化, 家畜衛生 등 畜産發展에 관하여 필요한 計劃과 施策을 綜合的으로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4條(畜産發展審議委員會)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施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畜産發展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關係公務員, 生産者 · 生産者團體의 代表, 學界 및 畜産關聯業界의 專門家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2章 家畜改良 및 人工授精 등

第5條(改良目標의 設定) ①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良對象家畜別로 期間을 정하여 家畜의 改良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道의 家畜改良推進計劃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의 달성과 家畜改良業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畜産關聯 機關 및 團體 중에서 家畜改良總括機關과 家畜改良機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改良推進計劃의 施行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機關의 家畜改良業務 추진에 필요한 優良種畜 및 事業費 등을 지원할 수 있다.

第6條(家畜의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 중에서 登錄機關을 지정하여 家畜의 血統·能力·體型 등 필요한 사항을 審査하여 登錄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지정, 登錄對象家畜, 審査·登錄의 節次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家畜의 檢定) ①農林部長官은 家畜의 能力의 개량정도를 확인·評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 중에서 檢定機關을 지정하여 다음 各號의 家畜에 대하여 檢定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家畜
2. 農林部令이 정하는 씨알의 生産을 目的으로 飼育하는 家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機關의 지정, 檢定의 申請節次, 檢定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保護家畜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家畜의 保護地域 및 당해 保護地域안에서 보호할 家畜을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地域안의 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保護支援金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은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동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第9條(種畜의 貸與 및 交換)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增殖과 飼育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種畜을 農林部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人에게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他人이 所有한 種畜과 交換할 수 있다.

第10條(家畜의 人工受精등) ①家畜人工授精師(이하 "授精師"라 한다) 또는 獸醫師가 아니면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家畜으로부터 受精卵을 採取하기 위하여 암家畜에 대하여 性호르몬 및 痲醉劑를 注射하는 행위는 獸醫師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學術試驗用으로 필요한 경우
2.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필요한 경우

第11條(授精師의 免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 授精師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자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分野産業技士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授精師試驗에 合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授精師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精神病者 또는 痲藥類中毒者

③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試驗의 科目, 試驗의 一部免除 및 合格基準 등 授精師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授精師의 敎育)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授精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할 수 있다.

第13條(授精師의 免許取消) 市·道知事는 授精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때
2. 第11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第14條(精液等處理業의 登錄) ①種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하는 業(이하 "精液等處理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精液等處理業者"라 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登錄事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精液等處理業者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통한 疾病의 擴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保有種畜의 定期檢診 및 그 記錄維持
2. 感染이 확인된 種畜의 隔離 또는 淘汰와 당해 種畜으로부터 生産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의 回收·廢棄

第15條(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등) 市·道知事는 精液等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人力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書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한 때

第16條(授精所의 開設申告 등) ①精液 또는 受精卵을 암家畜에 注入 또는 移植하는 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추어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者(이하 "授精所開設者"라 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申告事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7條(精液證明書 등) ①精液等處理業者는 그가 처리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확인을 받아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授精師 또는 獸醫師가 家畜人工受精을 하거나 受精卵을 移植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證明書 또는 受精卵移植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第18條(精液 등의 사용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은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이나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가 없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2.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第19條(精液等處理業者 등에 대한 監督)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 등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수준 향상과 가축개량을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章 畜産物의 需給 등

제20조(축산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된 사항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0조의2(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3(영업의 승계) ①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 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4(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장 · 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 ·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5(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21條(大企業의 畜産業參與 제한)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飼育規模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22條(축산업등록자에 대한 監督〈개정 2002.12.26〉) ①市長·郡守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設의 개선과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種畜등의 輸出入申告)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種畜, 種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家畜 및 家畜의 精液·卵子·受精卵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申告의 대상이 되는 種畜 등의 生産能力·規格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24條(畜産物 등의 輸入推薦 등)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畜産物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 및 種畜 등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第25條(輸入畜産物의 관리) 農林部長官은 輸入畜産物의 관리·不正流通防止 기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은 者, 관세법 제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 또는 輸入된 당해 畜産物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1. 輸入畜産物의 販賣價格·方法 및 시기
2. 輸入畜産物의 用途制限
3. 輸入畜産物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6]

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아지생산농가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26조의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第4章 家畜市場 및 畜産物의 等級化

第27條(家畜市場의 開設 등) ①家畜市場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이하 "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이 開設 · 관리한다. 〈개정 1999.9.7〉

②市長 · 郡守는 家畜市場을 開設한 畜産業協同組合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施設의 개선 및 整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 · 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8條(畜産物의 等級判定)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品質向上과 流通의 원활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等級의 判定(이하 "等級判定"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 · 基準 및 適用條件 그 밖에 等級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地域으로 告示된 地域(이하 "告示地域"이라 한다)안에 있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의 畜産部類都賣市場法人(이하 "都賣市場法人"이라 한다) 또는 同法 제43조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⑤告示地域안에 있는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의 經營者는 당해 屠畜場에서 처리된

畜産物로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硏究用 · 自家消費用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條(畜産物等級判定所〈개정 2001.1.26〉) ①畜産物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畜産物等級判定所(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1.26〉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1.26〉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1.26〉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26〉

1. 畜産物等級判定
2. 畜産物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畜産物等級判定技術의 개발
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畜産物等級判定士의 養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삭제 〈2001.1.26〉

⑥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⑦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所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等級判定業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과 帳簿 · 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제29조의2(등급판정사) ①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第30條(等級判定士의 業務) ①等級判定士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等級判定 및 그 결과의 記錄 · 보관
2. 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等級判定 關聯設備의 點檢 · 관리
4. 기타 等級判定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等級判定士가 等級判定을 행하는 때에는 等級判定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判定을 받아야 하는 畜産物에 대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 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1條(屠畜場 經營者의 준수사항) 告示地域안에서 屠畜場을 경영하는 者는 等級判定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等級判定에 필요한 施設·空間의 확보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32條(等級의 표시 등) ①等級判定士는 等級判定을 한 畜産物에 대하여 等級을 표시하고 그 申請人 또는 당해 畜産物의 買受人에게 等級判定確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都賣市場法人 및 共販場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上場하는 때에는 그 等級을 公表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의 표시·等級判定確認書 및 等級의 公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營業停止處分 등의 요청)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營業에 관한 處分權限을 가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일정기간의 營業停止(營業停止에 갈음하는 課徵金의 賦課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한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2. 第28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搬出한 屠畜場의 經營者
3.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屠畜場의 經營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措置結果를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34條(都賣市場法人 등에 대한 監督)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等級判定業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및 屠畜場의 經營者에 대하여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畜産發展基金

第35條(畜産發展基金의 設置) ①政府는 畜産業의 발전과 畜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畜産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基金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

第36條(基金의 財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1.1.26, 2002.12.26〉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助金 또는 出捐金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馬事會로부터의 納入金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輸入利益金
4.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6. 基金運用收益金
7.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이익금

②韓國馬事會長은 韓國馬事會의 特別積立金중 韓國馬事會法 第4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37條(輸入利益金의 徵收 등) ①農林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6]

第39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5.13〉

1. 畜産業의 構造改善 및 生産性 향상
2.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3. 家畜과 畜産物의 流通改善
4. 飼料의 需給및 飼料資源의 開發
5. 家畜衛生 및 防疫
6. 畜産糞尿의 資源化·處理 및 이용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事業에 대한 事業費 및 經費의 지원

7의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지원

8. 기타 畜産發展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基金의 운용·관리)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9.9.7, 2001.1.26〉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③農林部長官은 擔保能力이 부족한 養畜人 등에 대한 基金支援을 쉽게 하는 등 第39條第1項 各號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貸損補塡에 관한 計定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9.7, 2001.1.26〉

④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則

第41條(手數料)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소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을 받고자 하는 者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 等級判定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徵收된 手數料는 等級判定業務에 소요되는 經費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7, 2001.1.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 手數料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徵收하여 등급판정소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手數料의 徵收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9.7, 2001.1.26, 2002.12.26〉

第42條(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免許取消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第43條(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에 대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의 輸出入申告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⑤農林部長官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제4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급판정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6]

第7章 罰則

第4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精液等處理業을 영위한 者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林部令

이 정하는 飼育規模 이상의 畜産業을 영위한 大企業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자
5.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 上場한 者
7.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者

第4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移植한 者
3. 畜産業協同組合이 아닌 者로서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市場을 開設한 者

3의2.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告示地域안에서 販賣하거나 營業을 目的으로 加工·陳列·보관 또는 運搬한 者
5.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 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4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4條 또는 第4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7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1項 및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제5720호,1999.1.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精液等處理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1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授精所의 開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所의 登錄을 한 者는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1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所를 開設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第4條(孵化業 및 種畜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영위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중 "畜産法 第53條"를 "畜産法 第35條"로 한다.
②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第7號 및 第8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

른 法令에서 종전의 畜産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農業協同組合法) 〈제6018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7條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 · 第2項 · 第4項第1號 · 第5項,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 및 第3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法律 第5720號 畜産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別 · 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 · 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第19條 내지 第21條 省略

附 則

(基金管理基本法) 〈제6101호,19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省略
〈19〉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第1號중 "事業年度別 基金運用計劃 및 그 變更計劃"을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의 변경중 主要項目 支出金額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으로 하고, 同項第2號를 削除한다.
〈20〉내지 〈22〉省略
第4條 省略

부 칙

(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6381호,200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권리 · 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 · 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5조(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6699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6821호,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축의 종류 ·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8.14 대통령령 1851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3.24〉

1. 재정경제부장관 · 농림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학계 및 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4.2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계획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관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4. 기타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 · 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 · 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 · 외의 정보를 수집 · 분석 ·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수정사의 면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2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1.6.22〉]

제11조의3(축산업의 등록대상)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4.8.14]

제11조의4(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시장 · 군수는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

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5(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6(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 · 군수는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7(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4.24]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3.12.30〉]

제11조의8(보조금의 지급 한도)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2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가축의 개량 · 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 · 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 · 조사 · 연구 · 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 · 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3조(기금의 보조)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 · 목적 · 주체 · 기간 · 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

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③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융자)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2004.8.14〉
②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 · 운용 및 처분
3.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4]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전문개정 2001.4.24]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24]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2001.4.24〉]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 공채 그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1.4.2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01.4.24〉]

제18조의2(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개정 2001.4.24〉) ①시 · 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 가축의 지정 ·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30〉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 및 종란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양계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1.4.24〉

[제17조에서 이동〈2001.4.24〉]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12.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01.4.24〉]

부 칙

〈제16493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융자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③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7212호,2001.4.24〉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제17243호,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정사의 면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부 칙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

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8199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19호,2004.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리사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오리사육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8.17 농림부령 14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 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4〉

1. 노새 · 당나귀 · 토끼 · 개 및 사슴
2.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의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 · 뿔 · 내장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 · 화분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 · 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가축전염병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제2장 가축의 개량 · 등록 · 검정등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 젖소 · 돼지 · 닭 및 말로 한다.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종별 개량목표설정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 · 조정
4.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수집 · 분석 · 평가
5. 기타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계획 · 개량사업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가축의 등록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가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 외모·체형·특징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 서류검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 검정대상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검정신청절차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자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종축의 대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등 대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축의 교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대상종축간의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등

제13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삭제〈2001.6.19〉

②시 · 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정사시험) ①시 ·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 · 장소 · 과목 · 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응시원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 · 축산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번식학 · 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 · 가축번식학 · 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 ·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학과의 교수
2. 축산직 · 축산연구직 · 수의직 · 가축위생연구직 기타 축산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 · 시간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정액처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 · 채취장 · 제조실 및 보관실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 · 검사 · 희석 · 분주(分注) · 인쇄 · 보관 및 소독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4.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5. 삭제〈2001.6.19〉

③시 · 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 ·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시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01.6.19〉

⑦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가축위생담당기관이나 축산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3년간 기록 · 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 · 비축된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 · 폐기할 것

제18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략:서식9%〉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3. 삭제〈2001.6.19〉

③시장 · 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 ·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 16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01.6.19〉

제20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등) ①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 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략:서식12%〉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 ·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의하며, 수정란

증명서 및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의한다.

제21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뇨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3. 제17조제7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2조(정액등처리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4〉

1. 등록한 정액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생략:별표1%〉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등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의한다.

제22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한다)

③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4]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개정 2004.2.14〉

제23조(축산업의 등록) ①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의4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 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영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시장 · 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⑤영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2.14]

제24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 ·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축산업등록증(휴업 ·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8.17〉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100분의 20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 · 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6. 100분의 20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 ·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 · 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14]

제25조(축산업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
2.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 · 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4]

[종전 제25조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04.2.14〉]

제25조의2(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중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알만 부화할 것
   가. 종계의 알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3. 가축사육업 :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말 것

[본조신설 2004.2.14]

제25조의3(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등)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04.2.14〉]

제26조(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규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축산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 또는 종계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돈(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암퇘지중 1회이상 수정된 것 또는 130킬로그램이상의 것으로서 종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모돈 500두이상의 양돈업
2. 닭 5만수이상의 양계업

제27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개정 2004. 2.14〉) ①시장 · 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4〉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 22%〉 의한다.

제28조(수출입신고 대상종축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 · 난자 또는 수정란

제29조(축산물수입자등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1.6.19]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1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 ·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 · 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경영

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또는 소 · 돼지 · 닭의 도체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 · 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⑤법 제28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2.14]

제33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 ①법 제2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屠體)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생략:서식23%〉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등급판정사 양성교육등) ①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에서 6월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②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등급판정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생략:서식26%〉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제35조 삭제〈2001.6.19〉

제36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등급판정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 · 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등급판정결과를 관할구역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급판정소의 감독) ①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소 운영예산의 편성 · 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등급판정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등급판정사의 시험 및 교육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의한다.

제3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의하여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대상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을 위한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등 필요한 준비를 할 것. 이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소에 대하여는 등심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사이를 절개하여야 한다.
5.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9조(등급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6에 〈%생략:별표6%〉의하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등에 의한다.

제40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②등급판정사는 도내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등급의 공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등의 방법에 의하여 도체별 등급을 거래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여부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시 ·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긍액산정의 방법은 다은 각호와 같다.

1. 쇠고기 · 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 · 운임 · 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 보관료 · 운송료 · 판매수수료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납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1. 축산통계 · 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 · 처리 · 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 · 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업외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4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32호서식에 〈%생략:서식32%〉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생략:서식33%〉 의한다.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6조(수수료)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4천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6천원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②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4〉
③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별지 제34호서식중〈%생략:서식34%〉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④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⑤수납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등급판정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⑥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

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동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제48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등) ①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2004.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생략:별표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대상으로 전환되는 정액등처리업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액등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또는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74호,20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87호,200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별표 5의 개정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460호,2004.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2호의 종돈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1호 가목⑵의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2제3호의 가축사육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6.30〉

②(기존 가축사육업자의 등록기간) 법률 제682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2005년 12월 26일까지를 말한다.

부 칙

〈제1476호,200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80호,2004.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 가목⑴(나) 및 (라), 별표 6 제1호 가목⑵ 및 제3호 가목 · 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축산법 제28조제4항 및 제5	축산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	제33조	5일	15일	30일
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	제1항제1호 및			
장하거나 반출한 때	제2호			
17.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	축산법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사의 등	제33조		15일	30일
급판정을 거부 · 방해 또는 기	제1항제3호			
피한 때				

Ⅱ. 사업실시관련 규정

1.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 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모든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4조(농림사업시행지침 등) ①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 · 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 · 면 · 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투 · 융자평가통계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관리관
2. 농림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농림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관리관과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의 투 · 융자평가통계관이 된다.

④실무위원은 농림부의 실 · 국장인 위원 소속

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농림부 및 청의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장 농림사업

제16조(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사업의 안내 등) ①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농림사업의 신청 등) ①농림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 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농림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사업신청서의 검토) ①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축·인삼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시군등의 사업부서는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심의 등) ①시군등의 농정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군 등의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도의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업 · 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도 농정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 · 농촌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 · 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 · 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시장 · 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이

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전임자문관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39조(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 · 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농림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 · 군수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12.〉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 16.〉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분류표】

*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65)		(29)	(36)
제2권 농업(식량작물,원예) 구조개선(28)		(13)	(15)
【식량작물】		(6)	(6)
	가. 생산기반확충(11)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수리시설개보수 대 · 중규모 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나. 농업기계화(2)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지원
	다. 생산및유통개선(1)	농기계사후관리지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원예구조개선】	가. 생산기반확충(1)	(7) 마늘경쟁력제고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	(9)
	나.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농산물유통시설운영활성화 농산물직거래지원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 농축산물판매촉진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우수농산물지원 농산물유통전문교육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지방자율계획(과실생산, 유통지원) 과원영농규모화 과원폐원지원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
제3권 농업(축산) 구조개선(9)	 가. 사육기반확충 나. 축산물생 및 유통개선	(2)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7) 축산계열화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 학교우유급식 축산업등록지원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28) 【농촌개발】	 가. 생산및유통개선 나.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 (8)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14) (8) 농림기술개발 지역특화시범 기술보급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율	공공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다. 인력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인자녀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라. 소득보전		**농업직접지불** 농업인재해공제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마. 소득원개발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 농가경영안정지원	
	바. 생활환경개선	폐비닐수거지원	
		(6)	(6)
	가. 생산기반확충	임업기계센타지원 영림계획	사방사업
	나. 생산 및 유통개선	임산소득증대 목재이용 · 가공지원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지원
	다. 인력육성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라. 산림복지 기능증진		식물자원보전관리
	마. 산림자원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조림 · 숲가꾸기 · 묘목생산

[별표2 : 제44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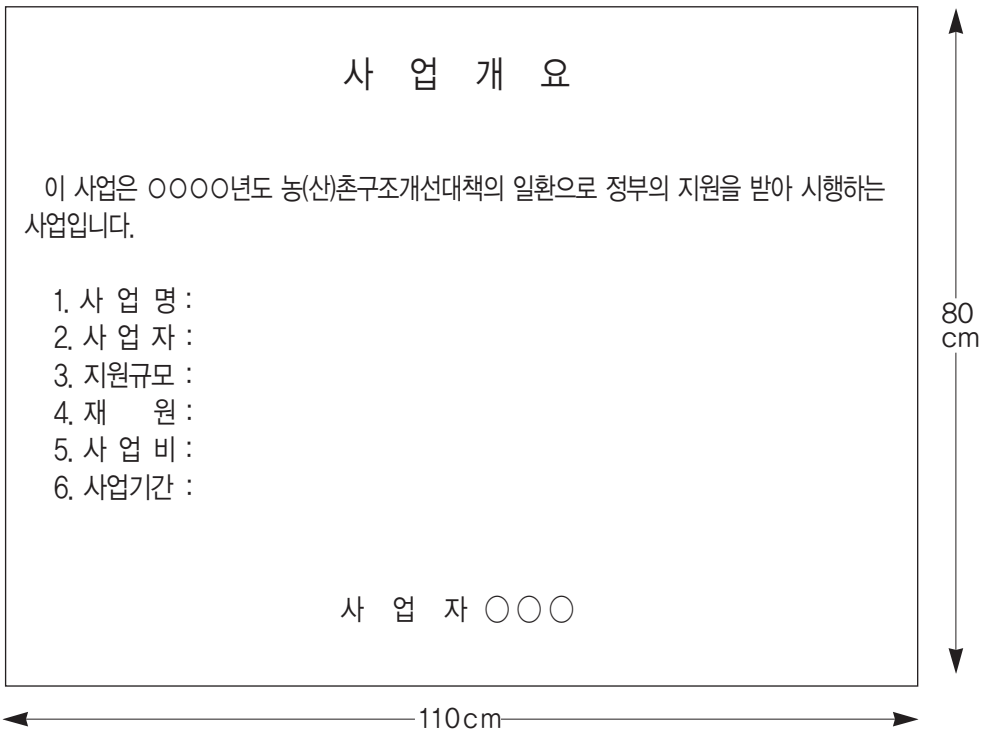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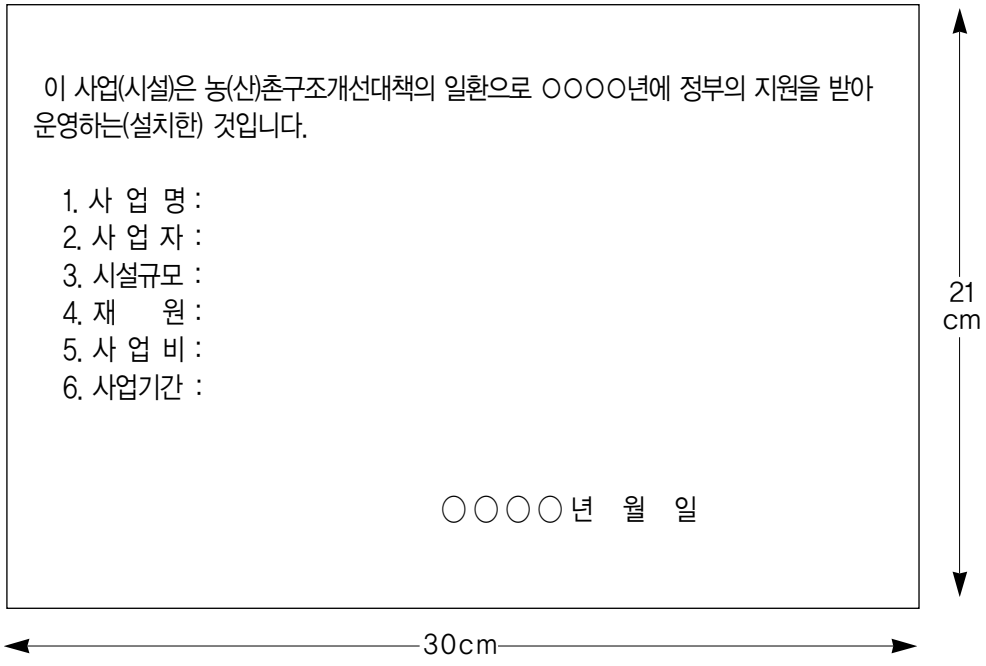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예〉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개정 2004. 11. 〉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신설 2002. 11. 29〉

2. 사업별 지원요건〈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 · 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법인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 · 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 · 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자율사업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4">영 농
규 모
(ha)</td><td></td><td>논</td><td>밭</td><td>과수원</td><td>사료포</td><td>목초지</td><td></td><td>계</td></tr>
<tr><td>소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임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재 배
현 황
(ha)</td><td>벼</td><td>사과</td><td>배</td><td>포도</td><td></td><td></td><td></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시

설

현

황</td><td rowspan="4">개별
시설</td><td>관수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일반저장고</td><td>선과기</td><td colspan="3">기 타</td></tr>
<tr><td>관 정 : ha</td><td>㎡</td><td>㎡</td><td>대</td><td colspan="3"></td></tr>
<tr><td>점적관수 :</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스프링쿨러 :</td><td></td><td></td><td>(톤)</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공동
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선과장</td><td>인공수분기</td><td>수송차량</td><td>교육장</td><td>기 타</td></tr>
<tr><td>㎡</td><td>개소
(톤)</td><td>식</td><td>대
(톤)</td><td>㎡</td><td></td></tr>
<tr><td colspan="8">(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8"></td></tr>
</table>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 청 내 용</td><td>사업명</td><td colspan="7">사 업 비(천원)</td></tr>
<tr><td>사업 규모</td><td colspan="2"></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able>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담보물(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사 업 규 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장 (인)

275-007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 : 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 기타
		천원				
	계					

부동산 보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 야	대지 · 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 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 · 건물 · 시설 · 기계 · 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 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 · 농약 · 비료 · 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 년	3년-5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농업중 과수	16년	12년-20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1996. 8. 1
훈령 제863 전문개정

●개정 1996.10.19. 훈령 제 875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7. 2. 6. 훈령 제 888호
●개정 1997.12.26. 훈령 제 922호
●개정 1998. 9. 9. 훈령 제 959호
●개정 1999. 9. 8. 훈령 제 999호
●개정 2002. 3.20. 훈령 제1,0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 3. 20〉
2. "기금사용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의2.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 한다.)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 12. 26〉
3. "기금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 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4. "농협인수자산"이라 함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승계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2. 3. 20〉
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

하는 행정기관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2002. 3. 20〉

6. "여유자금"이라 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자금에서 축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신설 1997. 2. 6〉
7. "사업자금과"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위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002. 3. 20 신설〉
8.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002. 3. 20신설〉
9. "기금위탁관리자"라 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을 말한다. 〈2002. 3. 20신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과 축산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개정 1997. 2. 6〉

제4조(기금관리자) ①기금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한다. 〈개정2002. 3. 20〉
②〈삭 제 2002. 3. 20.〉

제4조의 2(사무위탁) 농림부장관은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2. 3. 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여유자금의 운용
5. 기금의 결산

제4조의 3(위탁사무의 처리) ①기금위탁관리자는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기금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이하 "기금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위탁관리자가 설치한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이하 "기금소관조직"이라 한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02. 3. 20〉

제5조(기금회계) ①기금위탁관리자는 영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 3. 20〉
③기금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20〉
④기금회계의 결산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정부결산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2. 3. 20〉

제5조의 2(기금계정설치) 농림부장관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20〉

제5조의 3(기금의 회계기관) ①기금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둔다.
②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20〉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사업자금과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을 사업지원과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전년도 3월31일까지 통보 한다.
②사업자금과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조에 의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2. 3. 20〉

제7조(연간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과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고, 사업자금과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3. 20〉

제8조(예비비의 계상) 〈삭 제 2002. 3. 20〉

제3장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대여 및 대출금이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 이자,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여금이자,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여금 이자 및 연체대출 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8〉
3. 수급조절자금이자
4. 기금자산 (가축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의 처분 또는 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10조(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등)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3조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 부터 판매차익금 · 부과금 · 수입권 공매납입금(이하 "축산물수입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말일 기준으로 정산

2. 부과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또는 통관하기 전
3.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②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차입금) ①기금위탁관리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 사유 · 차입선 · 차입금액 ·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②기금위탁관리자는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0〉

제12조(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삭제 2002. 3. 20〉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 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운용

제14조(사업자금의 집행) ①〈삭 제 2002. 3. 20〉

②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에서 당초 지원금액결정시 산정한 총사업비 이외에 사업지원대상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2. 26〉 〈개정 1998. 9. 9〉

1. 연간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7. 12. 26〉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 〈개정 1997. 12. 26〉

③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 · 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 ·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자부담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1998. 9. 9〉

④〈삭 제 2002. 3. 20〉

⑤제19조제8항, 제21조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금액 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2. 26〉

⑥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 ·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출실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6〉

⑦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이하"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9〉

⑧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1998. 9. 9〉

⑨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 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9〉

⑩제9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다. 〈신설 1998. 9. 9〉

⑪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3. 20〉

제1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기금사용자(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당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줄 것을 사업지원과에 신청하고, 사업지원과는 이를 심사하여 1월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는 1월3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안에 공사 · 구매 · 기타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월안에 착공 · 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에 착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기타 계약행위에 착수할 것을 당해 계약서에 명시한 때
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안에 착공 · 납품 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착수한 때

②사업자금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10일전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월대상 예산액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③사업자금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이월대상 금액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양축인과 관련되어 제1항 본문에 정한 증명서류를 사업별로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당해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그 증명서류에 갈음한다는 뜻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16조(기금의 집행계획) ①사업자금과는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02. 3. 20〉

제17조(예비비의 사용) 〈2002. 3. 20 삭 제〉

제18조(융자의 방법) ①기금위탁관리자는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협중앙회 등" 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02. 3. 20〉
②농협중앙회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위탁관리자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에 재대여한다. 다만, 조합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이를 스스로 하거나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8〉〈개정 2002. 3. 20〉
③ 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2. 26〉

제18조의2(융자한도액배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융자한도액을 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②사업주관기관은 융자한도 배정절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한다.
④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6〉

제1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자금과로 부터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 등으로 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 20〉
②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 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 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③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14조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사용후)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9〉

④〈삭제 1999. 9. 8〉

⑤〈삭제 1999. 9. 8〉

⑥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⑦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의 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안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 9. 9〉〈개정 2002. 3. 20〉

⑧농협중앙회 등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와 그전 이라도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지체없이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제20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9. 8〉

제21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농협중앙회 등이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과는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금과는 대여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 등, 기금위탁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제21의2조(정기상환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의 반납) 농협중앙회 등은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8〉〈개정 2002. 3. 20〉

제22조(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이하"부당사용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제5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가축의 집단 폐사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의 기간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9. 9〉〈개정 2002. 3. 20〉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 설비 · 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7. 12. 26〉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축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하여 일시적으로 가축의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지원과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1998. 9. 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 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개정 1998. 9. 9〉

②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신설 1998. 9. 9〉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 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신설 1998. 9. 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신설 1998. 9. 9〉

④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 사유(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9〉

제23조(부당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①농협중앙회장 등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의 부당 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1999. 9. 8〉〈개정 2002. 3. 20〉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농협중앙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의한 이자.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③보조금집행자는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사유(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9〉〈2002. 3. 20개정〉

④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1호 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규정(제2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8. 9. 9〉

제24조(다른 대출규정의 적용) 대출취급(사후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취급업무규정 및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7. 2. 6〉

제25조(융자조건의 결정) ①융자조건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기금사용자로부터 대출기간 연장 등 융자조건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의 합의를 받아 직접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1997. 2. 6〉〈개정 2002. 3. 2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④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

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농협중앙회장 등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 3. 20〉
⑥대출금리는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농협중앙회장 등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 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 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농협중앙회장 등이 기금위탁관리자를 거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3. 20〉

제26조(이자의 납부) ①대여금(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농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날에 납부한다.〈개정 2002. 3. 20〉
②〈삭제 1997. 12. 26〉
③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 (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할 다음날 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④농협중앙회장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에 의한 적수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대여금 평잔"이라 한다.)에서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대여금 평잔(대출 취급기관을 기금사용자로 하는 대여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5 (다만,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8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금 이자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⑤〈삭제 1997. 12. 26〉
⑥대출금(대출기간의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제26조의2(반납기한이 경과한 대여금등의 반납기준) ①〈삭제 1999. 9. 8〉
②농협중앙회 등이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대여금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사업주관기관 으로부터 반납통지를 받은날,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회계연도안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말)로부터 10일까지(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 약

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2. 3. 20〉

2.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11일째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신설 1997. 12. 26〉〈개정 2002. 3. 20〉

제27조(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등의 제출) 농협중앙회장 등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축산발전기금운용상황과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8〉〈개정 2002. 3. 20〉

제28조(수급조절자금) ①수급조절자금은 축산물 또는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②〈2002. 3. 20 삭 제〉

③〈2002. 3. 20 삭 제〉

④〈2002. 3. 20 삭 제〉

⑤〈2002. 2. 20 삭 제〉

⑥〈2002. 3. 20 삭 제〉

⑦수급조절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간 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총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지원과가 정한다. 〈개정 2002. 3. 20〉

제2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보조금은 사업지원과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과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1.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사업시행지침이나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지원과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날로 부터 1월안

에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한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④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의 실적 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8. 9. 9〉〈개정 2002. 3. 20〉
1. 〈 삭제 2002. 3. 20 〉
2. 〈 삭제 2002. 3. 20 〉
3. 〈 삭제 2002. 3. 20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는 경우는 그 결정 및 확정사실을 기금위탁관리자 및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금위탁관리자가 그러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용자에게 당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02. 3. 20〉
⑥〈삭 제 2002. 3. 20 〉
⑦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 부터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9〉〈개정 2002. 3. 20〉
⑧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8. 9. 9〉
⑨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2. 3. 20〉

제30조(집행상황의 확인 등) ①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②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확인 ·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③기금위탁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④기금위탁관리자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관 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2. 6〉〈개정 2002. 3. 20〉

제5장 자산관리

제31조(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기금위탁관리자가 기금의 부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②기금위탁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연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

리계획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③자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기금 자산관련 법률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3. 20〉

제32조(기금자산의 관리 등) ①기금자산은 그 사용 및 취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자산을 그 사용 및 취득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부하거나, 기금자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징수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 3. 20〉
③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자산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④기금자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제33조(농협 인수자산의 관리) ①기금위탁관리자는 농협인수자산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당해 농협인수자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장래에도 사용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하 "목적외 사용등"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②농림부장관이 기금위탁관리자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인수자산의 목적외 사용등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농협인수자산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3. 20〉
③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인수자산의 양도 · 이전 · 증여 등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위탁관리자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0〉

제5장 자금관리

제34조(재원별 구분계리) 기금위탁관리자는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별 조성액 · 사용액 · 잔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20〉

제35조(사업준비금의 운용방법) 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비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준비금을 수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별 금리를 비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월별 기금운용상황 보고시 동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6〉〈개정 2002. 3. 20〉

제35조의2(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설치 목적, 정부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유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농

업자금 공급 능력의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 3. 20〉
④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 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금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팩시밀리나 PC통신 등을 통한 금리입찰을 할 수 없으며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7. 2. 6〉

제7장 평가

제36조(평가의 실시) ①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 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금과는 3월말까지 사업지원과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12. 26〉〈전문개정 2002. 3. 20〉
②기금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6〉〈전문개정 2002. 3. 20〉
③기금위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금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금위탁관리자가 사업자금과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7. 12. 26〉〈전문개정 2002. 3. 20〉

제37조(평가기준 등) ①농림부장관은 매년 평가의 절차 및 기법과 성과측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기금위탁관리자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제38조(평가결과의 활용) 사업자금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26〉〈개정 2002. 3. 20〉

제8장 보칙

제39조(지원의 제한)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당해인 (농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9. 9〉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한다.)이 10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

만인 때에는 3년) 〈개정 1998. 9. 9〉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인 때 : 3년 〈개정 1998. 9. 9〉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때 : 2년 〈개정 1998. 9. 9〉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 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인 때 : 1년 〈개정 1998. 9. 9〉

②2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 9. 9〉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98. 9. 9〉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 9. 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8. 9. 9〉

1. 대출금의 경우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9. 9〉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집행자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8. 9. 9〉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년월일, 지원제한사유 등을 당해인 · 사업자금과 · 사업지원과 · 농협중앙회 등 ·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9〉〈개정 2002. 3. 20〉

제40조(지원제한의 예외)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회사, 기타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 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0〉

제41조(기금운용의 특례) ①제26조제4항에 정한 대출취급 수수료 외의 공제금은 농림부장관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②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3. 20〉

제42조(세부요령) 기금위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요령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3.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4년 6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축정51500-281(94.5.12)"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지급 절차 개선"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자가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보며, 기금관리자는 이 요령 시행일 부터 5일안에 사업별, 사업주관 기관별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위탁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내지 ③(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이월의 사유는 1996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1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수수료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담금)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축협중앙회장"이라한다.)은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대출취급수수료외의 공제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 이후에 확인한 것 부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7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다른훈령의 개정)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개정운영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4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의한 대여금 이자의 납부는 기금관리자와 축협중앙회간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 까지는 축협중앙회장이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각각 기금에 납부한다.
④기금관리자와 축협중앙회는 사업자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전산처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여신관리계좌 운영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대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계정운영규정(훈령 제10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③(장부 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재산관련 장부의 서식은 제32조제4항에서 정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 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 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 11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

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003. 9. 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 · 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23.〉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1998. 7. 23, 개정 2003. 11. 10.〉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0.〉

⑦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신설 1998. 7. 23.〉

⑨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1. 8〉

제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융자의 방법) ①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⑤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개정 1999. 11. 8〉

⑥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8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23.〉

④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 · 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확인 · 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 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 20〉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③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④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19., 2002. 11. 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⑤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이자의 납부) ①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⑤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 설비 · 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개정 1998. 7. 23.〉

②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

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 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신설 1998. 7. 23.〉

③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23.〉

제15조(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 · 제1호 내지 제4호 ·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

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지원의 제한)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 · 사업지원과 · 농협중앙회등 ·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 〈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 〈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 〈개정 1998. 7. 23.〉

②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 7. 23.〉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98. 7. 2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1998. 7. 23.〉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 · 사업자금과 · 사업지원과 · 농협중앙회등 ·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보칙) ①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 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 . 8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사업지원과 용)

수 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 · 산림조합)중앙회

발 신 : 사업지원과

접 수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일	확인자	농림부(또는청)○○과	○○○○	○○○
.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 · 도) ○○과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 정 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 정 일	. . .		이번 배정 :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 분 일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합계 :	㉛	천원

(주) ○ ①=②+③+④, ③=㉛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시도 용)

수 신 : ○○시 · 군 · 자치구

발 신 : ○○시도

접 수 확인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 . .	피확 인자	○○시 · 군 · 자치구 ○○과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 정 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 정 일	. . .		이번 배정 :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 분 일	.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시 · 군 · 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합계 : ㉛ 천원

(주) ○ ①=②+③+④, ③=㉛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 · 군 · 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 · 군 · 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 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 신 : 사업주관기관

접 수 확인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 . .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 정 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 정 일	. . .		이번 배정 :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 분 일	.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 . .			

8.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합계 : 천원

(주) ○ ①=②+③+④, ③=㉛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 · 군 · 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 유 : 대출취급기관

수 신 : (농협 · 산림조합)중앙회

발 신 : 사업주관기관

접 수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일	확인자	○○시 · 군 · 자치구○○과	○○○○	○○○
.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사업명	주 소 / 성명	연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 과의 융자 한도액 배정일	사업자금 과의 융자 한도액 배분일	시·도의 융자 한도액 재배분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 정 일	확정금액 (천 원)	금 액 (천 원)	반 납 기 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 20	'98. 5. 21	'98. 5. 22	'98. 5. 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 21	'98. 7. 22	'98. 7. 23	'98. 7. 24	100,000	80,000	'98. 10. 5	폐 업
합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 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 · 군 · 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 신 : (농협 ·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발 신 : 대출취급기관

접수 확인		소 속	직급	성명
	확인자	○○조합 ○○부서		
· · ·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 . .		이번 배정 :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 . .			
6. 시도의 재배분일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정일	. . .			
8.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면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합계 : ⑤1 천원

(주) ○ ①=②+③+④ ⑤=⑤1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 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속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 · 군 · 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도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농림사업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농림부 훈령
제 1170호

●전문제정 1995.03.01 농림수산부훈령 제817호
●개　　정 1997.05.01 농림부훈령 제899호
(해양수산부 제48호 공동훈령)
●개　　정 1997.11.17 농림부훈령 제915호
(해양수산부 제80호 공동훈령)
●개　　정 2002.04.30 농림부훈령 제1098호
(해양수산부 제270호 공동훈령)
●일부개정 2004.08.12 농림부훈령 제11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기타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00.2.29〉
2. "농림수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02.4.30〉
4. "보증기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수산정책자금(이하"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수산정책사업(이하"정책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①〈삭제 '02.4.30〉
②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대출) ①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까지는 신용대출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00.2.29, '02.4.30〉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 : 1,500만원(농 · 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을 포함한다). 다만, 산림조합은 1,000만원 까지로 한다. 〈개정 '97.11.17, '02.4.30〉
2. 신용대출한도 : 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개정 '97.11.17〉

②대출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한도에 관계없이 신용대출할 수 있다. 〈개정 '02.4.30〉

1. 농어민후계자자금 (3,000만원 까지)
2.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까지)
3. 〈삭제 '97.11.17〉

제7조(담보대출) ①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②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2.4.30〉
③대출기관이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①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02.4.30〉
②대출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계대출로도 정책사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담보로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인) ①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금의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2.4.30〉
②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증총액이 대출금 잔액기준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의한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여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02.4.30〉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 또는 제7조의 후취담보비율을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당해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02.4.30〉
②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외에 사용된 것을 알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5.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된 정책자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취급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89호 '94. 7. 11)"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07호, '95. 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용어의 정의)의 체제 및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정의를 이 규정과 같이 한다.
2. 제11조(대손보전대상대출금)중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취급규정"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부 훈령 제90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의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등에"를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 및 단체,기타 정책사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개정 2002.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농림부협동51010-10269(2000.10.24)호 농림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한도 처리지침에 의한 동일인당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대출금이 회수될 때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의 조치에 의해 연기나 대환되는 경우에도 채권보전 방법의 변경 없이 연기나 대환이 가능하다.
② 제10조(연대보증인)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의 신규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 조치에 의해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주채무자가 연기나 대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8.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1995. 2. 13
훈령 제810호 제정

●개정 1995. 12. 18. 훈령 제 838호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개정 1995. 12. 19. 훈령 제 840호
●개정 1996. 8. 1. 훈령 제 863호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6호
●개정 1998. 9. 7. 훈령 제 957호
●개정 2000. 8. 24. 훈령 제1040호
●개정 2002. 8. 26. 훈령 제 1112호
●개정 2004. 8. 18. 훈령 제 1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양축인 등"이라 함은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이하"지역축협"이라 한다.),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이하"품목조합"이라 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02. 8. 26〉

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
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수가 불가피한 대출금

④"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 ·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 8. 24〉

제3조(계정의 설치) 대출취급기관이 취급한 축산발전기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건전채권으로 되었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계정을 설치한다.

제3조의 1(계정의 운용관리) ①계정의 운용관리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한다. 〈신설 2000. 8. 24〉
②관리기관은 계정의 회계 처리에 있어 축산발전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24〉

제4조(계정의 재원)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개정 1995. 12.18〉
2. 계정운용수익금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
4.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 부터의 출연금

제5조(부담금)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농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은 양축인 등에 대해 지원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여금 이자를 납부하는 날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제6조(축산정책자금대손보전심의회) ①대출로 인한 손실의 보전과 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8. 24〉
③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축산기획 담당상무가 된다. 〈개정 2000. 8. 24〉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0. 8. 24〉
2.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실장, 채권관리부장 〈개정 2002. 8. 26〉
3.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중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2인 〈개정 2002. 8. 26〉
4. 지역축협 및 축산계 품목조합의 상임이사 및 전무 중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1인 〈개정 2002. 8. 26〉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불건전채권의 심사기준 작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2. 손실 보전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손실의 보전 및 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0. 8. 24〉
5. 대손보전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8. 26〉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삭제 2000. 8. 24〉
⑧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8. 24〉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손실보전대상 대출금) ①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대출취급기

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건전 채권으로서 법적절차를 마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가 계정운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불건전 채권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②다음 각호의 대출금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8. 26.〉

1. 대출취급기관이 직접사용하는 대출금 〈신설 2002. 8. 26.〉
2. 신용보증부 대출금 〈신설 2002. 8. 26.〉
3.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신설 2002. 8. 26〉
4. 양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제7조의 2(손실보전의 범위) 계정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손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계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02. 8. 26〉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 대출금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신설 2002. 8. 26〉
2.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신설 2002. 8. 26〉
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신설 2002. 8. 26〉

제8조 〈삭제 1995. 12. 19〉

제9조(손실보전의 절차) ①대출취급기관은 불건전채권의 명세서(이자액의 계산근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관리기관에 손실의 보전을 신청한다. 〈개정 2000. 8. 24〉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손실보전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1. 〈삭제 1995. 12. 19〉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이 제한되는 물건인지 확인
3. 이자액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손실보전의 적정시기
4. 채무자의 재산상황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
6. 관계규정등이 정하는 대출한도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7. 기타 불건전채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은 신청 마감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 대손보전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대손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제10조(손실보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후취담보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1. 농협중앙회 등이 정하는 대출실행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이 설치될 토지에 선순위의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있어 채권확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농협중앙회 등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실행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자 : 종사경력, 경영능력 및 사업성, 건강 및 지명도, 부채비율 또는 자기부담능력, 연간소득액, 연체유무 등을 각각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보증부 대출 및 신용대출을 미리 받은 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대상물건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등기 가능한 것과 耐用年數가 5년 이상인 기계기구(물건의 성질상 현저히 환가성이 떨어지는 건축물과 기계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농협중앙회 등이 정하는 것.
3. 평가: 투자예정액 또는 구입예정액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정하는 비율이하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 및 사업성에 대한 등급은 생산비 절감실적 사양기술, 경영수지, 경영일지 기록실적, 특허 등 보유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용도) ①〈삭제 2000. 8. 24〉

② 관리기관은 계정의 여유자금을 손실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다만,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0. 8. 24〉

④농림부장관은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후취담보 이외의 대출로 인한 손실보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0.8. 24〉

1. 대출취급기관의 축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의 보전.
2.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의 2(계정 운용계획) ①관리기관은 계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8.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 8. 24〉

1. 계정의 운용규모 〈신설 2000. 8. 24〉
2. 계정의 조달과 운용 계획 〈신설 2000. 8. 24〉
3. 기타 계정 운용에 중요한 사항 〈신설 2000. 8. 24〉

제11조의 3(결산) ①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신설 2002. 8. 26〉

②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 8. 26〉

제12조(구상권) ①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0. 8. 24〉

②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위임하거나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③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수한 금액은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제12조의 2(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신설 2000. 8. 24〉

제13조(보고) ①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 분기 말 현재의 계정운영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운영상황에는 회계연도별로 계정의 조성과 사용 및 잔액을 당월분과 누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 재원별 조성액
2. 대출취급기관별 후취담보 및 신용에 의한 대출금액, 불건 전채권액, 계정사용액(원금과 이자를 구분한다.)
3. 금융기관별, 금융상품별 계정잔액의 예치현황
4. 대출방법별 대출금 잔액

③(삭제 2000. 8. 24〉.

제14조(세부준칙 및 장표서식)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준칙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8. 24〉
②제10조 제2항에 정한 후취담보 대출 실행조건에 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 8. 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 12. 19〉

②(다른규정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용요강(농림수산부 훈령 제78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축협중앙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자 이외에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대출취급기관을 기금사용자로 하는 대여금을 제외한다.)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기금운용의 특례) ①제24조 제3항에 정한 가산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②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정의 잔액에 대한 경과조치) 계정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정의 잔액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사업에 지원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5. 12. 31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 1. 1.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38호)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1,000분의 5"를 "1,000분의 8(다만,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7로 한다.)"로 한다.
③(경과조치) 199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서(1995. 12. 1 승인)의 운용 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취급분은 1.1%(조합 0.8%, 중앙회 0.3%)
2. 중앙회 취급분은 1.1%
3. 조합직접 사용분은 0.3%

부 칙

①이 규정은 1996. 8.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8. 1.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8. 9.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8.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행한 업무의 처리는 이 훈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8.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4. 8.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양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계정하여 납부하여 손실보전대상 대출금이 된 경우에 대손보전을 실시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대출취급기관에 양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편 집 위 원>

축산발전기금사무국

○국　　장 : 안 승 일
○기획예산팀장 : 황 보 승
○담　　당 : 최 용 오

본 책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080-6496

축산발전기금과 축산경제의 성장

印刷日　2005년 8월　8일
發行日　2005년 8월 11일

발행인 / 송　　석　　우
편집인 / 김　　운　　철
발행처 / 농 협 중 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인 쇄 / 대 한 인 쇄 사